



K I P F

# 特別消費稅 負擔分布 推定 및 課稅體系 整備方案

成明宰 · 1999. 12



## 序 言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는 과세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세수비중 또한 가장 높은 개별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는 間接稅 체계의 單純化와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상당수의 가전제품, 보석·귀금속 제품, 모피 제품, 일부의 식음료품과 화장품, 승용자동차, 일부 석유류 제품, 과세유흥장소, 사행성 오락기구와 수렵총포류, 고급스포츠 용품 등이다.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에는 이들 과세대상의 보급률이 매우 낮아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소비패턴의 고도화에 따라 대중소비물품화한 품목이 다수 출현하였다.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에는 상당수의 과세대상이 사치재로서의 성격을 가져 稅負擔이 累進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經濟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特別消費稅 負擔이 逆進的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特別消費稅 본연의 課稅目的에 비추어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課稅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 밖에도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단시간 내에 분배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동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보호의 일환으로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社會·經濟的 衡平을 提高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 측면에서 所得課稅 및 財產課稅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消費課稅 측면에서도 生活必需品에 대한 소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衡平 提高와, 環境汚染 및 交通混雜 등과 같은 外部不經濟의 縮小를 위한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 特別消費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特別消費稅가 갖추어야 할 과세목적을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세부담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개편방안을 모색해본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成明宰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は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원고작성에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電算室, 出版課 직원, 그리고 李恩鏡 研究員, 尹惠順 研究組員, 財政經濟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著者의 個人的 意見을 피력한 것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1999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 一 鎭

# 目 次

I. 序 論 .....	25
II. 特別消費稅의 課稅體系 .....	29
1. 特別消費稅의 導入 .....	29
2. 特別消費稅의 課稅體系 .....	30
가. 課稅對象과 稅率 .....	30
나. 最近의 稅率 改編 .....	34
다. 交通稅와 特別消費稅制 改編에 대한 評價 .....	35
3. 稅收 現況 .....	39
4. 問題點 .....	41
가. 稅負擔의 衡平性 .....	41
나. 外部不經濟 .....	42
III. 主要國의 個別消費稅 .....	44
1. 各國의 個別消費稅의 課稅目的과 變遷 .....	44
2. 日本 .....	48
가. 消費稅 導入 以前의 消費課稅 制度 .....	49
나. 物品稅의 導入과 發展過程 .....	50
다. 稅目 廢止 以前의 物品稅 課稅體系 .....	51
라. 物品稅의 廢止 .....	53
3. 臺灣 .....	55
4. 네덜란드 .....	57
5. 벨기에 .....	58

6. 이탈리아	58
7. 포르투갈	59
8. 프랑스	60
9. 아일랜드	60
10. 노르웨이	60
11.濠洲와 뉴질랜드	61
12. 美國	61

#### IV. 經濟危機 以後의 經濟與件 및

特別消費稅 負擔 變化	62
1. 所得·消費 變化推移	62
가. 概要	62
나. 所得 變化推移	63
다. 消費支出 變化推移	67
3. 最近의 特別消費稅 負擔	71

#### V. 最近의 特別消費稅·交通稅 負擔分布 變化

1. 特別消費稅 主要 課稅品目別 負擔	77
가. 耐久消費財 總計	77
나. 其他 主要 生活必需品 總計	85
2. 主要 耐久消費財의 品目別 特別消費稅 負擔	94
가. 特別消費稅 負擔 綜合	94
나. 家電製品과 가스렌지, 淨水器	96
다. 乘用自動車	157
라. 石油類 製品	183
마. 피아노	192

바. 家具	202
사. 時計, 카메라	213
아. 寶石·貴金屬 製品	219
3. 交通稅	229
가. 揮發油	229
나. 輕油	234
VI.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整備의 基本方向	240
1. 稅制改編의 基本方向	240
2. 稅負擔의 衡平	243
3. 市場의 失敗 矯正	247
4. 財政 健全化	248
VII.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및 稅率體系 整備方案	250
1. 耐久消費財(家電製品 中心)에 대한 特別消費稅 改編方案	250
가. 改編方案	251
나. 期待效果	253
2. 財政 健全化 및 外部 不經濟 是正을 위한 石油類 課稅의 改編方向	257
가. 背景	257
나. 現況	258
다. 石油類 課稅 改編時의 考慮事項과 改編方向	261
3. 其他 改編方向	265
VIII. 結論 및 政策示唆點	269

參考文獻 ..... 275

附錄：需要量 變化를 考慮한 稅收效果에 대한 例示 ..... 277

## 表 目 次

〈表 II-1〉特別消費稅 課稅對象 및 稅率(1999年 9月 現在) .....	31
〈表 II-2〉特別消費稅 稅收推移 .....	40
〈表 II-3〉特別消費稅 課稅對象 種別 稅收推移(賦課基準) .....	40
〈表 III-1〉日本 物品稅의 稅率構造(1986年 基準) .....	51
〈表 III-2〉品目別 小賣價格 對比 物品稅의 比重(1986年) .....	52
〈表 III-3〉日本 物品稅의 10大 品目別 稅收實績 및 比重 (1986年) .....	53
〈表 III-4〉間接稅 稅目別 稅收比重 .....	54
〈表 III-5〉臺灣의 貨物稅의 課稅對象과 稅率 .....	56
〈表 III-6〉벨기에의 淸涼飲料 및 커피 消費稅 (1999年 現在) .....	58
〈表 III-7〉포르투갈의 自動車 消費稅(1999年 現在) .....	59
〈表 IV-1〉都市家口의 所得·消費 平均 .....	63
〈表 IV-2〉所得階層別 總所得 平均 .....	64
〈表 IV-3〉年齡別 總所得 平均 .....	66
〈表 IV-4〉所得階層別 總消費支出 平均 .....	68
〈表 IV-5〉年齡別 總消費支出 平均 .....	70
〈表 IV-6〉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	73
〈表 IV-7〉年齡別 總所得 對比 消費稅 負擔 分布 .....	73
〈表 V-1〉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耐久消費財, 教育稅 包含) .....	80
〈表 V-2〉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耐久消費財, 教育稅 包含) .....	81

〈表 V - 3〉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	86
〈表 V - 4〉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	86
〈表 V - 5〉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食飲料品, 教育稅 包含) .....	90
〈表 V - 6〉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食飲料品, 教育稅 包含) .....	91
〈表 V - 7〉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冷蔵庫, 教育稅 包含) .....	98
〈表 V - 8〉年齡別 分布(冷蔵庫, 教育稅 包含) .....	98
〈表 V - 9〉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空氣清淨器, 教育稅 包含) .....	102
〈表 V - 10〉年齡別 分布(空氣清淨器, 教育稅 包含) .....	102
〈表 V - 11〉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電子렌지, 教育稅 包含) .....	107
〈表 V - 12〉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電子렌지, 教育稅 包含) .....	107
〈表 V - 13〉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가스렌지, 教育稅 包含) .....	111
〈表 V - 14〉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가스렌지, 教育稅 包含) .....	111
〈表 V - 15〉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淨水器, 教育稅 包含) .....	115
〈表 V - 16〉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淨水器, 教育稅 包含) .....	115

〈表 V-17〉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食器洗滌器, 教育稅 包含) .....	120
〈表 V-18〉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食器洗滌器, 教育稅 包含) .....	120
〈表 V-19〉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洗濯機, 教育稅 包含) .....	124
〈表 V-20〉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洗濯機, 教育稅 包含) .....	125
〈表 V-21〉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眞空清掃機, 教育稅 包含) .....	129
〈表 V-22〉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眞空清掃機, 教育稅 包含) .....	129
〈表 V-23〉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TV, 教育稅 包含) .....	134
〈表 V-24〉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TV, 教育稅 包含) .....	134
〈表 V-25〉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오디오세트, 教育稅 包含) .....	139
〈表 V-26〉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오디오세트, 教育稅 包含) .....	139
〈表 V-27〉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캠코더, 教育稅 包含) .....	144
〈表 V-28〉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캠코더, 教育稅 包含) .....	144
〈表 V-29〉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VCR, 教育稅 包含) .....	148

〈表 V-3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VCR, 教育稅 包含)	149
〈表 V-3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에어컨, 教育稅 包含)	154
〈表 V-3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에어컨, 教育稅 包含)	154
〈表 V-3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小), 教育稅 包含)	160
〈表 V-3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小), 教育稅 包含)	160
〈表 V-3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中), 教育稅 包含)	165
〈表 V-3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中), 教育稅 包含)	166
〈表 V-3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大), 教育稅 包含)	171
〈表 V-38〉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大), 教育稅 包含)	171
〈表 V-3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176
〈表 V-4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176
〈表 V-4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오토바이, 教育稅 包含)	180
〈表 V-4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오토바이, 教育稅 包含)	180

〈表 V-4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燈油, 教育稅 包含)	184
〈表 V-4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燈油, 教育稅 包含)	185
〈表 V-4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LPG)	189
〈表 V-4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LPG)	189
〈表 V-47〉	피아노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195
〈表 V-48〉	피아노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195
〈表 V-4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피아노, 教育稅 包含)	198
〈表 V-5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피아노, 教育稅 包含)	199
〈表 V-51〉	家具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204
〈表 V-52〉	家具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204
〈表 V-5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家具, 教育稅 包含)	207
〈表 V-5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家具, 教育稅 包含)	208
〈表 V-55〉	카메라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212
〈表 V-56〉	카메라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213
〈表 V-5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카메라, 教育稅 包含)	216
〈表 V-58〉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카메라, 教育稅 包含)	216
〈表 V-59〉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222
〈表 V-60〉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222

〈表 V-61〉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寶石・貴金屬 製品, 教育稅 包含) .....	225
〈表 V-62〉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寶石・貴金屬 製品, 教育稅 包含) .....	226
〈表 V-63〉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揮發油, 教育稅 包含) .....	231
〈表 V-64〉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揮發油, 教育稅 包含) .....	231
〈表 V-65〉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輕油, 教育稅 包含) .....	236
〈表 V-66〉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輕油, 教育稅 包含) ...	236
〈表 VI-1〉主要 耐久消費財에 대한 超過金額課稅制度 適用時의 稅收效果 .....	255
〈表 VI-2〉輸送用 輕油의 價格 및 稅金比重의 國際比較 .....	259
〈表 VI-3〉LPG(부탄) 車輛 登錄臺數 變化推移 .....	261
〈表 VI-4〉食飲料品 非課稅時(健康食品 除外) 特消費稅 負擔 輕減 分布(教育稅 包含) .....	268
〈附表 1〉需要量 變化 考慮時의 稅收效果 例示 .....	278

## 圖 目 次

[圖 IV - 1] 所得階層別 總所得 .....	64
[圖 IV - 2] 所得階層別 總所得 構成比 .....	65
[圖 IV - 3] 年齡別 總所得 .....	66
[圖 IV - 4]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	69
[圖 IV - 5] 所得階層別 消費性向 .....	69
[圖 IV - 6]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構成比 .....	69
[圖 IV - 7] 年齡別 總消費支出 .....	71
[圖 IV - 8] 年齡別 消費性向 .....	71
[圖 IV - 9] 特別消費稅 負擔額 .....	74
[圖 IV - 10] 總所得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74
[圖 IV - 11] 總消費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74
[圖 IV - 12] 特別消費稅 構成比 .....	75
[圖 IV - 13]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額 .....	75
[圖 IV - 14] 年齡別 總所得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75
[圖 IV - 15] 年齡別 總消費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76
[圖 V - 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耐久消費財) .....	81
[圖 V - 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	82
[圖 V - 3]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	82
[圖 V - 4] 稅負擔 構成比(耐久消費財) .....	82
[圖 V - 5] 年齡別 稅負擔額(耐久消費財) .....	83
[圖 V - 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	83
[圖 V - 7]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 (耐久消費財) .....	83

[圖 V-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自動車計) .....	87
[圖 V-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	87
[圖 V-10]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	87
[圖 V-11] 稅負擔 構成比(自動車計) .....	88
[圖 V-12] 年齡別 稅負擔額(自動車計) .....	88
[圖 V-1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	88
[圖 V-14]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	89
[圖 V-1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食飲料品) .....	91
[圖 V-1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	92
[圖 V-17]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	92
[圖 V-18] 稅負擔 構成比(食飲料品) .....	92
[圖 V-19] 年齡別 稅負擔額(食飲料品) .....	93
[圖 V-2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	93
[圖 V-21]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	93
[圖 V-22]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冷蔵庫) .....	99
[圖 V-23]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蔵庫) .....	99
[圖 V-24]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蔵庫) .....	99
[圖 V-25] 稅負擔 構成比(冷蔵庫) .....	100
[圖 V-26] 年齡別 稅負擔額(冷蔵庫) .....	100
[圖 V-27]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蔵庫) .....	100
[圖 V-28]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蔵庫) .....	101
[圖 V-29]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空氣清淨器) .....	103
[圖 V-30]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	103
[圖 V-31]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	103
[圖 V-32] 稅負擔 構成比(空氣清淨器) .....	104
[圖 V-33] 年齡別 稅負擔額(空氣清淨器) .....	104

[圖 V-34]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104
[圖 V-35]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105
[圖 V-36]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電子렌지)	108
[圖 V-37]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렌지)	108
[圖 V-38]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렌지)	108
[圖 V-39]	稅負擔 構占比(電子렌지)	109
[圖 V-40]	年齡別 稅負擔額(電子렌지)	109
[圖 V-41]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렌지)	109
[圖 V-42]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렌지)	110
[圖 V-43]	所得階層別 稅負擔額(가스렌지)	112
[圖 V-44]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112
[圖 V-45]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112
[圖 V-46]	稅負擔 構占比(가스렌지)	113
[圖 V-47]	年齡別 稅負擔額(가스렌지)	113
[圖 V-48]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113
[圖 V-49]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114
[圖 V-50]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淨水器)	116
[圖 V-51]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淨水器)	116
[圖 V-52]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淨水器)	116
[圖 V-53]	稅負擔 構占比(淨水器)	117
[圖 V-54]	年齡別 稅負擔額(淨水器)	117
[圖 V-55]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淨水器)	117
[圖 V-56]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淨水器)	118
[圖 V-5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食器洗滌器)	121
[圖 V-5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121
[圖 V-5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121

[圖 V-60] 稅負擔 構成比(食器洗滌器) .....	122
[圖 V-6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食器洗滌器) .....	122
[圖 V-6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	122
[圖 V-6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	123
[圖 V-64]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洗濯機) .....	125
[圖 V-6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	126
[圖 V-66]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	126
[圖 V-67] 稅負擔 構成比(洗濯機) .....	126
[圖 V-68] 年齡別 稅負擔額(洗濯機) .....	127
[圖 V-69]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	127
[圖 V-70]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	127
[圖 V-7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真空清掃機) .....	130
[圖 V-7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	130
[圖 V-7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	130
[圖 V-74] 稅負擔 構成比(真空清掃機) .....	131
[圖 V-75] 年齡別 稅負擔額(真空清掃機) .....	131
[圖 V-7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	131
[圖 V-7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	132
[圖 V-7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TV) .....	135
[圖 V-7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TV) .....	135
[圖 V-8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TV) .....	135
[圖 V-81] 稅負擔 構成比(TV) .....	136
[圖 V-82] 年齡別 稅負擔額(TV) .....	136
[圖 V-8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TV) .....	136
[圖 V-8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TV) .....	137
[圖 V-8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오디오세트) .....	140

[圖 V - 8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140
[圖 V - 8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140
[圖 V - 88]	稅負擔 構成比(오디오세트)	141
[圖 V - 89]	年齡別 稅負擔額(오디오세트)	141
[圖 V - 9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141
[圖 V - 9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142
[圖 V - 92]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캠코더)	145
[圖 V - 93]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캠코더)	145
[圖 V - 94]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캠코더)	145
[圖 V - 95]	稅負擔 構成比(캠코더)	146
[圖 V - 96]	年齡別 稅負擔額(캠코더)	146
[圖 V - 97]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캠코더)	146
[圖 V - 98]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캠코더)	147
[圖 V - 99]	所得階層別 稅負擔額(VCR)	149
[圖 V -100]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150
[圖 V -101]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150
[圖 V -102]	稅負擔 構成比(VCR)	150
[圖 V -103]	年齡別 稅負擔額(VCR)	151
[圖 V -104]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151
[圖 V -105]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151
[圖 V -106]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에어컨)	155
[圖 V -107]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155
[圖 V -108]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155
[圖 V -109]	稅負擔 構成比(에어컨)	156
[圖 V -110]	年齡別 稅負擔額(에어컨)	156
[圖 V -111]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156

[圖 V-112]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	157
[圖 V-113]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小型自動車) .....	161
[圖 V-114]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	161
[圖 V-115]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	161
[圖 V-116] 稅負擔 構成比(小型自動車) .....	162
[圖 V-117] 年齡別 稅負擔額(小型自動車) .....	162
[圖 V-118]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	162
[圖 V-119]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	163
[圖 V-120] 所得階層別 稅負擔額(中型自動車) .....	166
[圖 V-121]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	167
[圖 V-122]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	167
[圖 V-123] 稅負擔 構成比(中型自動車) .....	167
[圖 V-124] 年齡別 稅負擔額(中型自動車) .....	168
[圖 V-125]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	168
[圖 V-126]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	168
[圖 V-12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大型自動車) .....	172
[圖 V-12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	172
[圖 V-12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	172
[圖 V-130] 稅負擔 構成比(大型自動車) .....	173
[圖 V-13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大型自動車) .....	173
[圖 V-13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	173
[圖 V-13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	174
[圖 V-134]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自動車計) .....	177
[圖 V-13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	177
[圖 V-136]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	177
[圖 V-137] 稅負擔 構成比(自動車計) .....	178

[圖 V-138]	年齡別 稅負擔額(自動車計)	178
[圖 V-139]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178
[圖 V-140]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179
[圖 V-14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오토바이)	181
[圖 V-14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181
[圖 V-14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181
[圖 V-144]	稅負擔 構成比(오토바이)	182
[圖 V-145]	年齡別 稅負擔額(오토바이)	182
[圖 V-14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182
[圖 V-14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183
[圖 V-14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燈油)	185
[圖 V-14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186
[圖 V-15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186
[圖 V-151]	稅負擔 構成比(燈油)	186
[圖 V-152]	年齡別 稅負擔額(燈油)	187
[圖 V-15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187
[圖 V-15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187
[圖 V-15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LPG)	190
[圖 V-15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190
[圖 V-15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190
[圖 V-158]	稅負擔 構成比(LPG)	191
[圖 V-159]	年齡別 稅負擔額(LPG)	191
[圖 V-16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191
[圖 V-16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192
[圖 V-162]	所得階層別 支出額(피아노)	196
[圖 V-163]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196

[圖 V-164]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196
[圖 V-165]	支出額 構成比(피아노)	197
[圖 V-166]	年齡別 支出額(피아노)	197
[圖 V-167]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197
[圖 V-168]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198
[圖 V-169]	所得階層別 稅負擔額(피아노)	199
[圖 V-170]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200
[圖 V-171]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200
[圖 V-172]	稅負擔 構成比(피아노)	200
[圖 V-173]	年齡別 稅負擔額(피아노)	201
[圖 V-174]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201
[圖 V-175]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201
[圖 V-176]	所得階層別 支出額(家具)	205
[圖 V-177]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家具)	205
[圖 V-178]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家具)	205
[圖 V-179]	支出額 構成比(家具)	206
[圖 V-180]	年齡別 支出額(家具)	206
[圖 V-181]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家具)	206
[圖 V-182]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家具)	207
[圖 V-183]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家具)	208
[圖 V-184]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209
[圖 V-185]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209
[圖 V-186]	稅負擔 構成比(家具)	209
[圖 V-187]	年齡別 稅負擔額(家具)	210
[圖 V-188]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210
[圖 V-189]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210

[圖 V-190]	所得階層別 支出額(카메라) .....	213
[圖 V-191]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	214
[圖 V-192]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	214
[圖 V-193]	支出額 構成比(카메라) .....	214
[圖 V-194]	年齡別 支出額(카메라) .....	215
[圖 V-195]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	215
[圖 V-196]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	215
[圖 V-19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카메라) .....	217
[圖 V-19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	217
[圖 V-19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	217
[圖 V-200]	稅負擔 構成比(카메라) .....	218
[圖 V-201]	年齡別 稅負擔額(카메라) .....	218
[圖 V-20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	218
[圖 V-20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	219
[圖 V-204]	所得階層別 支出額(寶石·貴金屬 製品) .....	223
[圖 V-205]	總所得 對比 支出 比重(寶石·貴金屬 製品) .....	223
[圖 V-206]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 比重(寶石·貴金屬 製品) ...	223
[圖 V-207]	支出額 構成比(寶石·貴金屬 製品) .....	224
[圖 V-208]	年齡別 支出額(寶石·貴金屬 製品) .....	224
[圖 V-209]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 比重 (寶石·貴金屬 製品) .....	224
[圖 V-210]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 比重 (寶石·貴金屬 製品) .....	225
[圖 V-21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寶石·貴金屬 製品) .....	226
[圖 V-21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寶石·貴金屬 製品) .....	227
[圖 V-21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寶石·貴金屬 製品) .....	227

[圖 V-214] 稅負擔 構成比(寶石・貴金屬 製品) .....	227
[圖 V-215] 年齡別 稅負擔額(寶石・貴金屬 製品) .....	228
[圖 V-21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寶石・貴金屬 製品) .....	228
[圖 V-21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 (寶石・貴金屬 製品) .....	228
[圖 V-21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揮發油) .....	232
[圖 V-21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	232
[圖 V-22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	232
[圖 V-221] 稅負擔 構成比(揮發油) .....	233
[圖 V-222] 年齡別 稅負擔額(揮發油) .....	233
[圖 V-22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	233
[圖 V-22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	234
[圖 V-22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輕油) .....	237
[圖 V-22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	237
[圖 V-22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	237
[圖 V-228] 稅負擔 構成比(輕油) .....	238
[圖 V-229] 年齡別 稅負擔額(輕油) .....	238
[圖 V-23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	238
[圖 V-23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	239

## I. 序 論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交通稅 포함)는 酒稅 및 담배消費稅, 電話稅 등과 함께 대표적인 개별소비세의 하나로 개별소비세 가운데 과세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세수비중 또한 가장 높은 세목이다.

특별소비세는 기존의 間接稅 체계를 單純化하고, 稅收確保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선진화된 소비세 체계를 갖추는 것을 도입 목적으로 하여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되었다. 그 밖에 부수적으로 幼稚產業 保護, 輸入代替 등을 통한 國際收支 防禦, 景氣調節, 稅負擔의 衡平 提高 또는 附加價値稅 負擔의 逆進性 補完 등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附加價値稅 負擔의 逆進性 補完機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도입 목적에 기초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상당수의 가전제품, 보석·귀금속 제품, 모피 제품, 일부의 식음료품과 화장품, 승용자동차, 일부 석유류 제품, 과세유흥장소, 사행성 오락기구와 수렵총포류, 고급스포츠 용품 등이었다.

이들 과세대상은 대부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 普及率이 매우 낮거나 일부의 高所得層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稅負擔의 衡平 提高 效果가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所得 및 消費水準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이들 과세대상 중 가전제품이나 식음료품 등을 중심으로 低所得層에까지 소비의 저변이 확대되어 생활필수품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후 점차 特別消費稅 負擔의 累進性이 弱화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본래의 과세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그 밖에 고도성장과정에서 산업화, 특히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 등 에너지 다소비 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1980년대말부터 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化石燃料 消費 增大에 따른 環境汚染 및 交通混雜 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그 밖의 課稅目的의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衡平 提高와, 環境汚染 및 交通混雜 등과 같은 外部不經濟의 縮小를 위한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 特別消費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행 특별소비세의 문제점으로는 형평 악화와 외부 불경제 축소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특히 최근의 經濟危機 상황하에서는 이 가운데 前者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1997년말 우리나라는 金融 및 外換危機를 계기로 국가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이르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경제가 혼란상황에 접어들었다. 이후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198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적인 경기후퇴를 경험하게 되는 등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되면서 換率이 急騰하고 신용경색으로 利子率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기본적인 경제구조에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산업생산 또한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한계기업 및 자금력이 약한 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었고, 단기간 내에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임금도 삭감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면서 모든 계층에 걸쳐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지출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하에서 所得 및 富의 分配構造가 급격히 惡化<sup>1)</sup>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所得 減少가 두드러지고 消費支出은 상대적으로

1) 全珠俊 外(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로 적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所得이 적게 감소하였지만 消費支出이 크게 감소하는 등 소득계층별로 非對稱의 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所得·消費패턴의 變化에 따라 消費稅 負擔의 逆進性이 深化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2)</sup>.

低所得層의 所得이 크게 減少한 이유는 대규모적인 실업의 증가와 임금 삭감, 자영업자들의 파산 등으로 인해 절대소득수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비지출이 적게 감소한 것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지출까지는 감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에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비록 임금이 많이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고용의 기록이 덜 심하였으며, 그들의 소비지출 가운데 불요 불급한 부분에 대한 소비비중이 상당히 높아 그러한 부분에서 지출을 크게 감축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층별로 所得·消費패턴이 非對稱의으로 변화하면서 特別 消費稅를 비롯한 각종 消費稅의 負擔分布도 逆進性이 深化되는 방향으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中產層과 低所得層이 經濟的으로 매우 크게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失業對策과 각종 복지지출 등의 사회안전망을 긴급히 확충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이들의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서 雇傭 擴大 促進을 위한 각종 대책과 稅負擔의 衡平 提高를 통한 低所得層의 負擔輕減과 社會·經濟的 衡平 惡化防止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生活必需品에 대한 稅負擔 輕減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2) 본 연구에서 逆進性이라 함은 總所得(또는 總消費支出)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고소득층으로 이행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累進性이라 함은 실효세부담률이 고소득층으로 이행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分配構造의 악화 정도와 消費構造 變化에 따른 衡平性 變化效果를 파악하고 기초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經濟危機 동안 전개된 所得 및 消費패턴의 변화와 세부담 분포에 대한 기초분석을 위해 1997~1998년의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階層別 稅負擔의 變化推移를 분석하였다<sup>3)</sup>. 그리고 기초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특별소비세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세수측면에서 특별소비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제품 등을 비롯한 내구소비재와 석유류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sup>4)</sup>.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현행 特別消費稅制의 現況과 問題點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Ⅲ章에서는 주요 外國에서의 個別消費稅에 대해 국제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추세적 변화의 흐름을 짚어본다. 第Ⅳ章에서는 經濟危機 이후 經濟與件 變化에 따른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의 變化推移를 분석한다. 第Ⅴ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特別消費稅 品目別로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의 變化效果를 살펴본다. 特別消費稅 改編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별 품목에 대한 세부담 분포에 기초한 분석이 많았으나 분석의 범위가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개선 방안 모색시에 개편의 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가능한대로 분석대상의 범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第Ⅵ章에서는 特別消費稅 整備를 통한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第Ⅶ章에서는 최근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21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特別消費稅가 지향하여야 할 整備方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第Ⅷ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3) 분석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분석방법은 成明宰(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4) 특별소비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 방식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과표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II. 特別消費稅의 課稅體系

### 1. 特別消費稅의 導入

特別消費稅는 1977년 7월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되었다. 특별소비세가 導入된 본래의 목적은 조세체계 단순화 이외에도 奢侈性 消費財를 과세함으로써 附加價値稅 負擔의 逆進性을 補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 밖에 소비과열로 인한 인플레이 방지 등과 같은 景氣調節, 輸入抑制 또는 代替를 통한 國內幼稚産業 保護 및 國際收支 防禦, 稅收의 安定的 確保 등도 주요 과세목적이었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여 소득수준이 크게 증대되면서 소비패턴 또한 高度化·大衆化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종전에는 奢侈性 消費財로 여겨졌던 품목의 상당수가 대중소비물품화 또는 생활필수품화되었다. 이에 따라 본래 特別消費稅는 附加價値稅 負擔의 逆進性을 補完하는 機能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능이 크게 弱化되었다. 그 밖에 최근에는 環境汚染, 交通混雜 등과 같은 外部不經濟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特別消費稅의 逆進性 補完機能보다는 外部效果 교정 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여 輸入依存度가 매우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特別消費稅를 과세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輸入 및 消費를 억제함으로써 國際收支 防禦機能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이들 품목의 비중이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기반 또한 크게 확충되면서 특별소비세의 수입억제(또는 대체), 국제수지 방어 기능이 크게 퇴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량소비 추세 확산 및 그에 따른 폐기물 증가 및 처리 문제, 환경오염,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세수보전을 통한 재정건전화 문제가 특별소비세 개편에 있어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 2. 特別消費稅의 課稅體系

### 가. 課稅對象과 稅率

현행 特別消費稅法에서는 課稅對象을 第1種~第5種,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第1種에는 오락성 사행기구, 스포츠용품, 수렵용 총포류, 영사기와 촬영기, 텔레비전영상투사기(프로젝션 TV), 에어컨 등이 주요 과세대상이다. 제1종 물품에 대한 세율은 현재 30%, 다만 에어컨에 대해서는 1998년 7월에서 1999년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第2種은 커피, 코코아, 그랜드형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및 대부분의 家電製品 등 주로 내구소비재로 구성되어 있다. 第2種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15%를 基本稅率로 과세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가전제품과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에 대해서는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재 1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第3種은 淸涼·嗜好飲料, 자양강장품, 설탕(砂糖), 특수화장품, 일반형 피아노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반형 피아노의 경우에는 1999년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재 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表 II - 1〉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및 稅率(1999年 9月 現在)

(單位 : %, 원 /리터, 원 /kg, 원 /人 · 入場[課稅場所, 스키장 제외])

課稅品目	稅率	
	基本稅率	彈力稅率
〈第1種〉		
1. 投錢機 · 娛樂用射倂器具 기타 娛樂用品	30	-
2. 골프用品과 狩獵用銃砲類	30	-
3. 모터보트 · 요트와 同 關聯製品	30	-
4. 雪上 및 水上스키用品과 同 스쿠터 · 불링用具 · 윈드서핑用具 ·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30	-
5. 영사기 · 촬영기와 同 關聯製品	30	-
6.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同 스크린	30	-
7. 공기조절기와 同 관련제품	30	21
〈第2種〉		
1. 冷藏庫와 冷凍庫(電氣 · 가스 · 油類式)	15	10.5
2. 電氣洗濯機(洗濯物の 乾燥機를 포함하며, 家庭型的 것에 한한다)	15	10.5
3. 天然色텔레비전受像機와 同 關聯製品	15	10.5
4. 텔레비전映像 · 音響記錄機와 同 關聯製品	15	10.5
5. 電氣音響器機(小型 휴대용의 音響錄音 및 再生機能을 갖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 이하의 것은 제외)	15	10.5
6. 家庭型 電氣 · 電熱 · 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15	10.5
7. 그랜드형 피아노	15	10.5
8. 크리스탈유리제품	15	10.5
9. 커피와 코코아	15	-
〈第3種〉		
1. 清涼飲料	10	-
2. 嗜好飲料	10	-
3. 滋養強壯品	10	-
4. 砂糖	10	-
5. 특수화장품	10	-
6. 일반 피아노(電子오르간, 신디사이저 포함)	10	7

〈表 II - 1〉의 계속

課稅品目	稅 率	
	基本稅率	彈力稅率
〈第4種〉 <sup>1)</sup>		
第1類		
1. 寶石(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은 제외)·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30	—
2. 귀금속제품	30	—
第2類		
3. 고급사진기와 同 關聯製品	30	—
4. 고급시계	30	—
5. 고급모피와 同 製品(토끼모피 및 농 제품, 생모피 제외)	30	—
6. 고급용단	30	—
7. 고급가구	30	—
〈第5種〉		
第1類：乘用自動車(지프型 포함)		
1. 排氣量 2千cc 초과와 캠핑용 自動車	20	14
2. 排氣量 1千500cc 초과 2千cc 이하의 것	15	10.5
3. 排氣量 1千500cc 이하의 것(排氣량이 800cc 이하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 제외)과 二輪自動車	10	7
第2類 <sup>2)</sup>		
1. 揮發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	691	—
2. 輕油	160	—
3. 燈油	60	—
4.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40	—
5.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40	—

〈表 II - 1〉의 계속

課稅品目	稅 率	
	基本稅率	彈力稅率
課稅場所 <sup>1)</sup>		
1. 競馬場	500	-
2. 蒸氣湯	40,000	-
3. 投錢機를 施設한 場所	10,000	-
4. 골프場	12,000	-
5. 카지노 <sup>3)</sup>	50,000(외국인 2,000)	65,000(2,600)
6. 스키場	20	-
課稅遊興場所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	-

註 : 1) 第4種의 과세물품은 基準金額을 초과하는 價格에 當해 物品의 稅率을 적용함. 第4種의 1호, 2호, 4호, 5호의 경우 基準金額은 100만원임.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하며, 고급용단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율을 적용함. 그리고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함.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2류의 휘발유 및 경유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교통세로 징수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교통세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카지노 단력세율 과세시한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함.

第4種은 寶石, 貴金屬製品, 고급사진기, 고급모피, 고급용단, 고급가구 등 고가의 사치품이 주요 과세대상으로서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第4種 課稅物品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즉 品目別로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基準金額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課稅對象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가격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품목별 기준금액은 寶石, 貴金屬製品,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용단의 경우 100만원이고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300~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第5種은 乘用自動車와 주요 석유류 관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

용자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은 10~20%이나 2005년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7~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 스키장 입장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石油類 관련 제품과 課稅場所의 경우에는 從量稅 體系로 과세되고 있다.

#### 나. 最近의 稅率 改編

1997년말 이후 금융 및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特別消費稅와 交通稅의 세율이 조정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8일에 特別消費稅法의 改正을 통해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영사기 및 촬영기, 寶石·貴金屬製品, 高級時計, 에어컨 등 사치성이 높은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特別消費稅의 基本稅率을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高級家具는 15%에서 30%, 課稅遊興場所는 15%에서 20%, 스키장 입장료는 10%에서 20%, 골프장 입장의 경우에는 3천원(기본세율)에서 1만 2천원으로 세율이 인상되었다. 석유류 관련 제품의 경우에는 燈油, 石油가스, 天然가스에 대해 1리터 또는 1Kg당 세율을 각각 25원, 18원, 14원에서 60원, 40원, 40원으로 인상되었다.

特別消費稅率의 調整은 사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해 열악한 세수여건을 만회하기 위한 稅收 增大와 過消費 抑制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석유류의 경우에는 稅收補填과 함께 環境汚染 低減效果를 목적으로 하였다.

1998년 동안 소비가 극심하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면서 내수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1998년 7월초에 소비진작을 위해 家電製品과 乘用自動車 등의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말까지 1년간

限時的으로 特別消費稅의 基本稅率을 100분의 30만큼 輕減시켜 주었다<sup>1)</sup>.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다시 1999년말로 연장되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별개로 1998년 하반기에 전개되었던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양자의 합의에 따라 2005년까지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여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交通稅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5월, 9월의 세 차례에 걸쳐 揮發油와 輕油에 대한 세율을 각각 1리터당 414 → 454 → 591 → 691원, 48 → 85 → 110 → 160원으로 인상하였다. 交通稅率의 위상은 급격한 景氣沈滯에 따라 稅收與件이 극도로 열악해지면서 財政赤字가 매우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財政赤字의 恒久化 방지를 위한 稅收補填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인상에 따른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1999년 5월 6일부터 세액이 641원으로 50원 인하되었다.

## 다. 交通稅와 特別消費稅制 改編에 대한 評價

### 1) 特別消費稅

1998년 1월에 단행되었던 사치성 물품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上向調整은 경제위기 동안 악화된 分配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위기 동안 극히 일부의 고소득층에서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消費支出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衡平性 提高 效果가 다소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消費支出이 급격히 減少하면서 실제적인 衡平性 提高 效果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奢侈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上을 통해 악화된 分配構造 改善을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인 효과와 분배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1) 에어컨의 경우에는 1997년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1998년 1월부터 30%로 세율이 인상된 후, 동년 7월부터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21%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998년의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은 總所得 對比 0.37%, 總消費支出 對比 0.55%이었는데, 만약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주요 耐久消費財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의 引下가 없었다면 特別消費稅 전체의 實效稅負擔率은 總所得 대비 0.38%, 總소비지출 대비 0.57%로 각기 0.01%p 및 0.02%p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特別消費稅의 稅率引下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층별 세수점유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1998년 동안 내수가 극심하게 침체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의 적용 목적이었던 내수 진작 효과가 상당히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構造에 따라 영향을 받는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 效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동안 低所得層의 所得 下落率이 消費支出 下落率보다 더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所得·消費패턴의 變化가 저소득층의 실효세부담률 상승을 초래하였던 주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所得 下落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消費支出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實效稅負擔率은 오히려 下落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는 特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稅制改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所得階層別 所得·消費패턴의 非對稱的인 變化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特別消費稅 改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주요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율인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消費萎縮으로 인해 特別消費稅 課稅의 衡平性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작은 반면 所得·消費패턴의 非對稱的인 變化가 衡平性 低下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稅負擔 構造가 逆進的인 방향으로 변화함에 있어 작기는 하지만 1998년 중반에 실시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稅率引下는 稅負擔의 絶對水準 輕減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세율이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低所得層이 體感하는 逆進性은 다소 緩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소득층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소비지출 수준이 크

게 감소한 점이 역진성 심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놓고 볼 때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所得 및 消費패턴이 변화된 상태로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特別消費稅制의 改編만으로는 分配構造를 획기적으로 改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생활필수품화된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하거나 비과세하더라도 당분간은 별다른 형평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소득 및 소비패턴이 현재 상태에서 고착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잠정적 결론일 뿐, 景氣가 回復되고 所得·消費가 增加한다면 生活必需品에 대해 特別消費稅率을 引下 또는 非課稅함으로써 衡平性과 分配構造를 改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 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소비세제의 개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형평성 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형평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서 總所得 대비 稅負擔 및 消費支出 比重이 높은 生活必需品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경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交通稅

1998년의 교통세 實效稅負擔率은 총소득 대비 1.45%, 총소비지출 대비 2.19%였다. 1998년 동안 교통세율의 인상이 없었고 揮發油와 輕油의 소비자가격도 유가인상분만큼만 반영하였다는 가상적인 상황하에서는 교통세의 실효세부담률이 각각 1.22%와 1.85%로 나타나 실적치보다 각각 0.23%p 및 0.34%p 정도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高所得層에 비해 低所得層의 所得 減少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所得階層別 所得 및 消費패턴의 非對稱的인 變化로 인해 交通稅率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1997년보다 交通稅 負擔의 衡平性은 低下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자체 수요라기보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료유로서 소비되는 派生需要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가 내구소비재로서 단기적으로 보유상황을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휘발유가 非耐久消費財 이기는 하지만 장기의 경우에 비해 단기적으로 소비가 상대적으로 非彈力的이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低所得層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中·高所得層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揮發油에 대한 所得階層別 交通稅 負擔은 다소 累進的이다. 輕油의 경우에도 都市家計의 직접소비분만을 대상으로 할 때 稅負擔 構造가 다소 累進的이다. 1998년에 교통세율이 인상되었지만 稅負擔이 累進的이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누진도의 약화 및 절대세부담 수준의 급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측면에서 稅負擔의 衡平性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교통세 부담이 總所得에 대해 미약하나마 누진적이기는 하지만 교통세율 인상에 따라 형평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패턴도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交通稅率의 引上은 경기악화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수보전 및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環境汚染 縮小 및 交通混雜 緩和 문제와 연계시켜 보더라도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방향으로의 개편이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交通稅率의 引上은 衡平性이 다소 弱化되는 결과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하에서 效率性과 財政 측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環境汚染이나 交通混雜 등의 外部不經濟 문제를 고려해볼 때 교통세율 인상에 있어 揮發油의 價格 水準은 적정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측

되지만 輕油의 경우에는 稅率引上率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揮發油와 의 相對價格 및 絕對價格 隔差가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輕油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세율조정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稅收 現況

交通稅를 포함한 최근의 特別消費稅 稅收은 소비 증가 및 세율인상 등 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수가 2조 2천억원 정도였으며, 1995년에는 교통세를 포함한 세수가 약 6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약 8조 7천억원으로 세수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의 내국세 점유비도 1991년에는 7.4% 정도였었는데, 1998년에는 12.9%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特別消費稅의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경제위기를 경제점으로 하여 1998년에는 교통세 등 석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즉, 석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수는 2조 2천억원 정도로서 1997년 실적에 비해 8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세수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1998년 동안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가전제품이나 승용자동차 등을 비롯한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급속히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 7월부터 家電製品과 乘用自動車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가운데 耐久消費를 대상으로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彈力稅率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해준 것도 세수가 감소한 것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98년에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석유류의 절대소비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교통세율이 크게 인상되면서 교통세의 세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다.

石油類와 승용자동차로 구성되어 있는 第5種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수가 전체 세수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대부분 家電製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종과 식음료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3종의 세수비중이 높다.

〈表 II -2〉 特別消費稅 稅收推移

(單位: 億원,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總國稅	303,198	352,184	392,606	472,618	567,745	649,602	699,277	677,977
特別消費稅	22,465 (7.4)	30,686 (8.7)	36,069 (9.2)	24,456 (5.2)	26,171 (4.6)	31,193 (4.8)	30,364 (4.3)	22,115 (3.3)
交通稅	-	-	-	24,572 (5.2)	33,718 (5.9)	48,239 (7.4)	55,471 (7.9)	65,040 (9.6)

註: 1. 1994년부터는 揮發油와 輕油에 대한 稅收가 交通稅로 분리되었음.

2. ( ) 안은 總國稅 占有比임.

資料: 財政經濟部, 『財政金融統計』, 各號.

〈表 II -3〉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種別 稅收推移(賦課基準)

(單位: 億원, %)

	第1種	第2種	第3種	第4種	第5種 第1類	第5種 第2類	課稅場所 等	計
1995	3,095 (5.1)	6,487 (10.6)	2,091 (3.4)	72 (0.1)	10,632 (17.4)	38,004 (62.0)	875 (1.4)	61,257 (100.0)
1996	3,316 (1.6)	6,326 (8.7)	2,047 (2.8)	139 (0.2)	12,637 (17.4)	47,391 (65.1)	921 (1.3)	72,777 (100.0)
1997	3,612 (4.1)	6,259 (7.2)	2,177 (2.5)	127 (0.1)	12,370 (14.1)	61,404 (70.2)	1,260 (1.4)	87,509 (100.0)

註: 1. 交通稅 包含 數值임.

2. ( ) 안은 占有比임.

資料: 財政經濟部.

#### 4. 問題點

최근 경제성장 및 소득·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特別消費稅는 본래의 과세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형평성 저해와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 미흡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特別消費稅는 본래의 課稅目的 중 附加價値稅 부담의 逆進性을 補完하는 것이 중요한 機能 중의 하나였으나 본래의 의도와 달리 일부의 품목에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 시정을 위한 기능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 가. 稅負擔의 衡平性

현행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가운데에는 소비의 저변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어 있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널리 소비되는 생활필수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래의 과세목적과 달리 특별소비세의 계층별 세부담이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품목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低所得層의 所得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소득탄력성이 낮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특별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해졌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高價·大型 耐久消費財에 대한 需要가 크게 萎縮되면서 상대적으로 特別消費稅 負擔이 경감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特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이 크게 深化되었다.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극심한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中·低所得層의 需要 減少가 더 크게 나타나 稅負擔의 累進性은 다소 強化되었다.

家電製品의 경우에는 生活必需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에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특소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대부분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고가제품을 제외할 경우에는 세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 품목의 가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나 규격에 따라 주소비자층이 구별되고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구분이 곤란하다. 일부 고가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특별소비세 부담이 누진적인 경우도 있지만, 고가 제품이 없는 일부의 저가 품목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 課稅에 따라 稅負擔의 逆進性만 深化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食飲料品の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절대세부담액이 대체로 일정하여 역진성이 크게 두드러진다. 특히 清涼·嗜好飲料의 경우에는 주소비자가 미성년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양강장품(건강식품)을 제외한 식음료품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과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소비되고 있어 세수 확보 목적을 제외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의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스키는 1990년대 들어 대중스포츠화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로 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종래의 사치성 스포츠로서의 개념이 크게 희석되었다. 그러나 스키의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스키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등 형평성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

#### 나. 外部不經濟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環境汚染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1980년대말 이래 자동차가 급증하여 교통혼잡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199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교통세율 조정에 따라 에너지 소비절약 및 불필요한 소비 억제를 통해 環境汚染 縮小 및 交通混雜 緩和, 稅收補塡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유종별로 상대가격 격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크면서도 비과세되는 유종이 있어 外部不經濟 縮小 효과가 제한적이다.

輕油는 거둬진 세율 인상으로 휘발유와 상대가격 격차가 축소되었지만 절대가격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연료유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여 LPG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교통세 과세의 실효성이 다소 훼손되고 있다. 1998년 동안 LPG 차량은 전년(40만 977대)에 비해 22.8% 증가(49만 2,541대) 증가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重油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석유류 가운데 가장 크지만 비과세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유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課稅의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是正에 障礙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탄소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의 환경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류 전반에 대한 과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현행 特別消費稅는 經濟成長에 따른 제반 여건이 변화하였고 消費構造 또한 特別消費稅 導入 당시와 크게 달라진 현 시점에서 볼 때 대폭적인 體系 改編이 불가피하다.

### Ⅲ. 主要國의 個別消費稅

본장에서는 食飲料品과 主要 耐久消費財를 중심으로 日本, 臺灣,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濠洲,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에 대응되는 關聯 消費稅制에 대해 살펴본다.

#### 1. 各國의 個別消費稅의 課稅目的과 變遷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재정품목, 즉 石油類, 酒類, 담배의 세가지 품목을 주 대상으로 個別消費稅를 課稅하고 있다. 그 밖에는 일부 국가에서 家電製品이나 食飲料品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거나 현재에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臺灣이나 노르웨이 등을 제외하고 경제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요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국가는 별로 없다<sup>1)</sup>. 더욱이 TV, 라디오, VCR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관련 세목을 폐지하는 것을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家電製品이나 食飲料品에 대해 個別消費稅를 과세하지 않은 국가도 많다. 濠洲,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1) 종전에 유럽 諸國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차등화하여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들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합한 것과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稅制調和를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단일화하고 있다. 물론 출판물이나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세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국에서 個別消費稅를 과세하는 목적은 나름대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稅收 確保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環境保護 또는 環境汚染 低減, 外部不經濟 縮小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 교정, 奢侈稅로서 稅負擔의 衡平 提高, 에너지 節約 및 效率 提高, 國民保健衛生 增進, 消費抑制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운데 각국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과세목적에 부합되는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배가 보건위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두에 두고 담배稅 強化를 통해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酒稅의 경우에도 지나친 음주가 초래하는 각종 外部不經濟를 축소하고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량세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석유류를 포함하여 제반 에너지원에 대해 環境汚染 低減 및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에너지 / 炭素稅 등으로 대표되는 環境稅를 強化하는 추세에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酒稅, 담배稅, 石油類稅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個別消費稅는 없거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개별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러한 個別消費稅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과거에는 과세되었으나 최근에 個別消費稅가 폐지된 경우가 더 많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된 배경은, 稅目代替, 稅制調和,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個別消費稅가 폐지된 예는 EU이다.

각국별로 개별소비세의 과세추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에서는 종전 후 1949년에 去來稅가 폐지된 이후 1989년에 附加價値稅의 일종인 消費稅가 도입될 때까지 일반소비세 없이 물품세 등으로 대표되는 개별소비세로만 소비세 체계가 운영되는 매우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物品稅는 酒稅와 함께 세수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별 소비세로 운용되어 왔으며, 주요 과세대상으로는 보석류 및 모피제품, 자동차, 화장품, 카메라, 家電製品 등 奢侈性 消費財가 다수 포함되어 있

어 奢侈稅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物品稅는 우리나라의 현행 특별소비세와 상당히 유사하였는데 1989년에 消費稅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物品稅를 폐지하였던 일차적인 목적은 왜곡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세수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그 밖에 물품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사치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물품세 도입 당시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던 때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사치재의 범위가 더욱 넓었으며, 이후 점차 소비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所得 增大 및 消費패턴의 고도화에 따른 奢侈稅로서의 課稅機能 弱화도 物品稅 廢止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臺灣에서는 주류, 담배, 일부의 건축자재, 타이어, 가전제품, 자동차, 家電製品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貨物稅를 과세하고 있다. 貨物稅 역시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주세와 담배소비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석유류, 주류, 담배 등 전통적인 재정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없다. 다만 각국별로 내재적인 필요에 따라 일부 품목에 국한하여 잠정적으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EU에서는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1993년 1월 1일부터 個別消費稅制 調和(excise duty harmonization)를 통해 석유류,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였다. 즉, 1992년 EU 評議會(EU Council)가 각 회원국에게 EU의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個別消費稅制 調和(excise tax harmonization)를 주창하면서 마련한 지침서(EU Council Directives)에 따라 주세, 담배세, 석유류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993년 1월 1일부터 12개 EU 회원국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EU에 새로이 가입하면서 稅制調和 조치의 일환으로서 대부분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다. 다만 EU 역내에서 국경간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개별소비세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에 따라 EU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 즉 일부의 식음료품이나 유탄유, 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稅負擔이 累進的으로 나타나 衡平 提高에 효과적인 반면 생활필수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1977년)에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생활필수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 食飲料品이나 家電製品 등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稅負擔 分布가 逆進的으로 나타낸다고 하여 食飲料品과 家電製品 등의 生活必需品에 대한 特別消費稅를 廢止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반면에 EU에서는 세부담의 형평 제고를 위해 일반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U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EU 평의회는 지침에 따라 1993년부터 대다수의 個別消費稅를 廢止한 것은, 직접적으로 稅負擔의 衡平 提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담배, 주류,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범위가 넓지 않다. 이는 그들 국가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품목이 대중소비품목으로서 생활필수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비의 저변이 매우 넓어 자칫 생활필수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따라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이 惡化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80년대 들어 稅收 減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일반소비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물품세가 폐지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초의 과세목적과 달리 物品稅 負擔이 逆進的으로 변화하면서 물품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된 데 稅目 廢止의 근본 원인이 있다. 또한 所得課稅의 비중이 매우 높은 美國을 보더라도 극히 소수의 高價 品目を 과세대상에 국한하여 聯邦奢侈稅라 불

리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稅負擔의 衡平을 제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의 범위를 사치품이나 고가품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衡平 提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소비세를 선택적으로 잘 활용하면 消費稅 負擔의 垂直的 公平性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U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개별소비세의 과세와 형평성간의 관련성이, 관련 세목을 유지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EU의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준비조처로서 個別消費稅制 調和 측면에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형평 제고 측면과 다소 괴리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특히 일부 EU 국가에서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운 성냥이나 라이터, 음료품 등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사치세로서 개별소비세를 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데에는 個別消費稅를 과세함으로써 稅負擔의 衡平性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課稅對象의 範圍가 넓을수록 과세 대상에 생활필수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확대되어 衡平 提高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일반적인 논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에서는 主要 先進國과 우리의 競爭相對國의 個別消費稅制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2. 日本

본절에서는 1989년 일반소비세인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소비세제, 특히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物品稅에 대해 살펴본다.

### 가. 消費稅 導入 以前의 消費課稅 制度

1949년에 去來稅가 폐지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반소비세가 사라졌으며, 이후 1989년에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현행 消費稅가 도입될 때까지 日本의 소비세 체계는 개별소비세만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일본의 (개별)소비세는 嗜好品稅, 物品稅, 流通稅, 特定財源課稅<sup>2)</sup>(earmarked excise)가 주종을 이루었다.

嗜好品稅는 설탕세, 담배세, 주세 등을 일컫는다. 흔히 최근에는 주류와 담배 소비에 따른 유해성, 즉 外部不經濟의 縮小를 염두에 두고 消費抑制的 租稅(sumptuary tax)로서 이들 품목을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주세 및 담배세의 목적으로 稅收 確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또한 奢侈財 및 非生必需品로 인식하여 소비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은 상대적으로 동한시되었다. 이들 세목이 대부분 세수 확보에 특화하였다는 점에서 기호품세는 오랜 동안 간접세의 주요 稅源이 되었다.

物品稅는 奢侈財를 우선적으로 과세하는 소비세로 도입되었다. 세수 측면에서 용역에 대해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미미하였으며, 대부분 특정장소 입장 및 여행 등에 대해 과세하였다. 경제발전이 따라 物品稅의 奢侈稅 機能이 점차 弱화되었다.

流通稅는 인지(stamp), 유가증권 거래 및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 등이다.

特定財源課稅는 자동차 주행(motoring) 및 그와 관련된 소비세이다. 이 소비세는 주로 도로, 공항 및 발전소 사용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었다.

---

2) 여기서는 目的稅 형태를 지닌 소비세를 지칭한다.

## 나. 物品稅의 導入과 發展過程

日本에서 物品稅는 1937년에 도입되어 1989년에 폐지되었다.

戰時였던 1937년에 일본정부는 세수 확보 및 사치재에 대한 소비억제를 위해 물품세를 도입하였다. 재정자금 충당, 즉 稅收 확보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고, 부수적으로 奢侈財 課稅를 통한 衡平 提高 및 消費抑制을 도모하였다. 물품세는 도입 당시(1937년) 과세품목이 10개였으나 1944년에는 107개 품목으로 과세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稅收比重도 크게 增大되었다.

戰後에 'Shoup Mission'은 附加價値稅制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附加價値稅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1948년부터 시행된 거래세의 왜곡효과<sup>3)</sup>와 당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았던 기업세(enterprise tax)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건의안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또는 주로) 소비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Shoup Mission'의 건의는 수 차례 시행이 연기되다가 끝내 시행하지 못하고 1958년에 폐기되었다<sup>4)</sup>.

日本에서는 물품세가 1937년에 도입되어 1989년에 폐지될 때까지 개별소비세만 존재하는 독특한 소비세 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물품세는 일본 간접세 중 기간세로 성장하였고,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과세되어 왔다.

- 3) 이론적으로 거래세는 영업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료생산, 생산업자, 도·소매업자 등 생산·유통단계가 독립적인 기업보다는, 모든 단계가 통합되어 있는 기업이 거래세 부담이 적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독립기업들의 수직적 통합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 4) 1949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것은 다음에 원인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기업세를 대체하려는 附加價値稅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즉, 기업세는 전년도 순소득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인데, 당시에 純所得稅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附加價値稅의 개념은 물론 실제 담세자가 소비자가 되는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수용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세금제도는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회의적이었다.

다. 稅目 廢止 以前의 物品稅 課稅體系

物品稅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별로 과세대상과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물품세 구조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물품세 과세대상 품목은 과세물품의 성격이나 과세단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第1種은 소매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석류 및 모피제품 등이 주된 과세대상이었다. 第2種은 제조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자동차, 일부의 가전제품, 화장품 등이 과세대상이었다.

〈表 Ⅲ-1〉 日本 物品稅의 稅率構造(1986年 基準)

(單位：%, 拾億円)

主要品目	稅率	稅收	稅收 構成比
第1種(小賣段階)			
귀금속, 진주, 모피제품	15	158.6	9.6
카펫	10	3.8	0.2
第2種(製造段階)			
모터보트, 골프클럽, 당구대	30	34.0	2.1
에어컨, 냉장고, 슬롯머신	20	193.5	11.8
전기히터, 세탁기, 식기세척기	15	353.3	21.4
라디오, 마그네틱테이프코더	10	43.1	2.6
마이크로폰, 커피, 화장품	5	85.8	5.2
小計		872.1	52.9
自動車 關聯			
승용차	30 <sup>1)</sup>		
소형승용차	18.5		
경승용차	15.5		
모터사이클	10		
소형모터사이클	5		
小計		777.9	47.1
總計		1,650.1	100.0

註：1) 임시적으로 23% 적용  
 資料：Ishi(1989).

물품세의 기본세율체계는 1962년에 표준세율체계가 채택되면서 표준세율 15%를 기준으로 확립되었다. 즉,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15%를 적용하였으며, 사치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20~3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고,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5~1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물품세가 폐지되기 직전이었던 1988년 현재 물품세 제1종(보석류 및 모피제품 등 10개 품목)에 대한 세율은 품목별로 10~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제2종(자동차, 화장품, 카메라, 가전제품 등 75개 품목)의 경우에는 5~3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대체로 사치품에 대해서는 20% 또는 3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5% 또는 1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사치성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物品稅가 전형적인 사치세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表 III-1〉 참조).

第2種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實效稅負擔率은 법정 세율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表 III-2〉 참조).

〈表 III-2〉 品目別 小賣價格 對比 物品稅의 比重(1986年)

(單位: 円, %)

	小賣價格 <sup>1)</sup>	物品稅	實效稅率
승용차(2000cc)	2,000,000	237,299	11.9
에어콘	200,000	20,000	10.0
TV(20인치)	150,000	11,934	8.0
비디오	200,000	16,956	8.5
피아노	600,000	53,217	8.9
카메라	100,000	8,739	8.7
화장품	5,000	231	4.6
소프트 드링크	100	3	3.0

註: 1) 가장 표준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기준으로 한 것임.  
資料: Ishi(1989).

物品稅는 간접세 가운데 酒稅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물품세 세수의 구성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상위 10개 품목으로부터 징수되는 세수가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였고 상위 20개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세 세수의 90% 정도에 이르는 등 소수 품목에 세수가 치중되어 있었다.

〈表 Ⅲ-3〉 日本 物品稅의 10大 品目別 稅收實績 및 比重(1986年)

(單位: %, 拾億円)

品 目	稅 收	構 成 比
승용차	675.0	40.9
에어컨	108.4	6.6
귀금속	77.6	4.7
TV	65.6	4.0
경승용차 및 모터사이클	51.3	3.1
비디오	48.1	2.9
냉장고	47.4	2.9
화장품	45.5	2.8
진공청소기	43.7	2.6
자동차용 에어컨	41.2	2.5
소 계	1,203.9	73.0
물품세 총세수	1,650.1	100.0

資料: Ishi(1989).

### 라. 物品稅의 廢止

1980년대 후반 日本에서는 稅收 擴充의 必要性和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 문제가 현안이 되면서 소비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담배세와 주세의 세수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설탕稅의 세수도 극히 미미해졌으며, 소비세의 소비억제 기능도 퇴색하면서 설탕세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자동차 주행 관련 세금(特定財源課稅) 역시 초기에는 세수가 확대되었으나 1985년을 고비로

세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稅收가 감소하였던 원인은 엔화 가치 급등에 따른 原油輸入價格(import price of crude oil)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表 Ⅲ-4〉 間接稅 稅目別 稅收比重

(單位 : %)

	1934~36	1960	1975	1985	1988 <sup>1)</sup>
1. 嗜好品稅	62.6	51.4	29.0	26.9	24.1
주류	27.0	30.2	20.5	18.0	16.0
담배	25.3	17.7	7.5	8.5	7.8
설탕	10.3	3.5	1.0	0.4	0.3
2. 個別物品 및 서비스稅	5.4	12.5	16.3	15.1	14.3
물품세	5.4 <sup>2)</sup>	10.1	15.4	14.3	13.7
도박장이용세	-	-	-	-	-
입장세	-	2.0	-	-	-
여행세	-	0.4	0.8	0.7	0.6
3. 流通稅	12.0	7.6	12.7	19.8	39.3
인지세	10.4	6.2	10.7	13.2	16.0
유가증권거래세	-	1.3	1.6	6.2	12.9
증권거래세	1.7	-	0.3	-	10.4
4. 目的稅	-	14.8	30.3	30.9	18.3
휘발유세	-	12.5	18.6	15.7	10.2
지방도로세	-	2.2	3.3	2.9	2.4
액화석유가스세	-	-	0.8	0.3	0.1
자동차중량세	-	-	6.6	5.5	1.4
항공기연료세	-	-	0.3	0.6	0.1
電源개발촉진세	-	-	0.7	2.2	1.9
석유세	-	-	-	3.7	2.2
5. 기 타 <sup>3)</sup>	20.0	13.6	11.7	7.3	4.0

註 : 1) 1988년 초의 예산수치임.

2) 소프트드링크稅와 직물소비세의 합계

3) 관세 및 원유세(crude oil tax) 포함

4) 전쟁 이전에는 個別消費稅 가운데 주세, 담배세, 설탕세의 세수가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인지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세수는 미미하였음. 특히 당시에는 지방도로세 같은 特定財源稅는 존재조차 없었음.

資料 : Ishi(1989).

반면에,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1988년에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인지세와 유가증권거래세의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세목별로 세수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다케시다 首相은 1987년 11월 戰後 일본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稅制調査委員會에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1988년에 세제개혁안을 마련하였는바, 주된 내용은 ① 소비세의 신규 도입, ② 개별소득세·상속세·법인세의 경감이었다. 특히 소비세제의 경우, 단단계<sup>5)</sup> 또는 다단계<sup>6)</sup> 소비세를 막론하고 당시 日本에서는 국세 가운데 一般消費稅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89년에 消費稅가 도입되면서 物品稅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개별 소비세가 폐지되었다.

### 3. 臺灣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臺灣의 개별소비세는 貨物稅로 대표된다. 다만 주류와 담배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주세와 담배소비세까지 함께 통합된 세목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貨物稅의 주요 課稅對象은 담배와 일부의 주류, 타이어, 시멘트, 清涼飲料, 야채주스, 유리제품,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한 일부의 가전제품, 석유류, 자동차 등이다. 담배와 주류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매우 유사하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시멘트와 석유류 등에 대해 종전에는 종가세 체계로 과세하였으나 최근 從量稅 體系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5) 영업세(sales tax) 포함.

6) 附加價値稅, 去來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6년부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한 것과 대응된다<sup>7)</sup>. 일부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체계를 전환한 것을 제

〈表 Ⅲ-5〉 臺灣의 貨物稅의 課稅對象과 稅率

(單位 : %, NT달러 /톤[1999年 시멘트],  
NT달러 /千리터[1999年 石油類],  
NT달러 /千m<sup>3</sup>[1999年 LNG],  
NT달러 /톤[1999年 LPG])

課稅對象	稅 率	
	1995年 現在	1999年 現在
커피	徵收停止	徵收停止
잎담배	徵收停止	徵收停止
양주, 맥주(火酒제외)	徵收停止	徵收停止
고무 타이어	15	15
고무 타이어(大型 車輛用)	10	10
시멘트	20	280~600
청량음료수	15	15
희석한 과일 및 야채주스	8	8
관유리 및 유리막대	10	10
電氣類 :		
冷蔵庫	13	13
天然色 TV	13	13
冷暖房機	20	20
冷暖房機(中央供給式)	15	15
除濕機	15	15
VCR	13	10
電葷(電唱機:record players)	10	10
錄音器	10	10
音響器機 (音響組合:audio recorders)	10	10
電氣오븐	15	15
石油類 :		
가솔린	60	6,500
디젤유	50	3,800
등유	50	4,050
燃料油(重油)	3	100
航空油	8	580
天然가스(LNG)	2	110
솔벤트油	10	720
石油가스(LPG)	7.5	660

7) 이에 대해서는 成明宰(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表 Ⅲ-5〉의 계속

課稅對象	稅 率	
	1995年 現在	1999年 現在
車輛類 :		
小型車(9人乘 이하)		
~2,000cc	25	25
2,001~3,600cc	35	35
3,601cc~	60	60
貨物車, 大型버스, 其他 車輛	15	15
모터사이클	17	17
電動車輛	半額	半額

註 : 酒類에 대해서는 종전에 貨物稅를 부과하였으나 專賣收入項目으로 財政收入에 기여하므로 폐지되었음.

資料 : 韓相國(1995).

Taxation and Tariff Commission(1999).

외하고는 貨物稅의 과세대상과 세율수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清涼飲料에 대한 貨物稅의 세율은 15%이며, 다만 果汁류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에어컨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家電제품에 대한 貨物稅의 세율은 10~15% 정도이다.

#### 4.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도 세제조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개편 이전에는 설탕, 청량음료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EU 評議會 지침에 따라 세제조화 이후 설탕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였다. 다만 清涼飲料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하고 있다.

그 밖에 資源保護 또는 環境保護 등을 목적으로 地表水(ground water ; 稅率 0.3471NLG /m<sup>3</sup>)와 廢棄物에 대해 個別消費稅를 과세하고 있다.

## 5.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에는 세계조화 이전부터 커피, 광천수 및 관련 제품, 清涼飲料, 야채주스 등의 일부 음료품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세계조화 이후에도 계속 과세하고 있다. 家電製品이나 乘用自動車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계조화 이전에도 없었다.

〈表 Ⅲ-6〉 벨기에의 清涼飲料 및 커피 消費稅(1999年 現在)

(單位: BEF/kg[커피], BEF/百리터[其他])

課稅對象	稅 率
볶지 않은 커피	8
볶은 커피	10
커피 추출물	28
鑲泉水 및 關聯 製品	200
清涼飲料, 레모네이드 및 기타 非알콜性 飲料	300

資料: Internet: <http://minfin.fgov.be>.

## 6.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부터 TV, 스테레오 라디오, VCR, 영사기, 망원경, 슬라이드 투영기, 비디오 게임 등을 대상으로 'imposta erariale di consumo'라고 불리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imposta erariale di consumo'의 세율은 16%이었으며, 다만 소형 TV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올리브유, 설탕, 마가린, 성냥, 라이터, 윤활유, 커피, 코코아, 전기, 바나나 등에 대해서도 'imposte di fabbricazione e di consumo'라고 불리는 個別消費稅가 과세되었다.

세계조화 이후에는 이들 두 가지 개별소비세가 모두 폐지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냥과 라이터, 윤활유에 대해서는 계속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세제조화에 따라 1993년 이전까지 상당수의 생활필수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稅負擔의 逆進性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個別消費稅를 廢止하는 데 있어 稅負擔의 逆進性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세목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EU 평의회에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성냥, 라이터, 윤활유 등은 모두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환경보호 및 특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개별소비세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 7.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1993년의 個別消費稅 調和 이후에도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課稅對象은 차량중량이 2,500kg 이하인 자동차이고, 稅率은 排氣量을 기준으로 1cc당 639~2,230Esc.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과 같이 전통적인 엔진 이외의 방법으로 구동되는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마력수를 일정한 공식을 기준으로 배기량으로 환산하여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과세하고 있다.

〈表 III -7〉 포르투갈의 自動車 消費稅(1999年 現在)

(單位 : Esc./cc)

배기량	稅 率	控除額
~1,250	639	413,574
1,251~2,500	1,515	1,507,684
2,501~	2,230	3,295,625
전기자동차	$cc = P \times 26.667$	
Wankel	$cc = P \times 16.000$	
개스올 자동차	일반 배기량 기준과 동일 세율 적용	

註 : P = 시간당 kw로 환산한 馬力數.

資料 : Internet : <http://www.dgci.min-financas.pt>.

## 8.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娛樂稅(entertainment tax)와 貴金屬稅(duty on precious metals)가 과세되고 있다. 娛樂稅는 운동경기 기간중 도박장과 슬롯머신 설치장소 등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貴金屬稅는 금, 은 등에 대한 인증시 소비세를 과세한다. 기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없다.

## 9.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1916년부터 1992년말까지 우유, 과일 및 야채주스 등을 제외한 음료에 대해 特別消費稅(special excise)를 과세하였다.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稅率은 1975~1979년에는 갤런당 0.1파운드, 1980~1990년 7월에는 0.37파운드, 1990년 8월~1992년 11월에는 0.29파운드였다.

## 10.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TV, 라디오, VCR 등 일부 家電製品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個別消費稅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이다. 의회에서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가을부터 시행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와 함께 E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어 EU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EU에 가입하면서 個別消費稅制 調和를 위해 개별소비세제를 정비하였던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EU 가입이 좌절되면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하지 않았다.

그 밖에 自動車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稅率은 重量

과 排氣量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11. 濠洲와 뉴질랜드

濠洲와 뉴질랜드에서는 석유류, 주류,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個別消費稅는 없으며 과거에도 과세한 적이 없다.

## 12. 美國

미국에서는 모피제품, 寶石·貴金屬 製品, 민간용 항공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체계는 품목별로 일정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 밖에 자동차에 대해 연비를 기준으로 燃比가 나쁜 차량에 대해 從量稅로서 燃料浪費稅(gas guzzler tax)를 과세하고 있다. 燃料浪費稅의 과세목적은 자동차 연비를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있다.

## IV. 經濟危機 以後의 經濟與件 및 特別消費稅 負擔 變化

經濟危機를 전후(1997~1998년)하여 소득 및 소비패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부담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特別消費稅의 개편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경제위기 동안의 소득·소비패턴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장에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개편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년간의 所得 및 消費構造와 特別消費稅 負擔의 계층별 變化推移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所得·消費構造의 주요 내용은 成明幸(199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정리하였다.

### 1. 所得·消費 變化推移

#### 가. 概要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이 된 가구의 總所得 平均은 2,801만원(1997년)에서 2,449만원(1998년)으로 12.6% 감소하였다. 總所得이 감소한 것은 극심한 景氣沈滯와 構造調整 등의 여파로 인한 失業과 不渡의 增加, 賃金 削減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消費支出 規模는 1997년에 1,832만원에서 1998년에는 1,618만원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와 예비적 동기에 의한 상대적인 소비억제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總所得 對比 消費支出의 비율을 나타내는 平均消費性向도

1997년에는 0.65 정도였는데 1998년에는 0.66으로 미소하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소비항목별로는 식음료비와 의복비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 식대는 별로 감소하지 않은 반면 의식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모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소비항목으로 볼 수 있어 경제위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表 IV-1〉 都市家口의 所得·消費 平均

(單位: 원)

	1997	1998
總所得 平均	28,009,547	24,490,918
總消費支出 平均	18,321,316	16,175,372
消費性向	0.6541	0.6605
食飲料費 平均	5,278,144	4,496,429
住居費 平均	610,120	564,614
光熱·水道費 平均	827,862	911,206
衣服費 平均	1,214,443	853,757
醫療費 平均	811,924	702,008
交通·通信 平均	2,317,449	2,299,697
家電製品 購入費 平均	410,478	242,023

#### 나. 所得 變化推移

경제위기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서 總所得의 절대수준이 減少하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감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表 IV-2〉 참조). 이는 1998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이 포함되게 되고 임금 또한 크게 삭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서는 총소득이 1,018만원(1997년)에서 658만원(1998년)으로 35.4% 감소하였는데 반해 5분위에서는 2,449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4.3% 감소하였고, 10분위에서는 5,590만원에서 5,300

만원으로 5.2%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所得이 낮을수록 所得占有比가 下落하고 所得이 높을수록 所得占有比가 增加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경제위기 1년 동안 所得의 絶對水準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所得分配 構造도 惡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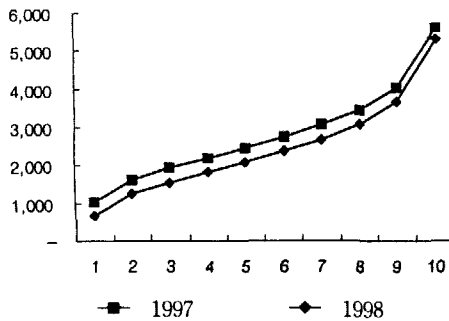
〈表 IV-2〉 所得階層別 總所得 平均

(單位：萬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計
總所得 A 97	1018	1595	1922	2195	2449	2736	3067	3428	4008	5590	2801
B 98	658	1226	1554	1843	2100	2379	2682	3080	3664	5300	2449
構成比 97	3.63	5.70	6.85	7.84	8.73	9.77	10.96	12.24	14.32	19.95	100.0
98	2.68	5.01	6.34	7.52	8.57	9.71	10.96	12.58	14.96	21.67	100.0
(B-A)/A	-35.4	-23.1	-19.1	-16.0	-14.3	-13.0	-12.6	-10.2	-8.6	-5.2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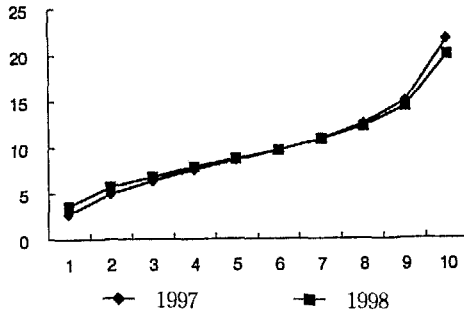
[圖 IV-1] 所得階層別 總所得

(單位：萬圓)



[圖 IV-2] 所得階層別 總所得 構成比

(單位：%)



1997~1998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年齡層에서 所得水準이 下落하였다(〈表 IV-3〉 및 [圖 IV-3] 참조).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가구는 總所得이 1,923만원(1997년)에서 676만원(1998년)으로 대폭 감소하여 소득감소율(-64.8%)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 隱退者로 볼 수 있는 60세 이상 가구와 新規 勞動市場 進入者라고 할 수 있는 20대 가구에서도 소득감소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소득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기존의 勞動市場 參與者라고 볼 수 있는 30~50대 가구에서는 所得減少率이 작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초반 가구에서 소득감소율이 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20대 및 20세 미만인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는 상당수가 未熟練 勞働者이거나 勞働供給 能力이 낮은 사람, 勞働供給 能力은 충분히 있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勞動市場 進入이 어려워진 계층이다. 이들 계층은 경제위기 이후 勞動市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1997년에 비해 所得減少率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中·長年層 가구에서 소득감소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 연령층에 속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기득권층으로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는 年齡이 높을수록 平均所得이 높아져 5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0대 이상 가구에서 소득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高年齡層으로 이행할수록 소득수준이 상승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社會·經濟的 地位나 俸給水準 또는 事業所得 등이 增加하고, 資產蓄積도 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한 金融所得 등 여타 소득이 크게 增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高齡家口에서는 隱退 등으로 인해 所得이 급속히 減少하기 때문에 所得減少率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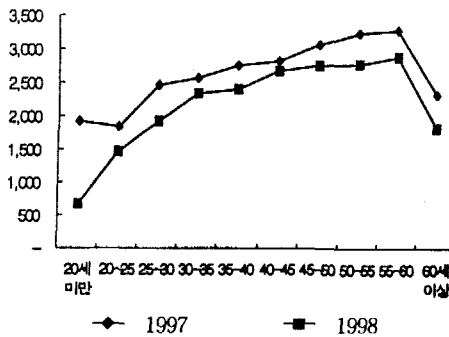
〈表 IV-3〉 年齡別 總所得 平均

(單位: 萬圓,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이상
全 體	A97	1923	1834	2463	2559	2745	2805	3056	3227	3271	2317
	A98	676	1463	1924	2336	2391	2662	2746	2761	2883	1818
(A98 - A97) / A97		-64.8	-20.2	-21.9	-8.9	-12.9	-5.1	-10.1	-14.4	-11.9	-21.5

[圖 IV-3] 年齡別 總所得

(單位: 萬圓)



#### 다. 消費支出 變化推移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수준이 감소하였다. 가구당 消費支出 規模는 1,832만원(1997년)에서 1,618만원(1998년)으로 11.7% 감소하였다. 1분위에서는 消費支出 規模가 1,092만원(1997년)에서 907만원(1998년)으로 185만원(5.7%) 감소하여 소비감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분위와 4분위, 7분위에서는 소비감소율이 15%를 다소 상회하며, 그 외의 계층에서는 10% 내외 정도였다.

1분위를 제외하고는 中·低所得層의 소비감소율이 높은 반면 中·高所得層의 消費減少率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예산제약이 큰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소비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여 이들의 소비가 중·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의 소비감소율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1분위 構成員의 特性이 매우 異質的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1분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極貧者와, 상당 정도의 富나 資產을 축적하고는 있으나 隱退 또는 기타의 요인으로 인한 一時的 失業이나 不完全 雇傭 등의 요인에 따라 調査時點에서 일시적으로 流量(flow)으로 계측한 所得水準이 낮게 조사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극빈자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基礎消費만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욱 감소하여도 더 이상 소비를 감소시킬 여력이 없다. 隱退者나 일시적 失業者, 移職者 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상당한 資產을 축적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축적된 資產을 바탕으로 소비를 영위하므로 경제 전반에 걸쳐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이들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이 복합되어 1분위의 消費減少率이 여타 계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平均消費性向은 1997년에 0.65였으며 1998년에는 0.6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1~6분위에서 소비성향이 상승한 반면에 7~10분위에서는 하락하였다. 이는 중·고소득층의 소득감소율이 중·저소득층보다 낮은 것과 궤를 같이 하며, 고소득층의 소비감소율이 소득감소율보다 작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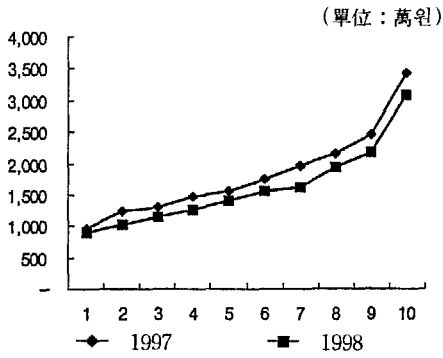
1분위의 소득감소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소비수준은 가장 작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의 消費性向은 0.95에서 1.38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1분위의 소득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감소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表 IV-4〉 所得階層別 總消費支出 平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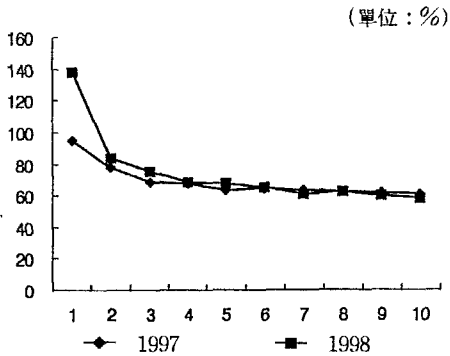
(單位：萬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計
總消費 A 97	962	1244	1311	1484	1563	1757	1958	2161	2466	3415	1832
支出 B 98	907	1028	1165	1261	1417	1558	1635	1936	2188	3078	1618
消費性向 97	94.52	77.95	68.20	67.60	63.80	64.20	63.86	63.04	61.53	61.10	65.41
98	137.8	83.90	75.00	68.41	67.49	65.48	60.96	62.86	59.71	58.07	66.05
構成比 97	5.25	6.79	7.15	8.10	8.51	9.59	10.70	11.80	13.47	18.64	100.00
98	5.60	6.37	7.20	7.79	8.76	9.63	10.12	11.98	13.52	19.05	100.00
(B-A)/A	-5.7	-17.4	-11.1	-15.0	-9.3	-11.3	-16.5	-10.4	-11.3	-9.9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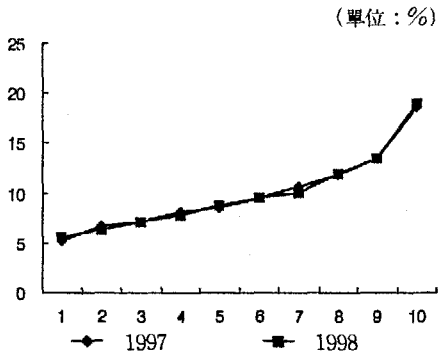
[圖 IV-4]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圖 IV-5] 所得階層別 消費性向



[圖 IV-6]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構成比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가구에서 消費減少率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후반과 20세 미만, 50대 초반,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消費減少率이 높게 나타났다. 50대 초반에서는 早期退職·名譽退職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20대 및 20세 미만에서는 新規市場 進入이 저지되어 소득 여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산도 별로 없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가운데 축적된 자산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에는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러한 가구를 중심으로 消費가 크게 萎縮된 것으로 추측된다. 成明宰(1999)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의 경제위기 동안 老年層의 失業人口化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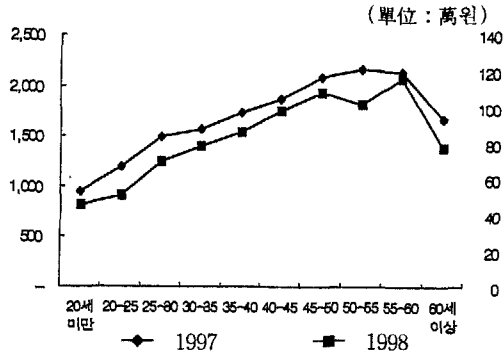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절대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0대 후반과 소득감소율이 가장 낮은 40대 초반에서 소비감소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圖 IV-7] 참조). 이들은 절대소득수준이 높아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따른 예산제약이 가장 적거나 소득감소율이 낮아 비교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年齡層으로서 消費가 소득 감소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表 IV-5〉 年齡別 總消費支出 平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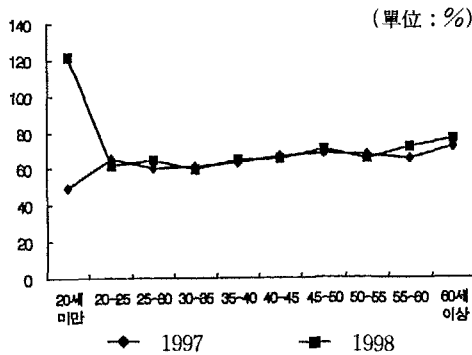
(單位: 萬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總消費支出 (A) 97	948	1195	1488	1569	1735	1871	2089	2167	2140	1666
(B) 98	818	905	1244	1399	1543	1744	1927	1813	2069	1387
消費性向 97	49.29	65.14	60.41	61.32	63.20	66.70	68.35	67.17	65.42	71.92
98	121.0	61.84	64.66	59.92	64.53	65.49	70.15	65.68	71.75	76.26
(B-A) / A	-13.7	-24.3	-16.4	-10.8	-11.1	-6.8	-7.8	-16.3	-3.3	-16.7

[圖 IV-7] 年齡別 總消費支出



[圖 IV-8] 年齡別 消費性向



### 3. 最近의 特別消費稅 負擔

經濟危機가 본격화되기 직전(1997년)에는 도시가계의 家口當 特別消費稅 負擔 平均額은 10만 3천원 정도였으며, 經濟危機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이보다 15.3% 정도 낮은 8만 7천원 수준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1998년에 特別消費稅 負擔 平均이 대폭 減少한 것은 경기위기로 인한 대폭적인 所得 減少와 그에 따른 消費 萎縮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비록 소

득이 크게 감소하였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특별소비세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구매심리가 동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特別消費稅 負擔이 매우 크게 減少함으로써 特別消費稅의 實效稅負擔率은 총소득대비 0.37%에서 0.36%, 소비지출대비 0.56%에서 0.5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特別消費稅 平均負擔이 감소하였지만 所得階層別로는 稅負擔의 變化方向이 상반되게 나타나 형평성 또한 종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低所得層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의 實效稅負擔率이 상승한 반면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實效稅負擔率이 하락하여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의 實效稅負擔率 曲線이 7분위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稅負擔이 逆進的인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圖 IV-10] 참조).

高所得層의 實效稅負擔率이 하락한 한편 低所得層의 實效稅負擔率이 상승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所得階層別로 所得 및 消費패턴이 크게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998년 동안 전반적으로 消費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高所得層이 耐久消費財에 대한 소비지출을 크게 감축하면서 高所得層의 特別消費稅 絕對稅負擔 및 實效稅負擔率이 중·저소득층에 비해 모두 크게 하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食飲料品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消費支出를 별로 감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의 所得이 크게 下落함에 따라 이들의 實效稅負擔率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면서 1998년 7월의 彈力稅率 적용을 통한 特別消費稅 輕減에도 불구하고 所得 및 消費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상대적인 稅負擔의 衡平性이 저해되었다.

〈表 IV - 6〉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單位 : 千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負擔額	97	48	57	44	65	66	66	79	168	133	307	103
	98	54	62	67	66	69	71	72	99	92	221	87
	98A	55	63	68	67	71	73	73	103	95	233	90
總所得 對比	97	0.47	0.36	0.23	0.30	0.27	0.24	0.26	0.49	0.33	0.55	0.37
	98	0.82	0.50	0.43	0.36	0.33	0.30	0.27	0.32	0.25	0.42	0.36
	98A	0.83	0.52	0.44	0.36	0.34	0.31	0.27	0.34	0.26	0.44	0.37
總消費支出 對比	97	0.49	0.46	0.33	0.44	0.42	0.38	0.40	0.78	0.54	0.90	0.56
	98	0.59	0.60	0.57	0.53	0.49	0.46	0.44	0.51	0.42	0.72	0.54
	98A	0.60	0.62	0.58	0.53	0.50	0.47	0.45	0.53	0.43	0.76	0.56
構成比	97	4.61	5.54	4.23	6.29	6.34	6.44	7.66	16.29	12.86	29.74	100.0
	98	6.14	7.09	7.61	7.58	7.95	8.18	8.27	11.36	10.51	25.31	100.0

註 :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의 세계개편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한 1998년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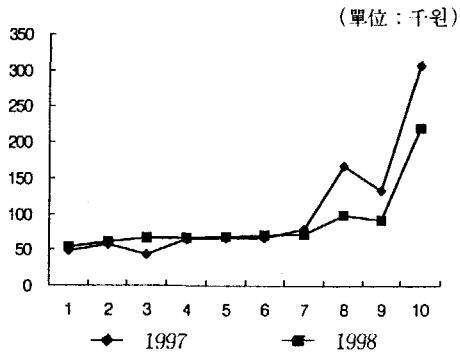
〈表 IV - 7〉 年齡別 總所得 對比 消費稅 負擔 分布

(單位 : 千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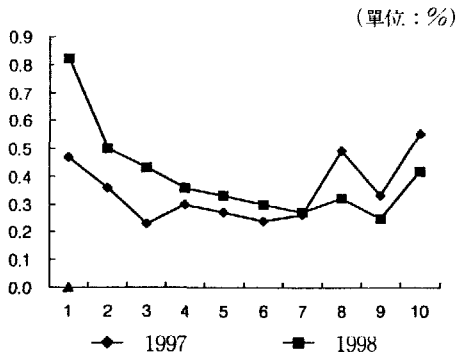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負擔額	97	24	41	110	110	92	94	108	134	96	99
	98	43	47	62	82	78	97	80	91	157	83
	98A	43	48	64	86	80	102	81	93	163	82
總所得 對比 負擔率	97	0.12	0.23	0.45	0.43	0.33	0.37	0.35	0.42	0.29	0.43
	98	0.63	0.32	0.32	0.35	0.33	0.36	0.29	0.33	0.54	0.46
	98A	0.63	0.32	0.33	0.37	0.34	0.38	0.30	0.34	0.57	0.45
總消費支出 對比 負擔率	97	0.25	0.35	0.74	0.70	0.53	0.50	0.52	0.62	0.45	0.59
	98	0.52	0.52	0.50	0.59	0.51	0.55	0.41	0.50	0.76	0.60
	98A	0.52	0.53	0.52	0.62	0.52	0.58	0.42	0.51	0.79	0.59

註 :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7년의 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가상적인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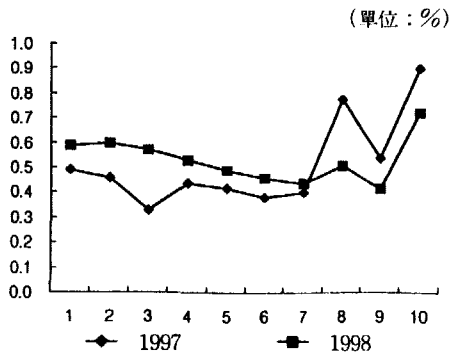
[圖 IV-9] 特別消費稅 負擔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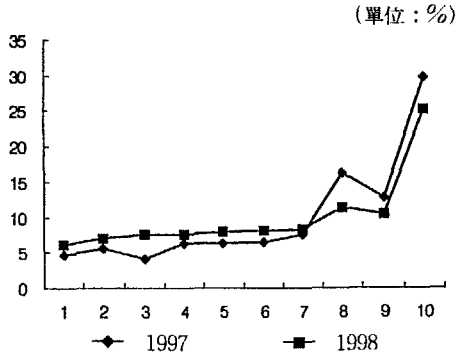
[圖 IV-10] 總所得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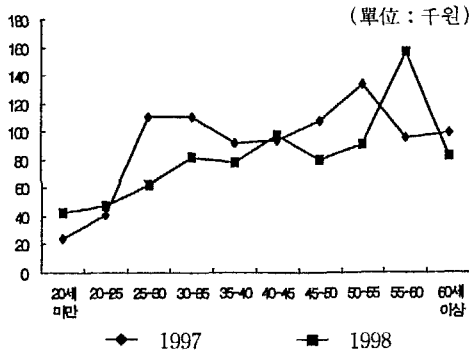
[圖 IV-11] 總消費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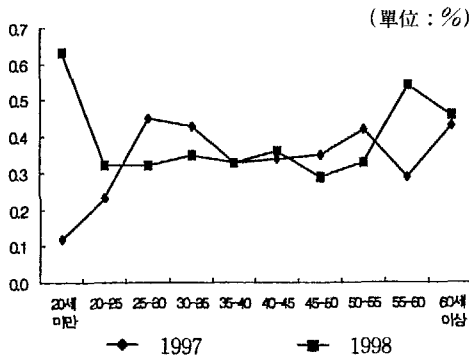
[圖 IV - 12] 特別消費稅 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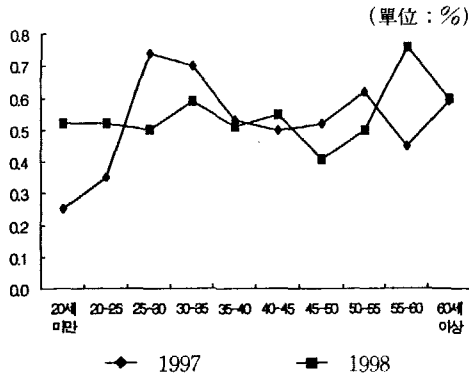
[圖 IV - 13]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額



[圖 IV - 14] 年齡別 總所得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圖 IV - 15] 年齡別 總消費 對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



## V. 最近의 特別消費稅·交通稅 負擔分布 變化

특별소비세가 도입되고 1980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한 이후 1997년말의 外換危機로 비롯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1998년에 또 다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所得·消費가 모두 급속히 減少하면서 特別消費稅 負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장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특별소비세의 주요 과세대상별 세 부담 분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해본다<sup>1)</sup>.

### 1. 特別消費稅 主要 課稅品目別 負擔

본절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가운데 비중이 높은 家電製品을 비롯한 내구소비재, 乘用自動車, 食飲料品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를 살펴본다.

#### 가. 耐久消費財 總計

##### 1) 家電製品 總計

최근에는 家電製品을 중심으로 주요 耐久消費財<sup>2)</sup>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額 平均이 1997년에 3만 110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만 5,122원

---

1)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이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成明宰(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연구에서는 冷蔵庫, 空氣淨化器, 電子렌지, 가스렌지, 淨水器, 食器洗滌器, 洗濯器, 眞空清掃器, TV, 오디오, 캠코더, VCR, 에어컨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 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세부담이 감소한 것은 1998년 7월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의 100분의 30만큼 세율을 인하하여 彈力稅率을 적용해 주었던 것과 消費 減少의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자에 따른 稅輕減 效果를 연간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15% 정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특별소비세 부담 감소는 대부분 消費 委縮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中·小型 家電製品이 대체로 모든 계층에 걸쳐 골고루 소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高價 또는 大型製品의 경우에는 高所得層에서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크게 후퇴한 1998년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中·低所得層의 경우에도 消費 支出이 감소하였지만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減少率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급감하였는데 이는 中·低所得層의 소비 감소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대부분은 高所得層의 消費 減少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家電製品을 중심으로 한 耐久消費財에 대한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構造를 보면, 1997년에는 다소 완만하게 累進的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所得階層別 總所得 대비 實效特別消費稅負擔率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져 다소 逆進的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總消費支出 대비 實效稅負擔率은 所得階層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등에 다소 특별소비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역진적인 방향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97년에 비해 1998년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세부담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 구성비가 하락한 것으로부터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97~1998년 기간 동안 特別消費稅 負擔의 衡平性이 惡化된 원인은 세제 측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所得 및 消費패턴의 급

격한 變化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 이후 모든 계층에 걸쳐 소득수준이 골고루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오히려 소득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소득층에서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1997년에는 家電製品을 중심으로 한 내구소비재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이 완만하게 累進的이었지만 經濟危機로 인해 所得 · 消費 패턴이 급변하면서 特別消費稅 負擔이 逆進的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圖 V-1]~[圖 V-3] 참조).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가 변화한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동안에는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高價의 耐久消費財 製品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高所得層의 경우에 동일 품목에 대한 2대 상의 제품 보유를 목적으로 내구소비재에 대한 구입비용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불요불급한 수요를 크게 감축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高所得層에서 高價 製品 또는 2대 이상 보유 제품에 대한 수요를 대폭 縮小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생활필수품으로서 또한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지출의 절대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요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이 매우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부담률이 별로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高所得層의 消費가 急減하였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耐久消費財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의 逆進性이 深化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97년에 비해 1998년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세부담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 구성비가 하락한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상당수의 家電製品은 生活必需品으로서 일반적인 용도로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婚需品으로도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0대 후반 가구에서 家電製品을 위주로 한 耐久消費財에 대한 稅負擔(또는 消費支出) 水準이 여타의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이들 가구의 상당 부분이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서 추론할 수 있다([圖 V-5]~[圖 V-7] 참조).

〈表 V-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耐久消費財,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7,520	14,013	12,980	17,488	22,263	35,800	30,332	36,421	57,147	67,089	30,110
稅負擔額	98	8,395	7,483	9,445	12,704	11,622	11,558	13,575	15,536	24,477	36,396	15,122
	98A	9,619	8,579	10,207	13,406	11,950	11,999	14,443	16,851	25,502	38,017	16,061
總所得 對比	97	0.739	0.878	0.675	0.797	0.909	1.308	0.989	1.063	1.426	1.200	1.075
實效稅負擔	98	1.275	0.610	0.608	0.689	0.554	0.486	0.506	0.504	0.668	0.687	0.617
	98A	1.461	0.700	0.657	0.728	0.570	0.504	0.539	0.547	0.696	0.717	0.656
總消費 對比	97	0.782	1.127	0.990	1.179	1.425	2.038	1.549	1.686	2.317	1.964	1.643
實效稅負擔	98	0.925	0.728	0.811	1.008	0.820	0.742	0.830	0.802	1.119	1.182	0.935
	98A	1.060	0.834	0.876	1.063	0.844	0.770	0.883	0.870	1.166	1.235	0.993
構成比	97	2.50	4.66	4.31	5.81	7.38	11.89	10.08	12.10	18.99	22.28	100.0
	98	5.54	4.95	6.24	8.40	7.69	7.64	8.99	10.28	16.18	24.09	100.0

註: 1. 냉장고, 공기정화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TV, 오디오, 캠코더, VCR, 에어컨의 합계임.

2.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表 V-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耐久消費財,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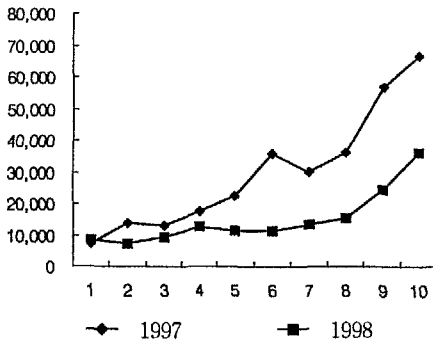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稅負擔額	97	12988	27363	27753	25656	26276	26219	33301	35167	49759	25966
	98	100	6658	10654	13378	12873	16333	14882	15306	23024	22773
	98A	115	6791	11586	13937	13579	17120	16035	16335	25725	2378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	97	0.675	1.492	1.127	1.003	0.957	0.935	1.090	1.090	1.521	1.121
	98	0.015	0.455	0.554	0.573	0.538	0.613	0.542	0.554	0.799	1.252
	98A	0.017	0.464	0.602	0.597	0.568	0.643	0.584	0.592	0.892	1.308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	97	1.370	2.290	1.866	1.635	1.515	1.401	1.594	1.623	2.325	1.558
	98	0.012	0.736	0.856	0.956	0.834	0.937	0.772	0.844	1.113	1.642
	98A	0.014	0.751	0.931	0.96	0.880	0.982	0.832	0.901	1.244	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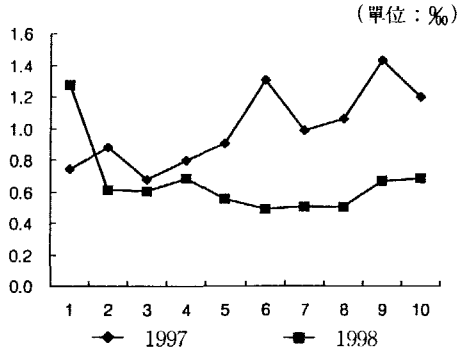
註: 1. 냉장고, 공기정화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TV, 오디오, 캠코더, VCR, 에어컨의 합계임.  
 2.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圖 V-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耐久消費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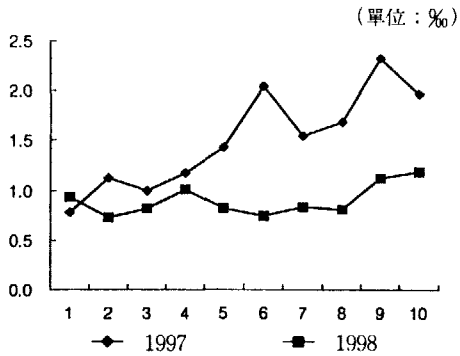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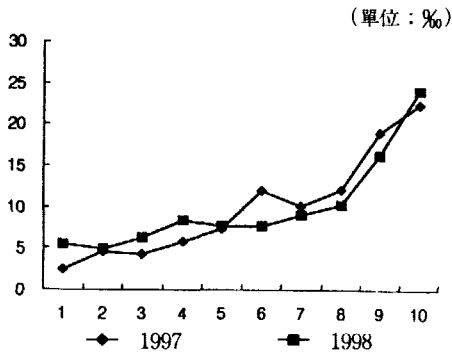
[圖 V-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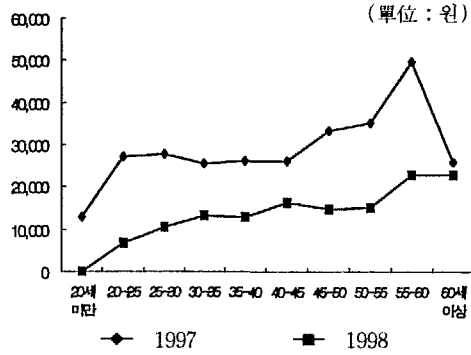
[圖 V-3]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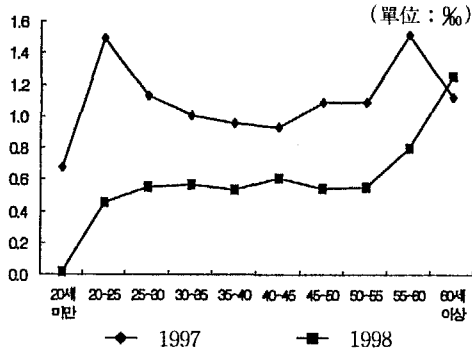
[圖 V-4] 稅負擔 構成比(耐久消費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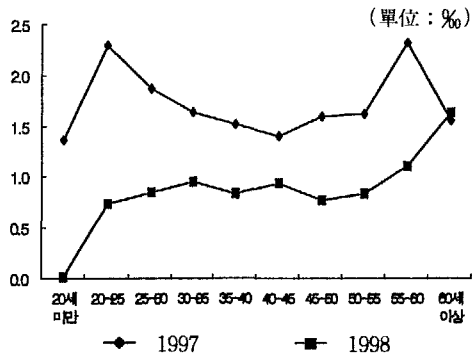
[圖 V-5] 年齡別 稅負擔額(耐久消費財)



[圖 V-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圖 V-7]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耐久消費財)



## 2) 乘用自動車 總計

乘用自動車는 비교적 고가의 내구소비재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내구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크므로 경기여건에 따라 소비의 증감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경기가 극심하게 위축된 상황하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8년 동안 내수 위축 및 세율 인하로 인해 乘用自動車에 대한 도시가계의 가구당 平均 特別消費稅 負擔額은 6만 3천원 수준(1997년)에서 2만 5천원 수준(1998년)으로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60.7% 정도 대폭 減少하였다. 이에 따라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의 實效稅負擔率도 0.24%에서 0.11%로 크게 下落하였다.

이와 같은 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이 크게 減少한 것은 경제위기 이후 소득감소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비지출이 급속히 감소한 데<sup>3)</sup> 근본 원인이 있으며, 1998년 7월부터의 稅率 引下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 밖에도 1998년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비지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1999년 1월부터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登錄稅·取得稅 重課稅를 廢止하는 문제가 1998년 상반기에 제기되면서 그나마 需要가 萎縮되었던 상황에서 有效需要 가운데 상당수가 待期需要로 전환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

家電製品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서 고가·고급제품에 대한 소비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중·소득층에서는 소비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으로써 1998년의 특별소비세 부담이 역진적인 방향으로 이행하였다. 그렇지만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대

---

3) 1996~1998년의 自家用 乘用自動車의 年末 基準 등록대수는 각각 665만 3,422대, 733만 5,413대, 732만 3,555대이다(交通新聞社와 韓國自動車工業協會 참조). 1997년의 경우에는 약 68만대가 증가한 반면 1998년에는 약 1만 2천대 정도가 감소하였다. 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대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인 신규 차량에 대한 수요가 1998년에 크게 감소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를 이루었다. 즉,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모든 계층에서 수요를 감축하였으며, 특히 한계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중·저소득층에서 소비를 포기하거나 또는 구입비용이 낮고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경차로 수요를 전환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中·低所得層의 特別消費稅 負擔이 크게 減少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절대세부담 수준은 감소하였지만 고소득층에서는 계속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반면 중·저소득층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 구조는 오히려 累進的으로 변화하였다<sup>4)</sup>.

1997~1998년 동안 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의 절대수준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가 累進的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圖 V-9]~[圖 V-10] 참조).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中·低所得層에서 乘用自動車에 대한 消費支出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1998년에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이 더욱 累進的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 나. 其他 主要 生活必需品 總計

特別消費稅 과세대상 가운데 내구소비재 이외의 생활필수품으로는 식음료품이 대표적이다. 이에 본항에서는 커피, 설탕, 청량·기호음료, 자양강장품 등의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 총계의 분포를 살펴본다.

1997~1998년 기간 동안 食飲料品에 대한 도시가계의 家口當 平均 特別消費稅 負擔額은 6,258원에서 6,566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4)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도 상승하고 소비심리도 크게 회복되면서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저소득층의 수요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금년의 경우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부담의 누진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V-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0,661	18,893	7,473	27,822	24,323	14,437	32,137	14,131	66,180	277,098	63,041
稅負擔額	98	2,002	5,786	7,333	5,383	14,058	10,197	4,508	36,108	15,972	145,960	24,750
	98A	2,322	6,709	8,448	6,222	16,209	11,761	5,204	41,648	18,471	167,857	28,505
總所得	97	2.030	1.184	0.389	1.268	0.993	0.528	1.048	4.123	1.651	4.957	2.251
對比實效	98	0.304	0.472	0.472	0.292	0.670	0.429	0.168	1.172	0.436	2.754	1.011
稅負擔率	98A	0.353	0.547	0.544	0.338	0.772	0.494	0.194	1.352	0.504	3.167	1.164
總消費	97	2.147	1.519	0.570	1.875	1.556	0.822	1.641	6.540	2.684	8.114	3.441
對比實效	98	0.221	0.563	0.629	0.427	0.992	0.655	0.276	1.865	0.730	4.743	1.530
稅負擔率	98A	0.256	0.652	0.725	0.494	1.144	0.755	0.318	2.151	0.844	5.453	1.762
稅負擔	97	3.28	3.00	1.18	4.42	3.85	2.29	5.10	22.43	10.51	43.95	100.0
構成比	98	0.81	2.34	2.96	2.17	5.68	4.12	1.82	14.60	6.45	59.05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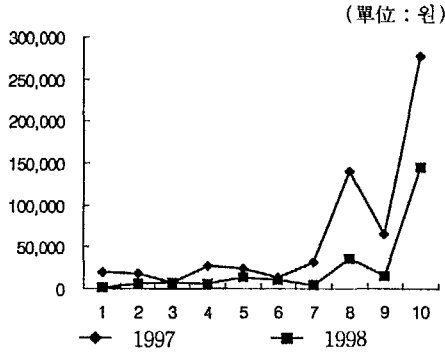
〈表 V-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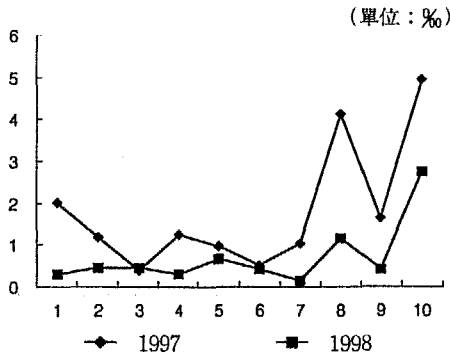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77,705	81,138	54,358	57,048	66,704	94,048	22,210	55,223
稅負擔額	98	0	0	8,006	29,293	19,327	41,434	10,109	18,983	74,973	1,361
	98A	0	0	9,254	33,793	22,232	47,688	11,652	21,884	86,278	1,578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3.155	3.171	1.980	2.034	2.183	2.915	0.679	2.383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416	1.254	0.808	1.556	0.368	0.688	2.600	0.075
	98A	0.000	0.000	0.481	1.447	0.930	1.791	0.424	0.793	2.993	0.087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5.223	5.171	3.134	3.049	3.193	4.340	1.038	3.31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644	2.093	1.253	2.376	0.525	1.047	3.624	0.098
	98A	0.000	0.000	0.744	2.415	1.441	2.735	0.605	1.207	4.171	0.11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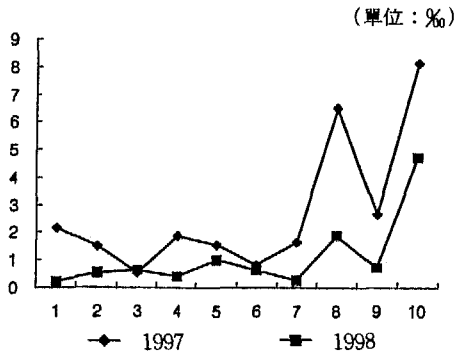
[圖 V-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自動車計)



[圖 V-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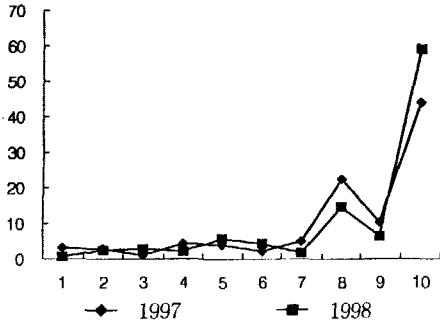


[圖 V-10]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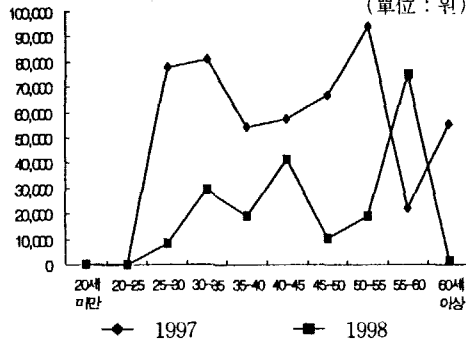
[圖 V-11] 稅負擔 構成比(自動車計)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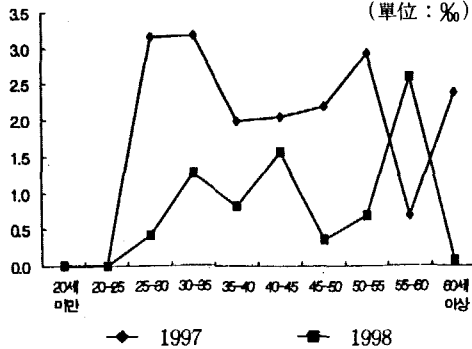
[圖 V-12] 年齡別 稅負擔額(自動車計)

(單位: 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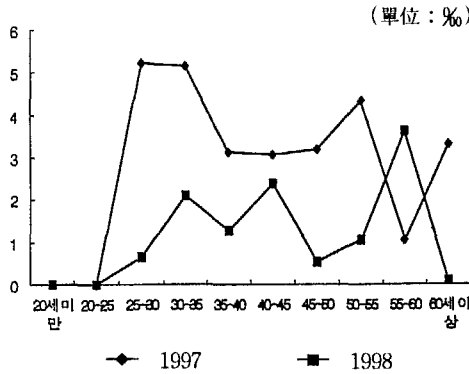


[圖 V-1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單位: %)



[圖 V-14]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食飲料品 가운데에는 설탕, 커피 등 輸入依存度가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98년의 경제위기하에서 소득이 감소하면서 식음료품에 대한 소비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換率이 急騰함에 따라 설탕과 커피 등의 輸入價格이 급등한 것이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체계가 종가세 체계라는 점과, 상당수의 식음료품이 소득에 대해 매우 非彈力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식음료품은 특성상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需要가 所得이나 價格에 대해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비록 소득계층별로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食飲料品에 대한 消費支出 水準의 차이는 소득수준의 차이보다 매우 작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더라도 세부담의 점유비는 상당히 높은 특성을 나타내므로 稅負擔의 逆進性이 매우 높다. 이는 세부담이 역진적인 가전제품과 비교해보더라도 저소득층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식음료품이라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서는 稅負擔 分布가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설탕, 커피, 청량·기호음료 등에서 역진성이 매우 큰 반면, 자양강장품(건강식품)의 경우에는 稅負擔이 매우 累進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자양강장품의 경우 生活必需品이 아니

고 일부의 경우에는 매우 고가로서 고소득층이 대부분 소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탕, 커피, 청량·기호음료 등은 소득수준보다는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담(또는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량·기호음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성년자가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表 V-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食飲料品,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4,108	5,167	4,422	5,451	6,215	6,924	6,624	6,845	7,198	9,628	6,258
稅負擔額	98	4,235	5,286	5,482	5,886	6,172	6,864	7,466	7,115	7,758	9,385	6,566
總所得 對比	97	0.404	0.324	0.230	0.248	0.254	0.253	0.216	0.200	0.180	0.172	0.223
實效稅負擔	98	0.643	0.431	0.353	0.319	0.294	0.289	0.278	0.231	0.212	0.177	0.268
總消費 對比	97	0.427	0.415	0.337	0.367	0.398	0.394	0.338	0.317	0.292	0.282	0.342
實效稅負擔	98	0.467	0.514	0.471	0.467	0.436	0.441	0.457	0.368	0.355	0.305	0.406
構成比	97	6.56	8.26	7.06	8.72	9.91	11.07	10.59	10.94	11.51	15.38	100.0
	98	6.44	8.06	8.34	8.96	9.40	10.45	11.38	10.84	11.81	14.31	100.0

註: 설탕, 커피, 청량음료, 기호음료, 건강식품의 합계임.

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表 V-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食飲料品,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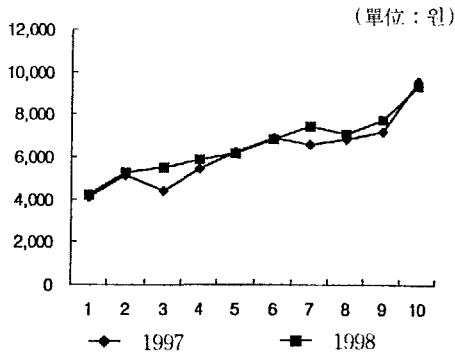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97	7,093	4,311	5,043	5,685	6,789	7,074	5,801	6,364	5,937	6,665
稅負擔額	98	3,988	5,145	4,539	6,351	7,293	7,103	6,810	6,887	6,479	5,124
總所得 對比	97	0.369	0.235	0.205	0.222	0.247	0.252	0.190	0.197	0.181	0.288
實效稅負擔率	98	0.590	0.352	0.236	0.272	0.305	0.267	0.248	0.249	0.225	0.282
總消費支出 對比	97	0.748	0.361	0.339	0.362	0.391	0.378	0.278	0.294	0.277	0.400
實效稅負擔率	98	0.488	0.569	0.365	0.454	0.473	0.407	0.353	0.380	0.313	0.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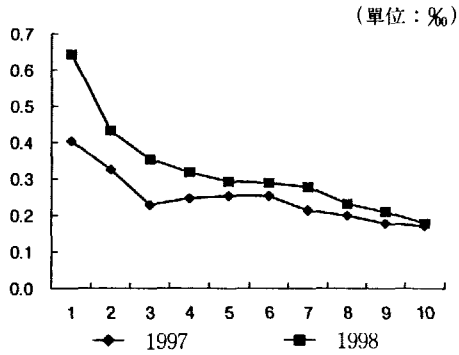
註: 1. 설탕, 커피, 청량음료, 기호음료, 건강식품의 합계임.

2.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단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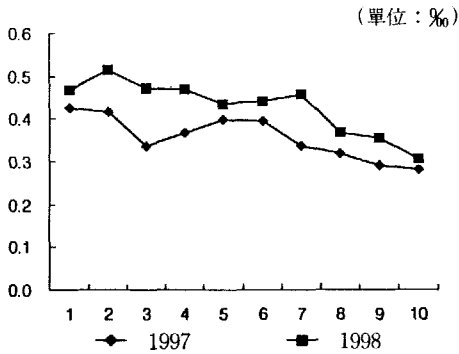
[圖 V-1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食飲料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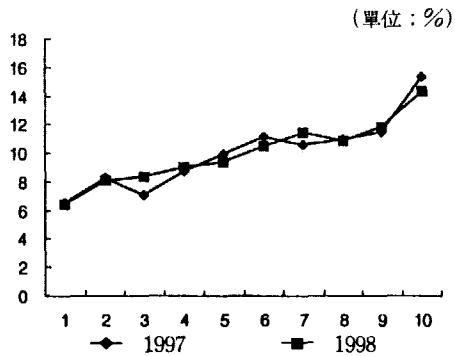
[圖 V-1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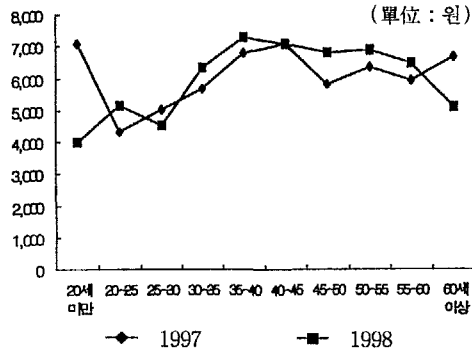
[圖 V-17]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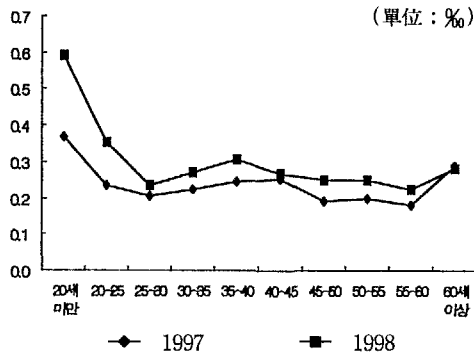
[圖 V-18] 稅負擔 構成比(食飲料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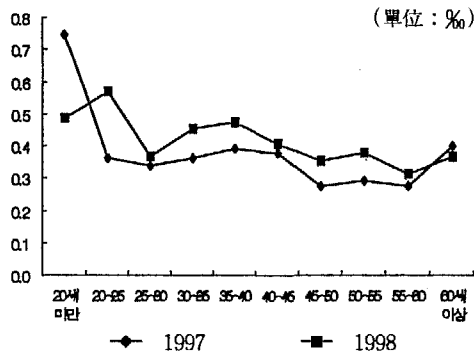
[圖 V-19] 年齡別 稅負擔額(食飲料品)



[圖 V-2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圖 V-21]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食飲料品)



## 2. 主要 耐久消費財의 品目別 特別消費稅 負擔

본절에서는 주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담 분포에 대해 살펴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附加稅의 형태로 과세되는 消費稅分 教育稅와 個別消費稅 本稅에 대한 부담은 동일하므로 두 가지를 합산한 稅負擔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가. 特別消費稅 負擔 綜合

특별소비세의 주요 과세대상 가운데 도시가계자료상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나타난 과세대상의 종류는 크게 家電製品, 乘用自動車, 石油類 製品 一部, 食飲料品, 피아노, 家具, 時計, 카메라, 寶石·貴金屬 製品 등이다. 가전제품으로는 冷蔵庫, 空氣清淨器(또는 空氣淨化器), 電子렌지, 食器洗滌器, 洗濯機, 眞空清掃機, TV, 오디오, 캠코더, VCR, 에어컨의 11가지가 해당되며, 食飲料品에는 설탕, 커피, 清涼飲料, 健康食品이 해당된다.

아래와 같이 개별품목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1998년 동안 經濟 전반에 걸쳐 벌어졌던 전반적인 消費의 萎縮現象은 절대규모 측면에서 中·低所得層보다는 購買力이 매우 높은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품목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冷蔵庫, 電子렌지, 가스렌지, 洗濯機, 眞空清掃機, TV, 오디오, VCR, 에어컨, 대형승용자동차 등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耐久消費財를 중심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추정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所得·消費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中·低所得層의 稅負擔도 감소하였지만 高所得層의 稅負擔 減少가 더 크게 나타나 稅負擔 構造는 1997년에는 所得階層別로 比例的이거나 완만하게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

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8년에는 완만하게 逆進的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萎縮 현상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所得 減少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래에 대한 不確實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소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景氣가 회복되어 消費心理가 되살아난다면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支出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所得·消費패턴이 다시 한번 변화하면서 耐久消費財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負擔 構造가 완만하게 累進的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러한 것은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高所得層보다는 中·低所得層의 消費回復速度가 더디게 나타나 세부담 구조가 완만하게 누적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예측에 있어서는 景氣가 回復됨에 따라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所得·消費패턴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대칭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과, 中·低所得層의 경우에는 所得·消費패턴이 非對稱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98년 동안 부실금융기관 문제가 증폭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現金이나 金融資産 保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最高所得層을 중심으로 價値貯藏財로서의 특성을 지니는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消費支出이 크게 增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단일세율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稅負擔과 消費支出間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논의할 때 單一稅率 品目에 대해서는 稅負擔과 消費支出 수준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나. 家電製品과 가스렌지, 淨水器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基本稅率은 15%이고 에어컨의 경우에는 1997년에 20%, 1998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1998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100분의 30만큼 경감시켜 준 彈力稅率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말 현재 각각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稅率은 10.5%와 21%이다.

전반적으로 상당수의 家電製品은 생활필수품으로서 일반적인 용도로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婚需品으로도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가구 또는 50대 후반 가구에서 상당수의 家電製品에 대한 稅負擔(또는 消費支出) 水準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이들 가구의 상당 부분이 결혼적령기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이거나 또는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家電製品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를 보면 대체로 1997년에는 所得階層別로 實效稅負擔率이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다소 완만하게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98년에는 稅負擔이 逆進의인 모습으로 변화한 경우도 많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동안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高價製品 또는 2대 이상의 제품 구입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데 비해 1998년에는 그러한 수요가 대폭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 冷蔵庫

冷蔵庫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의 家口當 平均負擔額은 1997년에 5,189원이었는데 1998년에는 40.9%가 감소한 3,067원으로 하락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대폭적인 세부담의 감소는 세율 인하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消費 萎縮이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냉장고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은 1997년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1998년에는 대폭적인 소비 위축에 따라 2~8분위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절대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며 9~10분위에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所得階層別 實效稅負擔率을 보면 1997년의 경우 1~2분위를 제외할 경우 다소 완만하게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1998년에는 대체로 U자형 모습을 보이고 있어 低所得層에서 中所得層으로 이행하면서 다소 逆進의이다.

所得階層別 稅負擔의 構成比는 분석기간 동안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세부담 구성비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구성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 것을 볼 수 있다.

冷蔵庫에 대한 年齡別 稅負擔(消費支出) 構造를 보면 50대 후반의 가구에서 가장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연령층에서는 주로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또는 2대 이상의 수요,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녀 가운데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경우 자녀들의 혼수품 장만을 위한 구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97년의 경우 20대 가구에서도 절대지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결혼적령기의 연령층에서도 냉장고에 대한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그러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기한 가설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점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인 보완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表 V-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冷藏庫,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1,843	5,079	1,596	2,398	2,871	6,320	5,934	7,082	7,183	11,571	5,189
稅負擔額	98	4,218	1,665	2,175	2,525	1,760	1,604	1,738	2,413	5,178	7,395	3,067
	98A	4,859	1,918	2,506	2,909	2,027	1,848	2,002	2,780	5,965	8,520	3,533
總所得 對比	97	0.181	0.318	0.083	0.109	0.117	0.231	0.194	0.207	0.179	0.207	0.185
實效	98	0.641	0.136	0.140	0.137	0.084	0.067	0.065	0.078	0.141	0.140	0.125
稅負擔率	98A	0.738	0.156	0.161	0.158	0.097	0.078	0.075	0.090	0.163	0.161	0.144
總消費 對比	97	0.192	0.408	0.122	0.162	0.184	0.360	0.303	0.328	0.291	0.339	0.283
實效	98	0.465	0.162	0.187	0.200	0.124	0.103	0.106	0.125	0.237	0.240	0.190
稅負擔率	98A	0.536	0.186	0.215	0.231	0.143	0.119	0.122	0.144	0.273	0.277	0.218
稅負擔	97	3.55	9.79	3.07	4.63	5.52	12.18	11.45	13.66	13.85	22.30	100.0
構成比	98	13.72	5.43	7.09	8.23	5.74	5.23	5.67	7.87	16.88	24.14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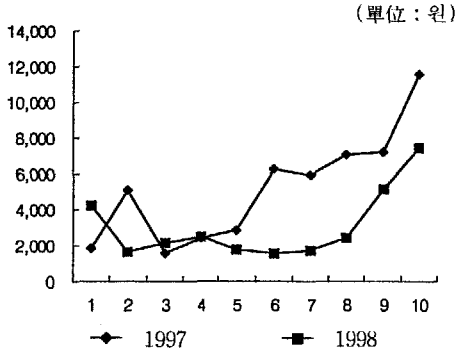
〈表 V-8〉 年齡別 分布(冷藏庫,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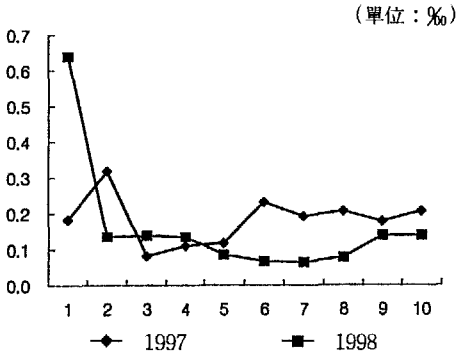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97	0	7,068	6,409	2,662	5,346	4,659	6,351	4,057	10,692	3,233
稅負擔額	98	0	1,194	3,007	1,438	2,206	2,982	3,843	2,924	9,198	3,601
	98A	0	1,375	3,464	1,656	2,541	3,436	4,427	3,369	10,597	4,149
總所得 對比	97	0.000	0.385	0.260	0.104	0.195	0.166	0.208	0.126	0.327	0.14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82	0.156	0.062	0.092	0.112	0.140	0.106	0.319	0.198
	98A	0.000	0.094	0.180	0.071	0.106	0.129	0.161	0.122	0.368	0.228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592	0.431	0.170	0.308	0.249	0.304	0.187	0.500	0.19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132	0.242	0.103	0.143	0.171	0.199	0.161	0.445	0.260
	98A	0.000	0.152	0.278	0.118	0.165	0.197	0.230	0.186	0.512	0.299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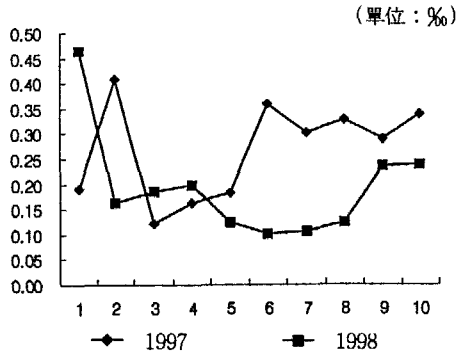
[圖 V-22]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冷藏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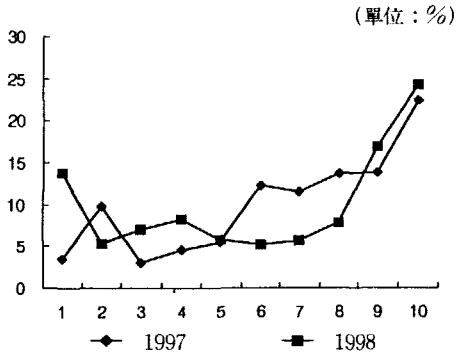
[圖 V-23]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藏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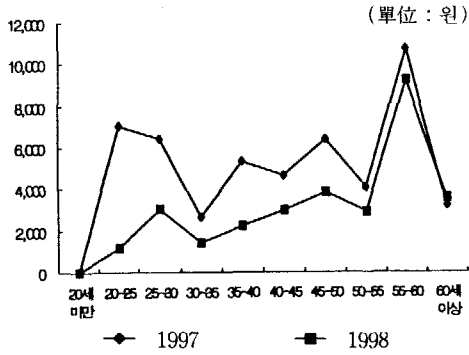
[圖 V-24]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藏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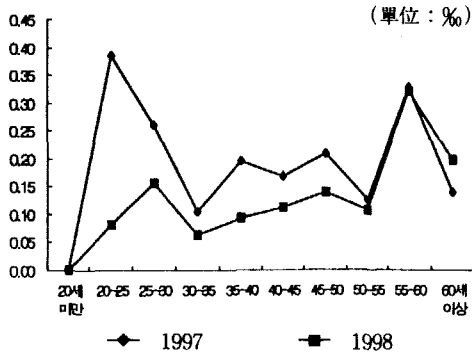
[圖 V-25] 稅負擔 構成比(冷藏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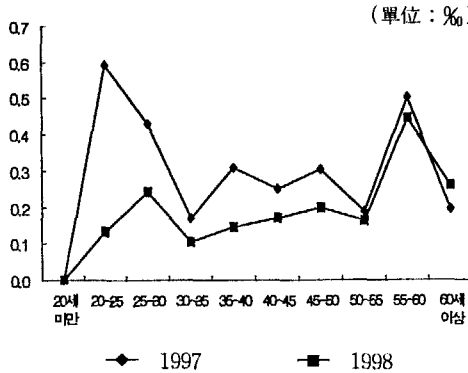
[圖 V-26] 年齡別 稅負擔額(冷藏庫)



[圖 V-27]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藏庫)



[圖 V-28]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冷蔵庫)



## 2) 空氣清淨器

空氣清淨器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의 가구당 평균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이 37원에서 19원으로 대폭 減少하였다. 다만 세부담의 절대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表 V-9>와 <表 V-10>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所得階層과 年齡層에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空氣清淨器에 대한 普及率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새로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所得階層別로는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공통된 점을 찾기 어렵지만 연령별로는 주로 30대와 40대 가구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空氣清淨器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급률 등을 감안할 때 稅負擔 構造에 대해 분석하기 어렵고 또한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表 V-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空氣清淨器,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0	269	0	0	0	107	0	0	0	37
稅負擔額	98	0	0	0	0	8	0	0	0	15	170	19
	98A	0	0	0	0	9	0	0	0	17	196	22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14	0.000	0.000	0.000	0.003	0.000	0.000	0.000	0.001
實效稅率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3	0.001
	98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	0.001
總消費 對比	97	0.000	0.000	0.020	0.000	0.000	0.000	0.005	0.000	0.000	0.000	0.002
實效稅率	98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6	0.001
	98A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6	0.001
稅負擔	97	0.00	0.00	71.56	0.00	0.00	0.00	28.44	0.00	0.00	0.00	100.0
構成比	98	0.00	0.00	0.00	0.00	3.90	0.00	0.00	0.00	7.80	88.30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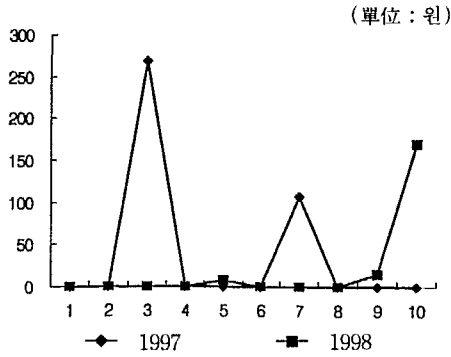
〈表 V-10〉 年齡別 分布(空氣清淨器,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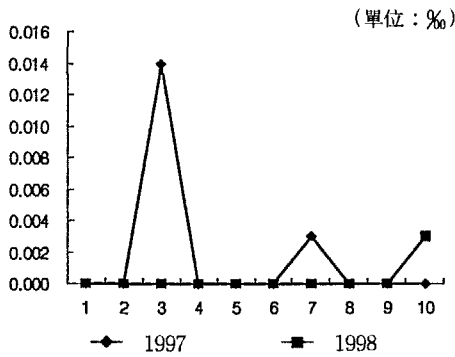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稅負擔額 97	0	0	0	57	10	163	0	0	0	0
	98	0	0	0	4	0	109	4	0	0	0
	98A	0	0	0	5	0	125	5	0	0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00	0.002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	0.000	0.000	0.000	0.000
	98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5	0.000	0.000	0.000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00	0.004	0.001	0.009	0.000	0.000	0.000	0.00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98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7	0.000	0.000	0.000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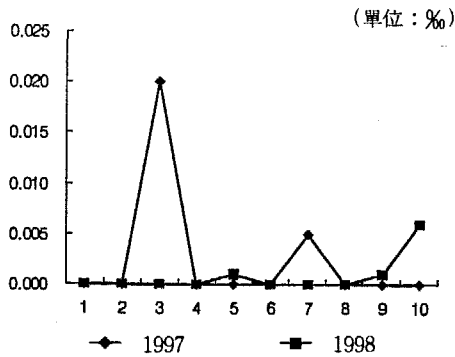
[圖 V-29]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空氣清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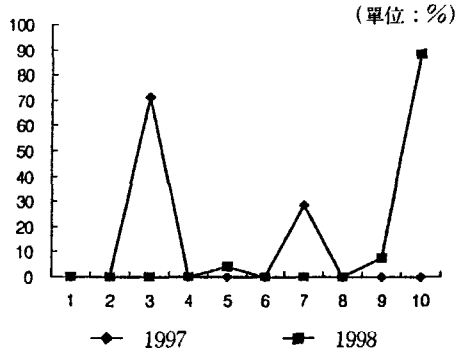
[圖 V-30]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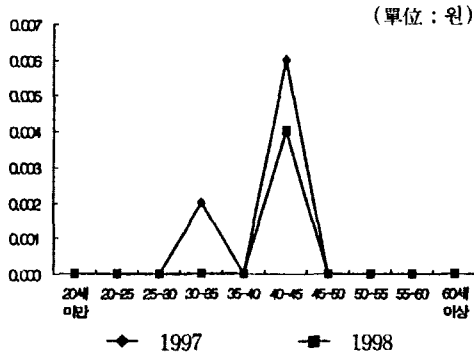
[圖 V-31]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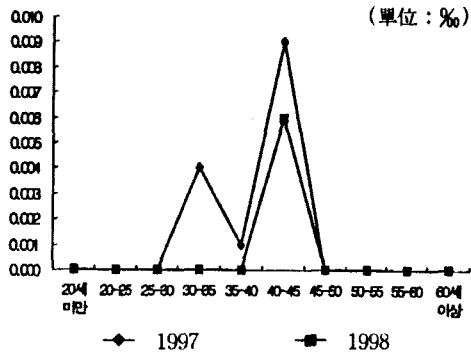
[圖 V-32] 稅負擔 構成比(空氣清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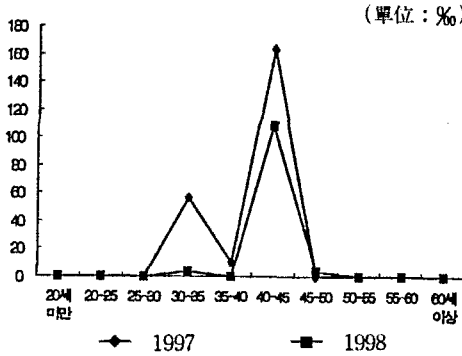
[圖 V-33] 年齡別 稅負擔額(空氣清淨器)



[圖 V-34]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圖 V-35]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空氣清淨器)



### 3) 電子レンジ

電子レンジ에 대한 家口當 平均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額은 838 원에서 333원으로 감소하여 감소율이 60.3%에 이르는 등 稅負擔의 絕對水準이 크게 減少하였다. 이는 1998년 7월부터의 彈力稅率 適用에 따라 特別消費稅의 稅率이 15%(교육세 포함시 19.5%)에서 10.5%(교육세 포함시 13.65%)로 引下되었기 때문에 稅負擔이 緩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消費支出의 減少率이 매우 크게 나타나 경기 전반에 걸친 消費 萎縮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다소의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レンジ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의 절대수준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부담의 증가율 수준도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완만하게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年齡別 稅負擔(消費支出) 構造도 兩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圖 V-40]~[圖 V-42]에서 보듯이 1997년의 경우 30대 초반 가구와 50대 가구에서 세부담(소비지출)의 절대수준과 실효세부담률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적령기의 가구 또는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이 포함된 연령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렌지의 경우에는 혼수품으로서의 수요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年齡層에서의 소비지출 또는 세부담 수준이 높은 것과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와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所得階層別로는 1997~1998년 기간 동안 모두 中所得層인 5분위와 9~10분위의 高所得層에서 消費支出 規模와 實效稅負擔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적령기의 가구로 볼 수 있는 30대 가구의 경우 5분위에 속하는 중·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으며,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많이 둔 50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年齡層에 비해 비교적 소득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高所得層에서의 消費支出 규모가 가장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규모와 실효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진 반면 5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속 소비지출 규모가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97년의 경우 이들 연령층 또는 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과 소득계층에서의 전자렌지에 대한 소비지출 및 실효세부담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1998년에는 실효세부담률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經濟危機로 인해 전반적으로 所得이 크게 減少하고 消費가 萎縮된 가운데 결과적으로 稅負擔이 逆進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稅率 引下로 인해 역진적인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表 V-1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電子렌지,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51	363	454	513	1,137	591	618	859	1,768	2,028	838
稅負擔額	98	134	109	230	197	603	366	181	390	295	827	333
	98A	154	126	265	227	695	422	209	449	339	953	384
總所得 對比	97	0.005	0.023	0.024	0.023	0.046	0.022	0.020	0.025	0.044	0.036	0.030
實效	98	0.020	0.009	0.015	0.011	0.029	0.015	0.007	0.013	0.008	0.016	0.014
稅負擔率	98A	0.023	0.010	0.017	0.012	0.033	0.018	0.008	0.015	0.009	0.018	0.016
總消費 對比	97	0.005	0.029	0.035	0.035	0.073	0.034	0.032	0.040	0.072	0.059	0.046
實效	98	0.015	0.011	0.020	0.016	0.043	0.023	0.011	0.020	0.013	0.027	0.021
稅負擔率	98A	0.017	0.012	0.023	0.018	0.049	0.027	0.013	0.023	0.016	0.031	0.024
稅負擔	97	0.61	4.33	5.41	6.12	13.54	7.06	7.37	10.26	21.11	24.19	100.0
構成比	98	4.00	3.28	6.89	5.91	18.11	10.98	5.45	11.70	8.84	24.85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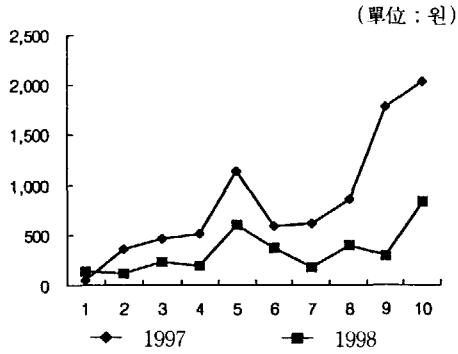
〈表 V-1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電子렌지,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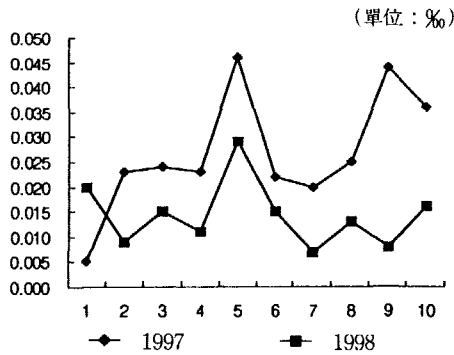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390	1,140	652	396	816	1,637	1,536	368
稅負擔額	98	0	0	469	416	168	177	475	432	642	284
	98A	0	0	540	480	194	204	547	498	740	327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16	0.045	0.024	0.014	0.027	0.051	0.047	0.016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24	0.018	0.007	0.007	0.017	0.016	0.022	0.016
	98A	0.000	0.000	0.028	0.021	0.008	0.008	0.020	0.018	0.026	0.018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26	0.073	0.038	0.021	0.039	0.076	0.072	0.022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38	0.030	0.011	0.010	0.025	0.024	0.031	0.020
	98A	0.000	0.000	0.043	0.034	0.013	0.012	0.028	0.027	0.036	0.02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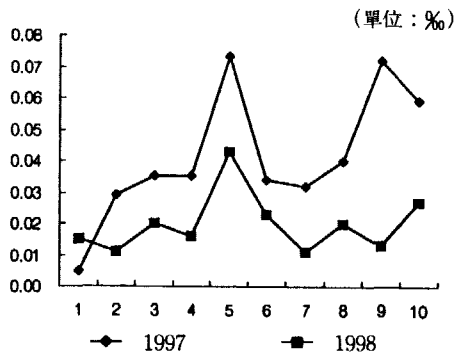
[圖 V-36]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電子レン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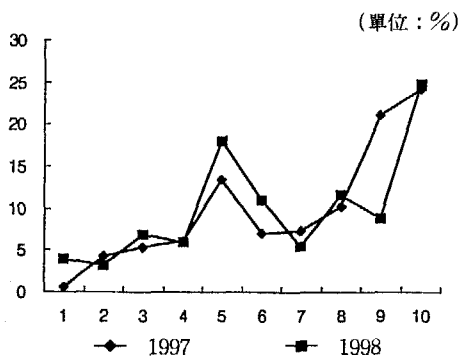
[圖 V-37]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レン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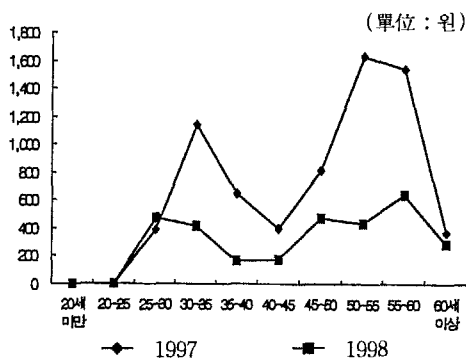
[圖 V-38]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レン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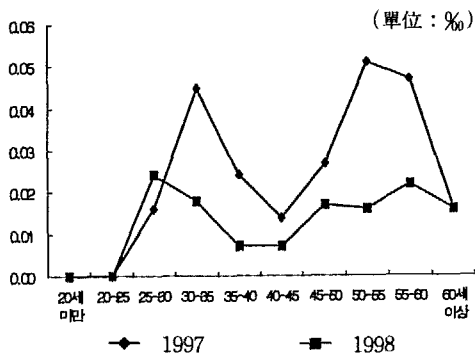
[圖 V-39] 稅負擔 構成比(電子レン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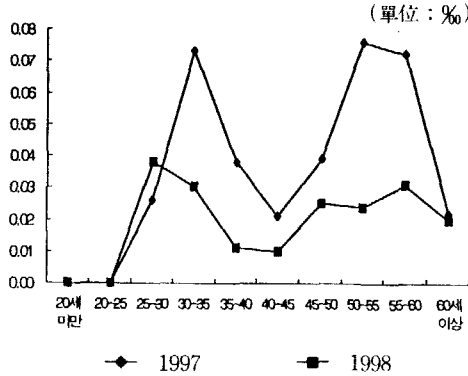
[圖 V-40] 年齡別 稅負擔額(電子レンジ)



[圖 V-41]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レンジ)



[圖 V-42]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電子렌지)



## 4) 가스렌지

가스렌지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은 消費 減少와 彈力稅率 적용으로 1,261원에서 850원으로 32.6%의 감소율을 시험하였으며 모든 所得階層에서 稅負擔이 減少하였다. 특히 8~10분위의 高所得層에서는 稅負擔(消費支出)의 절대수준이 매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年齡別로는 50대 가구에서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크게 下落하였다.

최근에는 高價의 대형제품에 대한 보급이 확산되면서 경제위기 이전 기간에는 高所得層과 所得이나 資產蓄積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 50대 가구에서 가스렌지에 대한 消費支出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경제위기 이후 이들 계층과 연령층에서 消費支出이 급속히 減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8년 동안 經濟·社會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년에는 50대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매우 높았는데 1998년에는 소비지출이 급속히 감소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表 V-1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가스렌지,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557	769	727	680	785	1,247	331	1,777	2,291	3,447	1,261
稅負擔額	98	331	575	416	803	504	1,101	1,355	646	881	1,893	850
	98A	368	885	406	903	397	926	1,902	747	619	1,994	915
總所得 對比	97	0.055	0.048	0.038	0.031	0.032	0.046	0.011	0.052	0.057	0.062	0.045
實效稅率	98	0.052	0.048	0.027	0.044	0.024	0.046	0.051	0.021	0.024	0.036	0.035
	98A	0.056	0.072	0.026	0.049	0.019	0.039	0.071	0.024	0.017	0.038	0.037
總消費 對比	97	0.058	0.062	0.056	0.046	0.050	0.071	0.017	0.082	0.093	0.101	0.069
實效稅率	98	0.036	0.057	0.037	0.063	0.036	0.071	0.083	0.034	0.041	0.064	0.053
	98A	0.041	0.086	0.035	0.072	0.028	0.059	0.116	0.039	0.028	0.065	0.057
稅負擔	97	4.42	6.10	5.76	5.40	6.21	9.89	2.63	14.10	18.18	27.32	100.0
構成比	98	3.93	6.76	4.89	9.44	5.93	12.94	15.93	7.59	10.35	22.24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단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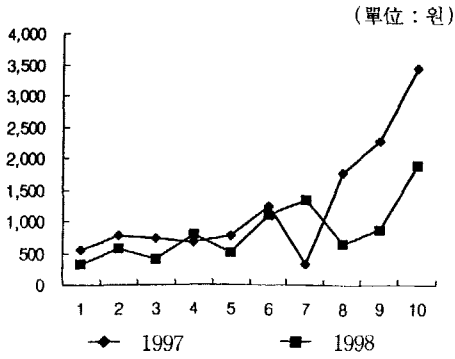
〈表 V-1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가스렌지,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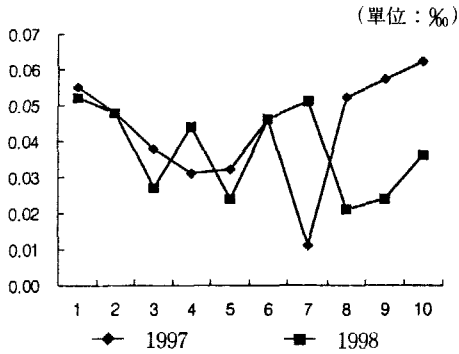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稅負擔額	97	0	72	437	1,152	1,023	1,079	837	1,617	3,241	1,567
	98	0	558	340	770	989	944	906	1,007	750	750
	98A	0	566	297	722	980	948	1,223	1,092	967	978
總所得 對比	97	0.000	0.004	0.018	0.045	0.037	0.038	0.027	0.050	0.099	0.068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39	0.018	0.033	0.041	0.036	0.033	0.037	0.026	0.043
	98A	0.000	0.039	0.015	0.031	0.041	0.036	0.045	0.040	0.034	0.054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6	0.029	0.073	0.059	0.058	0.040	0.075	0.151	0.09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58	0.028	0.056	0.064	0.055	0.048	0.057	0.037	0.056
	98A	0.000	0.063	0.024	0.052	0.064	0.054	0.063	0.060	0.047	0.07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단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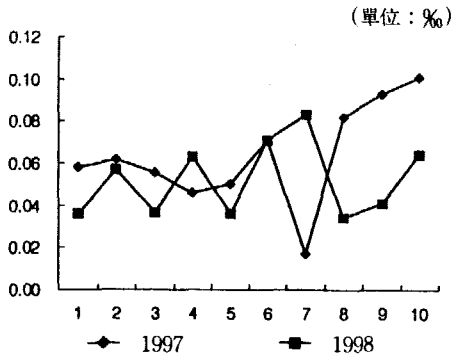
[圖 V-43] 所得階層別 稅負擔額(가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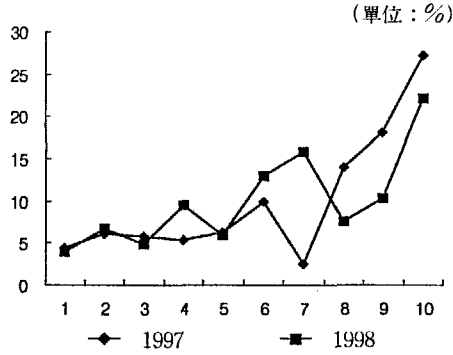
[圖 V-44]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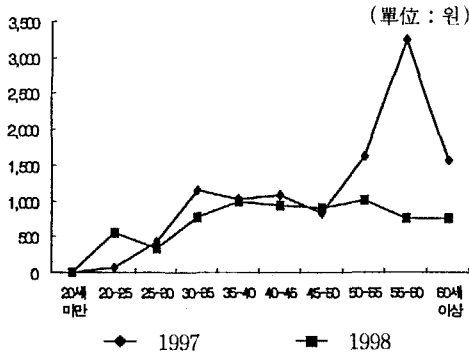
[圖 V-45]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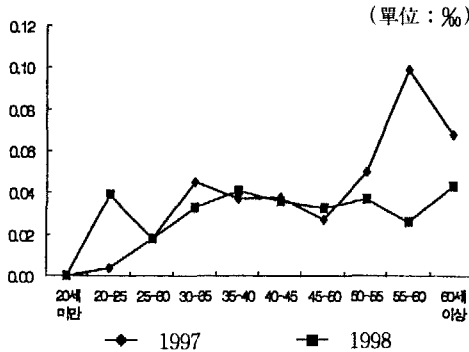
[圖 V-46] 稅負擔 構成比(가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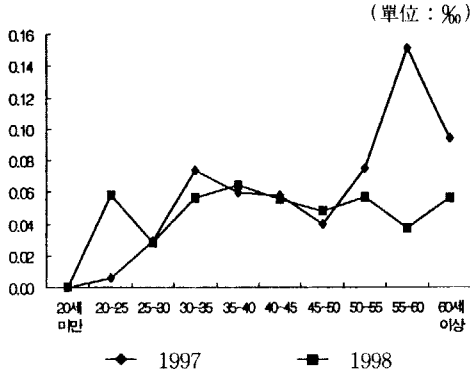
[圖 V-47] 年齡別 稅負擔額(가스렌지)



[圖 V-48]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圖 V-49]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가스렌지)



## 5) 淨水器

淨水器에 대한 家口當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 平均은 1997년에 1,106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564원으로 49.0% 정도 減少하였다. 이에 따라 實效稅負擔率도 0.0039%에서 0.0023%로 下落하였다.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分포에서는 특별한 특징을 찾기 어렵지만 1997년의 경우에는 5~6분위와 10분위의 비중이 매우 높고 1998년의 경우에는 7분위와 9~10분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高所得層의 消費比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年齡別로도 특별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데, 다만 1997년의 경우 50대 가구의 稅負擔(消費支出) 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전반적으로 消費支出이 크게 減少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징을 찾기 어렵다.

〈表 V - 1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淨水器, 教育稅 包含)

(單位: 萬,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302	139	462	412	2,203	2,407	65	0	1,119	3,956	1,106
稅負擔額	98	0	405	530	0	0	0	2,269	0	1,383	1,047	564
	98A	0	467	611	0	0	0	2,617	0	1,594	1,207	650
總所得 對比	97	0.030	0.009	0.024	0.019	0.090	0.088	0.002	0.000	0.028	0.071	0.039
實效稅率	98	0.000	0.033	0.034	0.000	0.000	0.000	0.085	0.000	0.038	0.020	0.023
	98A	0.000	0.038	0.039	0.000	0.000	0.000	0.098	0.000	0.044	0.023	0.027
總消費 對比	97	0.031	0.011	0.035	0.028	0.141	0.137	0.003	0.000	0.045	0.116	0.060
實效稅率	98	0.000	0.039	0.045	0.000	0.000	0.000	0.139	0.000	0.063	0.034	0.035
	98A	0.000	0.045	0.052	0.000	0.000	0.000	0.160	0.000	0.073	0.039	0.040
稅負擔	97	2.73	1.26	4.17	3.72	19.87	21.77	0.59	0.00	10.12	35.76	100.0
構成比	98	0.00	7.20	9.39	0.00	0.00	0.00	40.30	0.00	24.52	18.60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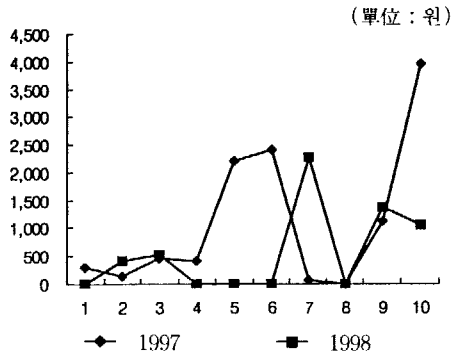
〈表 V - 1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淨水器, 教育稅 包含)

(單位: 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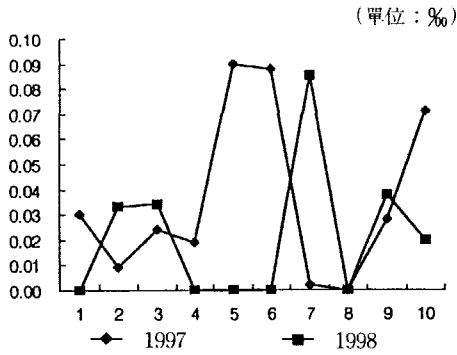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稅負擔額	97	0	0	0	1,514	351	1,037	96	2,703	3,806	232
	98	0	0	965	27	686	732	1,079	651	0	286
	98A	0	0	1,113	31	791	844	1,244	751	0	33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00	0.059	0.013	0.037	0.003	0.084	0.116	0.01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50	0.001	0.029	0.027	0.039	0.024	0.000	0.016
	98A	0.000	0.000	0.058	0.001	0.033	0.032	0.045	0.027	0.000	0.018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00	0.097	0.020	0.055	0.005	0.125	0.178	0.01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78	0.002	0.044	0.042	0.056	0.036	0.000	0.021
	98A	0.000	0.000	0.089	0.002	0.051	0.048	0.065	0.041	0.000	0.02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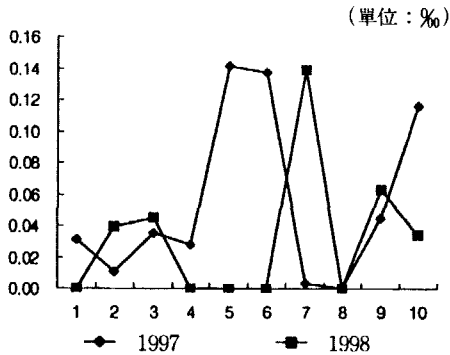
[圖 V-50]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净水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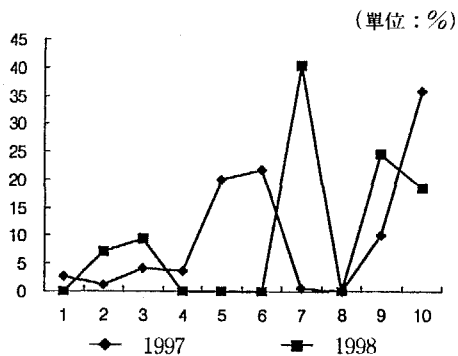
[圖 V-51]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净水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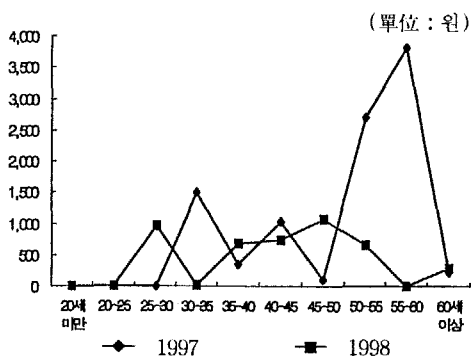
[圖 V-52]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净水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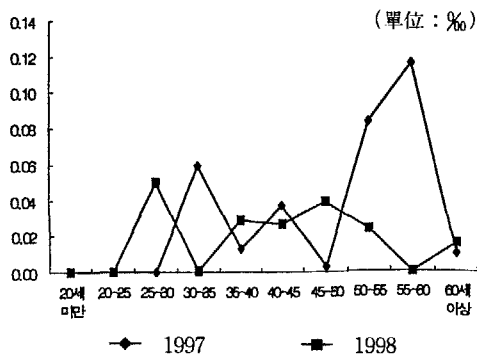
[圖 V-53] 稅負擔 構成比(淨水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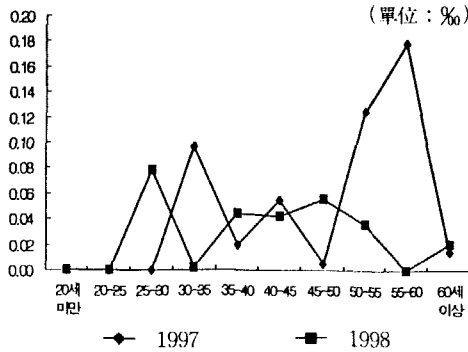
[圖 V-54] 年齡別 稅負擔額(淨水器)



[圖 V-55]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淨水器)



[圖 V-56]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淨水器)



#### 6) 食器洗滌器

食器洗滌器의 경우 教育稅를 포함한 特別消費稅의 家口當 平均負擔額은 1997년의 257원에서 1998년에는 39.3%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156원으로 대폭 下落하였다. 물론 이와 같이 대폭적인 세부담 수준의 감소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율 인하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消費支出 減少가 주 요인이다.

食器洗滌器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의 絕對水準이 家電製品 가운데 상당히 낮다는 점, 그리고 食器洗滌器가 高價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空氣清淨器와 함께 아직까지는 食器洗滌器의 普及率이 상당히 낮으며 현재 보급이 활발히 확산되는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空氣清淨器의 경우에는 일부의 所得階層과 年齡層에만 消費支出(稅負擔)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高所得層은 물론이고, 비록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低所得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空氣清淨器보다는 상대적으로 普及率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에 消費支出이 낮아졌음을 볼 때 食器洗滌器에 대한 보급확산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所得階層別로는 最高所得層에 稅負擔(消費支出)이 집중되어 있음

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1998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즉, 1997년의 경우에는 7~10분위의 稅負擔(消費支出) 比重이 72.72%, 1998년은 8~10분위의 比重이 80.79%에 이르는 등 주된 소비자층이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食器洗滌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家電製品에 비해 상대적으로 奢侈性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7년의 경우에는 5분위에서도 食器洗滌器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상당히 높아 食器洗滌器가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다소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결혼적령기의 年齡層으로 볼 수 있는 20대 후반 家口에서 상대적으로 식기세척기를 많이 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年齡別로는 20대 후반 가구와 50대 후반 가구에서의 稅負擔(消費支出) 比重이 높는데 이는 이들 연령층에서 결혼적령기의 가구 또는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30대 후반~40대 가구의 경우에도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상당히 높는데 이는 이들 연령층이 대부분 既婚家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중산층 또는 高所得層에서 생활의 편의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年齡別 稅負擔(消費支出) 水準 및 實效稅負擔率도 위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대 후반 가구의 경우에는 1998년에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들 연령층에서 勞動市場에 신규로 진입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제약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은 食器洗滌器에 대한 소비를 감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表 V-1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食器洗滌器,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51	12	177	408	55	322	291	783	476	257
稅負擔額	98	17	99	42	9	24	24	1	83	114	1,147	156
	98A	19	114	49	10	28	28	2	96	132	1,321	18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3	0.001	0.008	0.017	0.002	0.011	0.008	0.020	0.009	0.009
實效	98	0.003	0.008	0.003	0.000	0.001	0.001	0.000	0.003	0.003	0.022	0.006
稅負擔率	98A	0.003	0.009	0.003	0.001	0.001	0.001	0.000	0.003	0.004	0.025	0.007
總消費 對比	97	0.000	0.004	0.001	0.012	0.026	0.003	0.016	0.013	0.032	0.014	0.014
實效	98	0.002	0.010	0.004	0.001	0.002	0.002	0.000	0.004	0.005	0.037	0.010
稅負擔率	98A	0.002	0.011	0.004	0.001	0.002	0.002	0.000	0.005	0.006	0.043	0.011
稅負擔	97	0.00	2.00	0.46	6.87	15.81	2.12	12.52	11.30	30.42	18.48	100.0
構成比	98	1.06	6.36	2.70	0.57	1.55	1.56	0.09	5.32	7.31	73.48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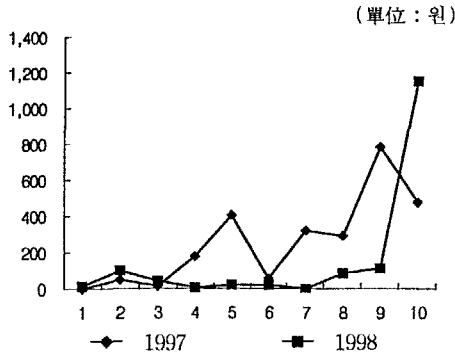
〈表 V-18〉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食器洗滌器,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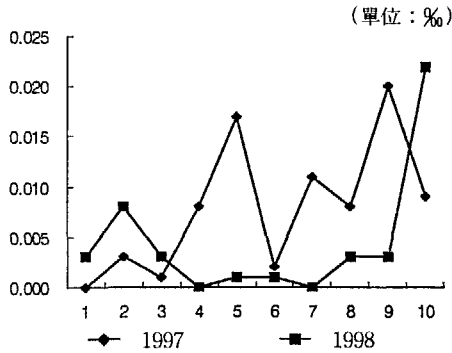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456	54	355	368	228	103	387	189
稅負擔額	98	0	0	54	77	24	560	187	0	274	0
	98A	0	0	63	89	27	645	216	0	316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19	0.002	0.013	0.013	0.007	0.003	0.012	0.008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3	0.003	0.001	0.021	0.007	0.000	0.010	0.000
	98A	0.000	0.000	0.003	0.004	0.001	0.024	0.008	0.000	0.011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31	0.003	0.020	0.020	0.011	0.005	0.018	0.011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4	0.006	0.002	0.032	0.010	0.000	0.013	0.000
	98A	0.000	0.000	0.005	0.006	0.002	0.037	0.011	0.000	0.015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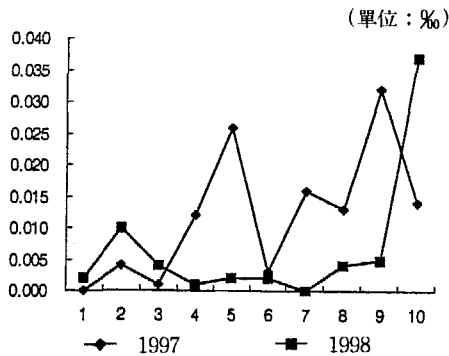
[圖 V-5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食器洗滌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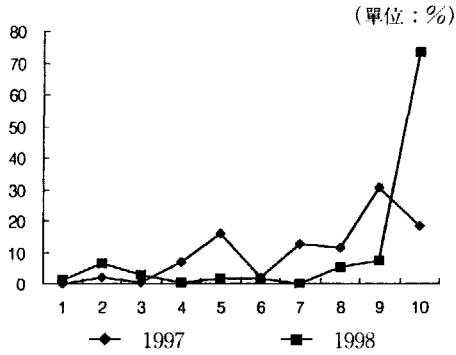
[圖 V-5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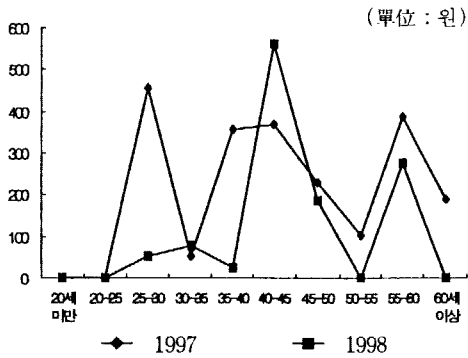
[圖 V-5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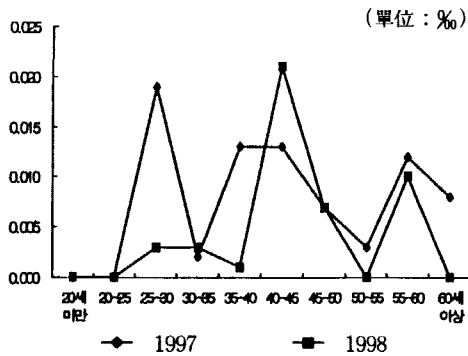
[圖 V-60] 稅負擔 構成比(食器洗滌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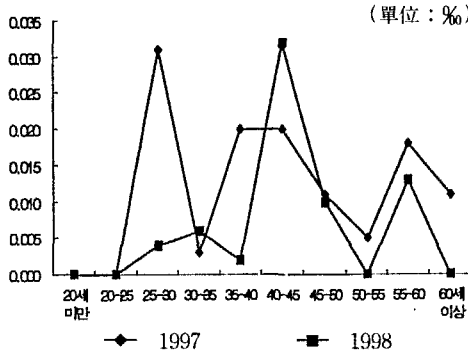
[圖 V-6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食器洗滌器)



[圖 V-6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圖 V-6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食器洗滌器)



7) 洗濯機

洗濯機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의 家口當 平均稅負擔額은 3,441원에서 1,992원으로 42.1% 減少하였다. 세탁기 역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율 인하율보다 세부담 평균 감소율이 더 큰 것을 볼 때 消費支出이 크게 萎縮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高所得層에서 稅負擔의 絕對水準이 크게 減少하였는데 이것 역시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 동안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던 현상이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야기되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洗濯機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은 1997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1998년에도 所得과 洗濯機에 대한 消費支出 水準間에는 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의 構成比도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總所得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은 1997년과 1998년이 대조적이다. 즉, 1997년에는 最低所得層인 1분위와 2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세부담 구조가 누진체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1998년에는 所得水準

이 상승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逆進의인 構造로 변화하였다. 다만 所得階層別 消費性向의 차이로 인해 總消費支出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7년의 稅負擔이 累進的인 반면 1998년의 경우에는 比例的이거나 매우 완만하게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997년의 경우 50대 후반 가구에서 稅負擔(消費支出)의 絕對水準이 가장 높는데 이는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가구가 많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8년에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30대 초반 가구의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local maximum) 洗濯機가 婚需品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家電製品과 비교해서는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表 V-1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洗濯機,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1,113	1,321	894	1,864	2,998	4,212	3,885	4,852	5,904	7,358	3,441
稅負擔額	98	877	1,863	1,241	1,396	1,898	1,165	1,887	2,489	3,336	3,766	1,992
	98A	1,011	2,146	1,430	1,608	2,186	1,342	2,174	2,868	3,843	4,339	2,295
總所得對比	97	0.109	0.083	0.047	0.085	0.122	0.154	0.127	0.142	0.147	0.132	0.123
實效	98	0.133	0.152	0.080	0.076	0.090	0.049	0.070	0.081	0.091	0.071	0.081
稅負擔率	98A	0.154	0.175	0.092	0.087	0.104	0.056	0.081	0.093	0.105	0.082	0.094
總消費對比	97	0.116	0.106	0.068	0.126	0.192	0.240	0.198	0.225	0.239	0.215	0.188
實效	98	0.097	0.181	0.107	0.111	0.134	0.075	0.115	0.129	0.152	0.122	0.123
稅負擔率	98A	0.111	0.209	0.123	0.128	0.154	0.086	0.133	0.148	0.176	0.141	0.142
稅負擔	97	3.23	3.84	2.60	5.42	8.70	12.25	11.30	14.11	17.17	21.38	100.0
構成比	98	4.39	9.36	6.22	7.00	9.53	5.84	9.48	12.50	16.74	18.93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表 V-2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洗濯機,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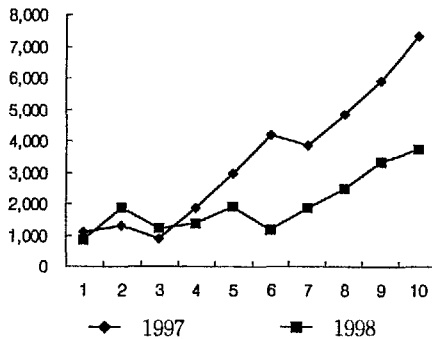
(單位: 圓, %)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97	0	4,916	2,690	3,229	2,764	3,100	3,143	5,093	6,105	2,077
稅負擔額	98	0	0	1,245	1,909	1,584	2,243	1,866	2,289	2,537	3,338
	98A	0	0	1,434	2,199	1,825	2,584	2,150	2,637	2,922	3,846
總所得 對比	97	0.000	0.268	0.109	0.126	0.101	0.110	0.103	0.158	0.187	0.09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65	0.082	0.066	0.084	0.068	0.083	0.088	0.184
	98A	0.000	0.000	0.075	0.094	0.076	0.097	0.078	0.096	0.101	0.211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411	0.181	0.206	0.159	0.166	0.150	0.235	0.285	0.125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100	0.136	0.103	0.129	0.097	0.126	0.123	0.241
	98A	0.000	0.000	0.115	0.157	0.118	0.148	0.112	0.145	0.141	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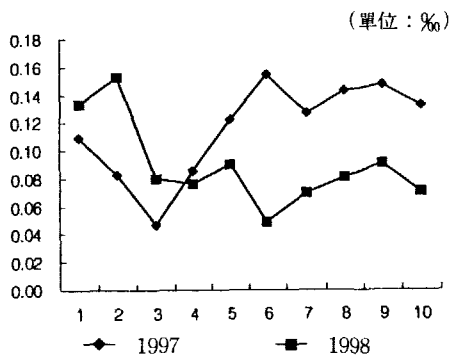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圖 V-64]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洗濯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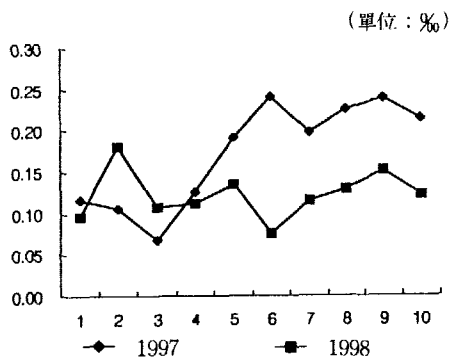
(單位: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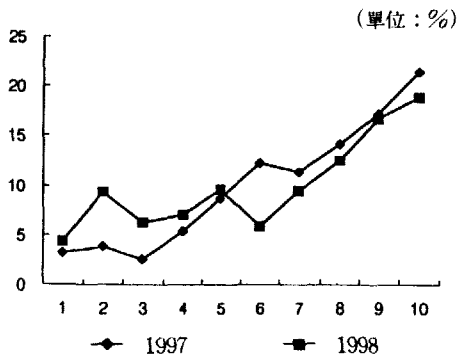
[圖 V-6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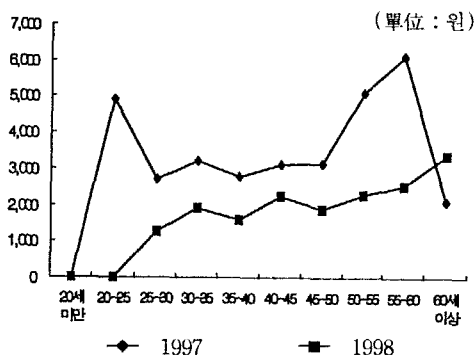
[圖 V-66]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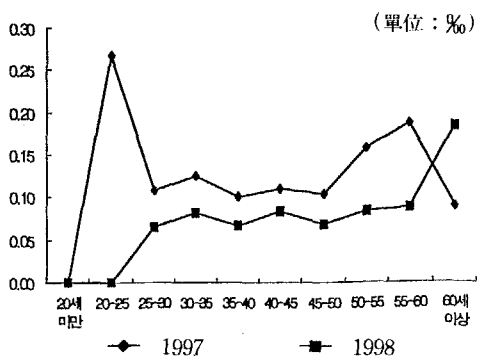
[圖 V-67] 稅負擔 構成比(洗濯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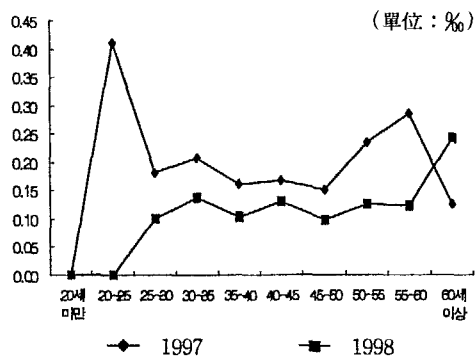
[圖 V-68] 年齡別 稅負擔額(洗濯機)



[圖 V-69]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圖 V-70]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洗濯機)



## 8) 眞空清掃機

眞空清掃機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은 799원에서 476원으로 40.4% 정도 감소하여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보다 더 높은 稅負擔 減少率을 시현하였다.

대부분의 가진제품이 그러하듯이 眞空清掃機의 경우에도 매우 완만하기는 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稅負擔(消費支出)의 절대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진공청소기의 경우에도 1997년에서 1998년으로 이행하면서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稅負擔이 매우 크게 減少하였다. 최근 매우 고가의 진공청소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발히 보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經濟危機 이전인 1997년에는 최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매우 高價인 製品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다가 1998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들 高價製品에 대한 소비가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1997년의 경우 27.85%이었던 10분위의 稅負擔 構成比도 1998년에는 17.92%로 대폭 하락하였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所得이 增加할수록 眞空清掃機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 實效稅負擔率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眞空清掃機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 構造도 다소의 逆進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1998년에는 소비 위축과 소득분포의 변화로 인해 역진성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稅負擔이 매우 크게 감소한 점이 特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이 深化된 데 대한 動因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30대 초반 가구와 50대 후반 가구의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매우 높다. 이는 진공청소기의 경우에도 婚需品으로서의 소비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에는 이들 연령층의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크게 감소한 점을 놓고 보면 분석대상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정적

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V-2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眞空清掃機,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7	608	647	562	709	743	854	750	865	2,226	799
稅負擔額	98	86	341	295	396	460	624	315	530	860	852	476
	98A	99	392	340	456	530	719	363	611	990	982	548
總所得 對比	97	0.003	0.038	0.034	0.026	0.029	0.027	0.028	0.022	0.022	0.040	0.029
實效	98	0.013	0.028	0.019	0.021	0.022	0.026	0.012	0.017	0.023	0.016	0.019
稅負擔率	98A	0.015	0.032	0.022	0.025	0.025	0.030	0.014	0.020	0.027	0.019	0.022
總消費 對比	97	0.003	0.049	0.049	0.038	0.045	0.042	0.044	0.035	0.035	0.065	0.044
實效	98	0.009	0.033	0.025	0.031	0.032	0.040	0.019	0.027	0.039	0.028	0.029
稅負擔率	98A	0.011	0.038	0.029	0.036	0.037	0.046	0.022	0.032	0.045	0.032	0.034
稅負擔	97	0.34	7.61	8.09	7.03	8.85	9.31	10.69	9.39	10.83	27.85	100.0
構成比	98	1.80	7.17	6.19	8.32	9.66	13.11	6.63	11.15	18.05	17.92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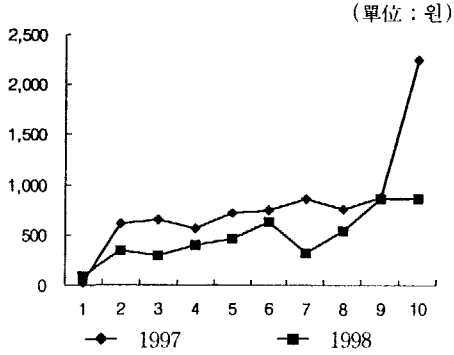
〈表 V-2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眞空清掃機,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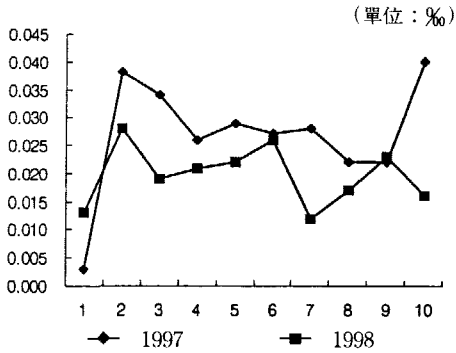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635	1,104	668	818	791	698	1,431	267
稅負擔額	98	100	396	413	287	404	408	837	575	641	486
	98A	115	457	475	330	466	471	965	663	739	56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26	0.043	0.024	0.029	0.026	0.022	0.044	0.012
實效稅負擔率	98	0.015	0.027	0.021	0.012	0.017	0.015	0.030	0.021	0.022	0.027
	98A	0.017	0.031	0.025	0.014	0.019	0.018	0.035	0.024	0.026	0.031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43	0.070	0.038	0.044	0.038	0.032	0.067	0.016
實效稅負擔率	98	0.012	0.044	0.033	0.020	0.026	0.023	0.043	0.032	0.031	0.035
	98A	0.014	0.050	0.038	0.024	0.030	0.027	0.050	0.037	0.036	0.04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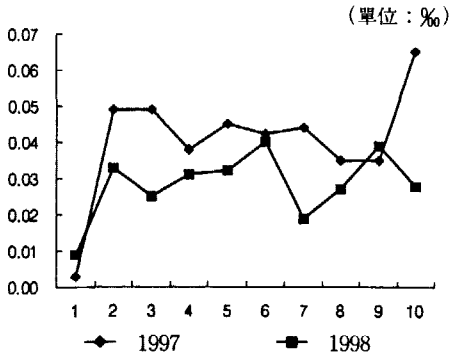
[圖 V-7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真空清掃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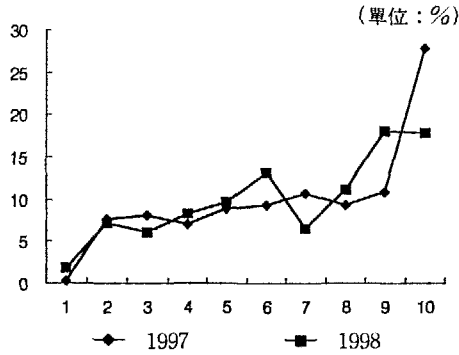
[圖 V-7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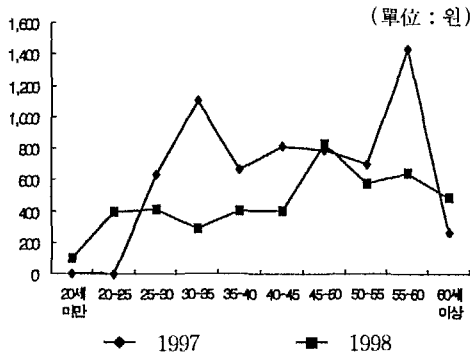
[圖 V-7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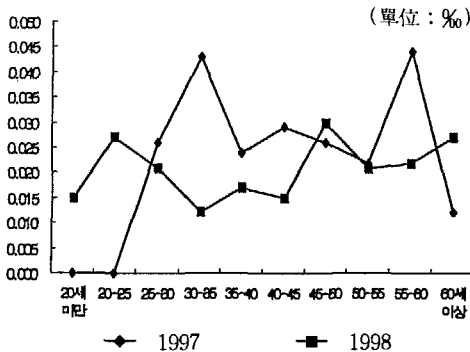
[圖 V-74] 稅負擔 構成比(眞空清掃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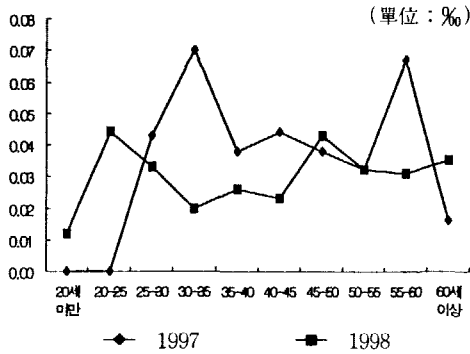
[圖 V-75] 年齡別 稅負擔額(眞空清掃機)



[圖 V-7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眞空清掃機)



[圖 V-7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真空清掃機)



## 9) TV

TV는 普及率이 100%를 초과한 대표적인 품목의 하나이다. 1980년대까지는 1가구 1TV의 경향이 높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1가구 2대 이상의 TV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都市家計資料를 분석한 것으로부터는 직접 추론할 수 없지만 TV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分布를 보면 간접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TV에 대한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를 보면 低所得層의 絕對 稅負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V가 일상생활에서 生活必需品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확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으로 이행할수록 TV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7분위 또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稅負擔의 절대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表 V-23>의 1997년 수치 참조). 高所得層에서 TV에 대한 稅負擔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의 보유TV에 대한 代替需要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高價·大型製品 또는 2대 이상의 추가적인 TV 需要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TV가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일부의 계층에서 고가제품을 선호하고 또한 여러 대의 TV를 보유 또는 소비함으로써 稅負擔이 所得階層別로 累積的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實效稅負擔率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에는 所得分布 및 消費패턴이 매우 급격히 변화하면서 TV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 構造는 이전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所得階層에서 TV에 대한 消費支出 規模가 감소하는 가운데 절대액수 측면에서 高所得層의 감소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 總所得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이 下落하는 가운데 특히 高所得層의 實效稅負擔率 下落率이 더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稅負擔이 逆進的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年齡別로는 1997년의 경우 30대 초반 가구와 50대 후반 가구에서 稅負擔(消費支出)의 절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年齡層에서 婚需品으로서 구입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998년에는 30대 초반 가구에서 TV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크게 下落하였으나 50대 후반 가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같은 혼수품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50대 후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所得水準과 자산축적 수준이 낮은 30대 초반 가구가 自家 婚需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바,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의 급속한 감소가 TV에 대한 소비 지출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表 V-2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TV,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269	1,505	3,497	5,054	4,312	2,423	6,557	5,660	10,587	11,144	5,301
稅負擔額	98	1,170	1,125	1,401	948	650	1,569	930	3,017	2,532	4,168	1,751
	98A	1,348	1,296	1,614	1,092	749	1,808	1,072	3,476	2,917	4,802	2,018
總所得 對比	97	0.223	0.094	0.182	0.230	0.176	0.089	0.214	0.165	0.264	0.199	0.189
實效	98	0.178	0.092	0.090	0.051	0.031	0.066	0.035	0.098	0.069	0.079	0.072
稅負擔率	98A	0.205	0.106	0.104	0.059	0.036	0.076	0.040	0.113	0.080	0.091	0.082
總消費 對比	97	0.236	0.121	0.267	0.341	0.276	0.138	0.335	0.262	0.429	0.326	0.289
實效	98	0.129	0.109	0.120	0.075	0.046	0.101	0.057	0.156	0.116	0.135	0.108
稅負擔率	98A	0.149	0.126	0.138	0.087	0.053	0.116	0.066	0.180	0.133	0.156	0.125
稅負擔	97	4.28	2.84	6.59	9.54	8.12	4.57	12.38	10.68	19.99	21.02	100.0
構成比	98	6.67	6.43	7.99	5.41	3.71	8.96	5.32	17.24	14.45	23.82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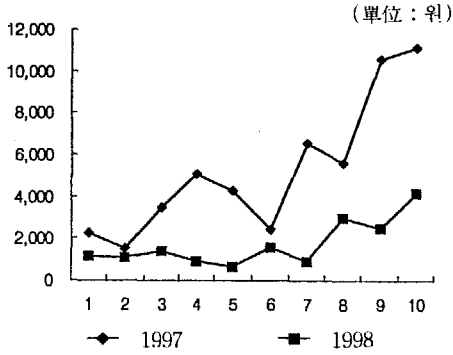
〈表 V-2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TV,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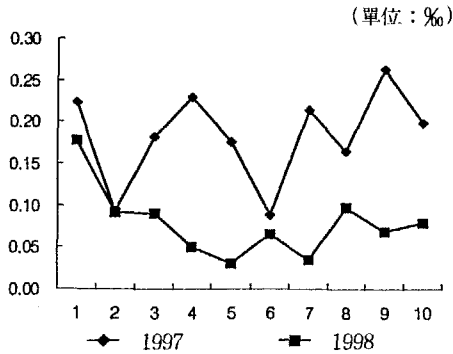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2,153	3,722	6,147	5,596	3,227	5,118	6,214	7,675	5,770
稅負擔額	98	0	322	1,512	889	1,616	1,257	1,186	2,452	4,442	3,496
	98A	0	371	1,742	1,024	1,862	1,449	1,367	2,825	5,117	4,027
總所得 對比	97	0.000	0.117	0.151	0.240	0.204	0.115	0.167	0.193	0.235	0.249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22	0.079	0.038	0.068	0.047	0.043	0.089	0.154	0.192
	98A	0.000	0.025	0.091	0.044	0.078	0.054	0.050	0.102	0.177	0.221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180	0.250	0.392	0.323	0.172	0.245	0.287	0.359	0.346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36	0.122	0.064	0.105	0.072	0.062	0.135	0.215	0.252
	98A	0.000	0.041	0.140	0.073	0.121	0.083	0.071	0.156	0.247	0.29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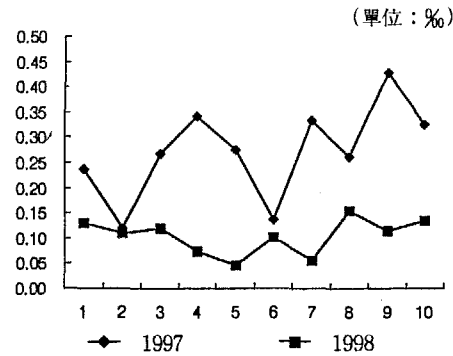
[圖 V-7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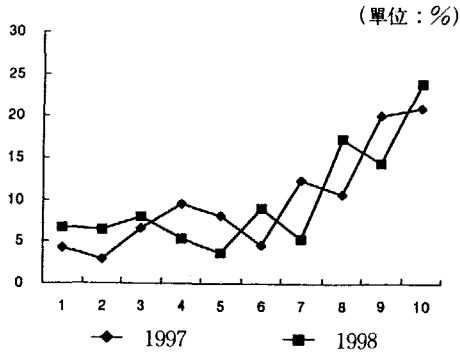
[圖 V-7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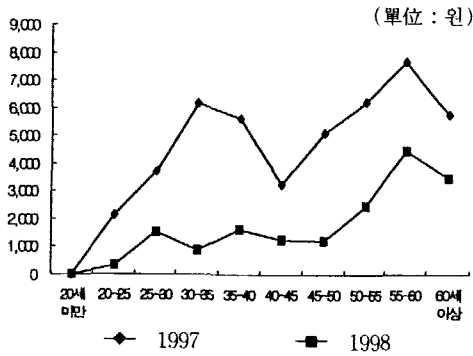
[圖 V-8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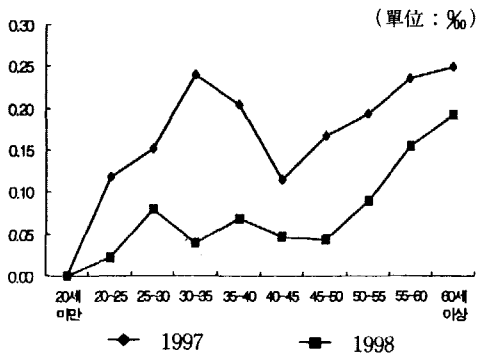
[圖 V-81] 稅負擔 構成比(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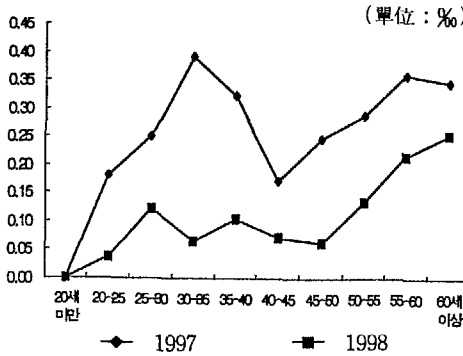
[圖 V-82] 年齡別 稅負擔額(TV)



[圖 V-8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TV)



[圖 V-8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TV)



#### 10) 오디오세트

所得水準이 크게 증대되고 消費패턴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오디오세트의 경우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高所得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음악애호가들을 중심으로 消費支出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오디오세트의 경우에는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비록 소득수준이 그에 못 미치더라도, 소비지출 수준이 고소득층에 비해 별로 낮지 않은 中所得層 이하의 가구에서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후자의 경우는 일부의 中·低所得層에서도 오디오세트의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낮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中·低所得層이라고 하더라도 오디오세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가 부분적으로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오디오세트의 경우 家口當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 平均은 1,926원에서 743원으로 감소하여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61.4%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먼저 본격적인 經濟危機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7년의 경우에는 8~10분위의 高所得層에서 消費支出(稅負擔)의 절

대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계층의 稅負擔 比重도 59.12%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高所得層의 絶對 稅負擔(消費支出) 規模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경우에는 稅負擔이 6,453원에서 1,869원으로 감소율이 무려 71.0%에 이르는 등 消費支出 규모의 減少가 크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消費支出의 감소현상은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8~10분위의 稅負擔 構成比는 48.75%로 전년에 비해 소폭 下落하는 데 그쳤다.

오디오세트에 대한 需要는 특성상 TV나 VCR 등과 달리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특정 부류를 중심으로 고급 문화에 대한 수요의 한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所得이나 富의 水準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오디오세트를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층은 상당히 無作爲性(randomness)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所得階層別 實效稅負擔率도 상당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圖 V-86]과 [圖 V-87]의 實效稅負擔率 曲線도 W字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年齡別로는 표본의 수가 매우 적은 20대 가구를 제외할 경우, 20대 후반 가구와 50대 후반 가구에서 절대 稅負擔(消費支出) 수준과 實效稅負擔率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1997년) 이는 婚需品으로서의 需要도 상당히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아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表 V-2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오디오세트,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760	172	1,417	2,171	759	2,169	423	2,029	2,903	6,453	1,926
稅負擔額	98	910	325	0	1,191	365	598	423	1,171	581	1,869	743
	98A	1,048	374	0	1,372	421	688	487	1,349	669	2,153	856
總所得 對比	97	0.075	0.011	0.074	0.099	0.031	0.079	0.014	0.059	0.072	0.115	0.069
實效	98	0.138	0.027	0.000	0.065	0.017	0.025	0.016	0.038	0.016	0.035	0.030
稅負擔率	98A	0.159	0.031	0.000	0.074	0.020	0.029	0.018	0.044	0.018	0.041	0.035
總消費 對比	97	0.079	0.014	0.108	0.146	0.049	0.123	0.022	0.094	0.118	0.189	0.105
實效	98	0.100	0.032	0.000	0.094	0.026	0.038	0.026	0.061	0.027	0.061	0.046
稅負擔率	98A	0.116	0.036	0.000	0.109	0.030	0.044	0.030	0.070	0.031	0.070	0.053
稅負擔	97	3.95	0.89	7.35	11.28	3.94	11.27	2.20	10.54	15.08	33.50	100.0
構成比	98	12.22	4.38	0.00	16.01	4.91	8.04	5.70	15.77	7.81	25.17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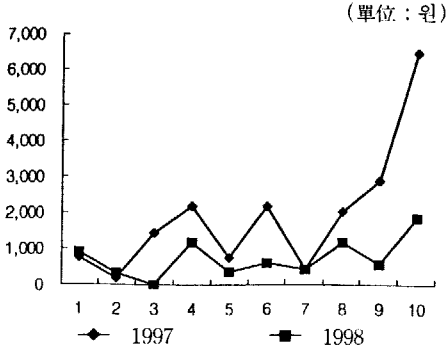
〈表 V-2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오디오세트,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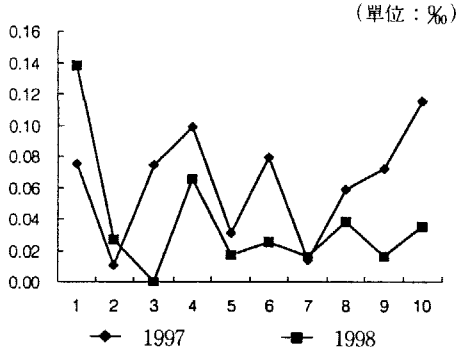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12,988	0	2,533	1,728	953	1,828	1,572	2,846	4,770	1,126
稅負擔額	98	0	1,494	152	875	941	687	408	239	863	1,580
	98A	0	1,722	175	1,008	1,084	791	470	275	994	1,821
總所得 對比	97	0.675	0.000	0.103	0.068	0.035	0.065	0.051	0.088	0.146	0.049
實效稅負擔率	98	0.000	0.102	0.008	0.037	0.039	0.026	0.015	0.009	0.030	0.087
	98A	0.000	0.118	0.009	0.043	0.045	0.030	0.017	0.010	0.034	0.100
總消費支出 對比	97	1.370	0.000	0.170	0.110	0.055	0.098	0.075	0.131	0.223	0.068
實效稅負擔率	98	0.000	0.165	0.012	0.063	0.061	0.039	0.021	0.013	0.042	0.114
	98A	0.000	0.190	0.014	0.072	0.070	0.045	0.024	0.015	0.048	0.131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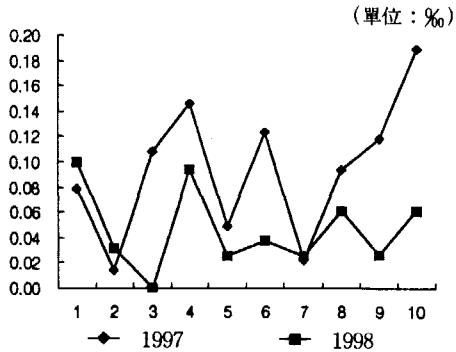
[圖 V-8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오디오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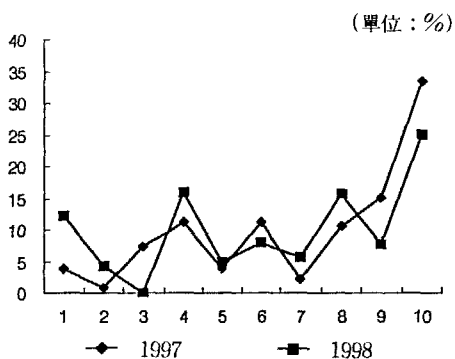
[圖 V-8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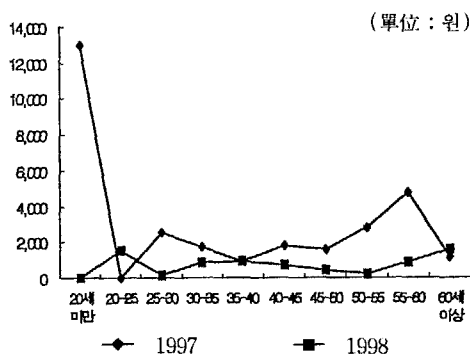
[圖 V-8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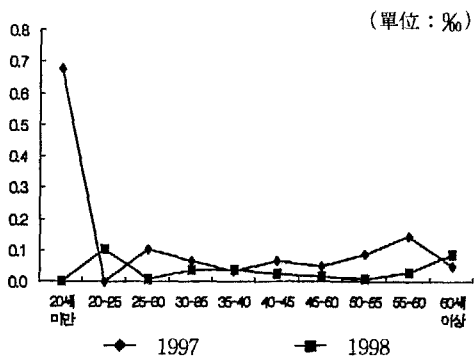
[圖 V-88] 稅負擔 構成比(오디오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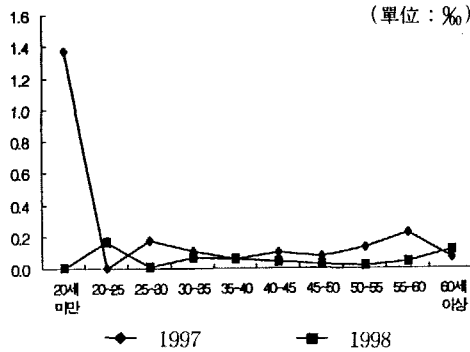
[圖 V-89] 年齡別 稅負擔額(오디오세트)



[圖 V-9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圖 V-9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디오세트)



## 11) 캠코더

캠코더에 대한 家口當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 平均은 605원에서 315원 수준으로 減少하였다. 캠코더의 價格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 TV, 냉장고, 오디오세트, 洗濯機 등의 家電製品과 비교해 볼 때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아직 캠코더가 대중적인 소비재로서 자리매김되지 않고 보급이 한창 진행중인 품목으로 볼 수 있다. <表 V-27>과 <表 V-28>에서 보듯이 전혀 소비지출을 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所得階層과 年齡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캠코더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構造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주된 소비자층이 젊은 소비자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지출 수준이 반드시 소득수준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表 V-27>에서 보듯이 간헐적으로 3~4분위와 6분위, 8~9분위에서 집중적으로 稅負擔(消費支出)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經濟危機를 전후하여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의 變動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캠코더가 다른 家電製品과 달리 嗜好品으로서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年齡別로는 30대와 40대 초반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캠코더의 경우에는 消費分布(稅負擔 分布)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實效稅負擔率 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實效稅負擔率 곡선도 W字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담 분포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年齡別로는 30대와 40대 초반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이들 연령층의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성장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측면에서 캠코더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특징은 본격적으로 經濟危機가 시작된 1998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계층은 高所得層보다는 中·低所得層에 속하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 3~4분위와 6분위, 8~9분위 등에서 간헐적으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50대 가구의 경우에는 1997년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을 시현하였으나 1998년에는 100% 감소한 것을 볼 때 이들 연령층 가운데 高所得層이 많다는 점에서 最高所得層인 10분위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크게 減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연령층은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997년만 하더라도 자녀들의 婚需品으로 캠코더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캠코더의 경우 TV, 冷蔵庫, 洗濯機 등과 같은 일반 生活用品과 달리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혼수품으로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經濟與件 變化에 따라 需要가 매우 彈力的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1998년에는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表 V-2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캅코더,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461	184	228	24	1,509	0	544	1,580	1,513	605
稅負擔額	98	0	0	763	872	0	28	0	879	565	44	315
	98A	0	0	879	1,004	0	32	0	1,013	651	51	363
總所得 對比	97	0.000	0.029	0.010	0.010	0.001	0.055	0.000	0.016	0.039	0.027	0.022
實效	98	0.000	0.000	0.049	0.047	0.000	0.001	0.000	0.029	0.015	0.001	0.013
稅負擔率	98A	0.000	0.000	0.057	0.055	0.000	0.001	0.000	0.033	0.018	0.001	0.015
總消費 對比	97	0.000	0.037	0.014	0.015	0.002	0.086	0.000	0.025	0.064	0.044	0.033
實效	98	0.000	0.000	0.065	0.069	0.000	0.002	0.000	0.045	0.026	0.001	0.019
稅負擔率	98A	0.000	0.000	0.075	0.080	0.000	0.002	0.000	0.052	0.030	0.002	0.022
稅負擔	97	0.00	7.63	3.05	3.78	0.40	24.97	0.00	9.01	26.15	25.01	100.0
構成比	98	0.00	0.00	24.19	27.66	0.00	0.88	0.00	27.93	17.93	1.41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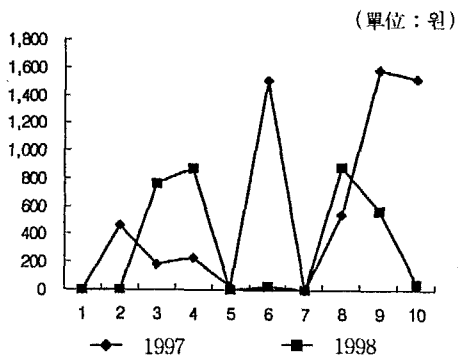
〈表 V-28〉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캅코더,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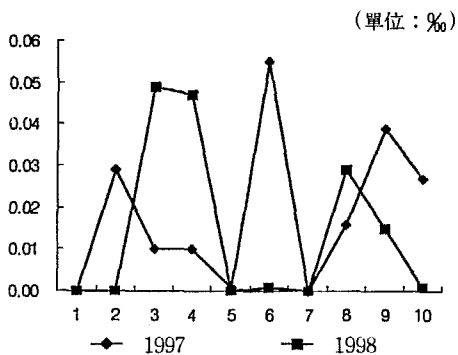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602	288	1,979	232	404	0	378	1,005	534
稅負擔額	98	0	0	0	1,531	23	297	3	0	0	0
	98A	0	0	0	1,764	27	342	3	0	0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33	0.012	0.077	0.008	0.014	0.000	0.012	0.031	0.023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66	0.001	0.011	0.000	0.000	0.000	0.000
	98A	0.000	0.000	0.000	0.076	0.001	0.013	0.000	0.000	0.000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50	0.019	0.126	0.013	0.022	0.000	0.017	0.047	0.032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109	0.002	0.017	0.000	0.000	0.000	0.000
	98A	0.000	0.000	0.000	0.126	0.002	0.020	0.000	0.000	0.000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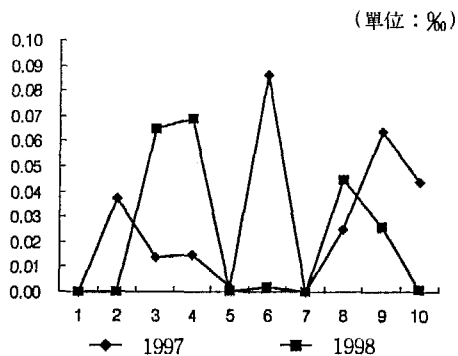
[圖 V-92]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캄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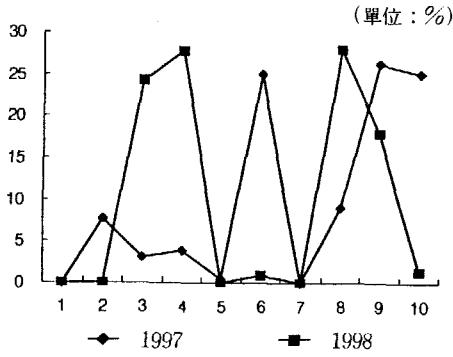
[圖 V-93]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캄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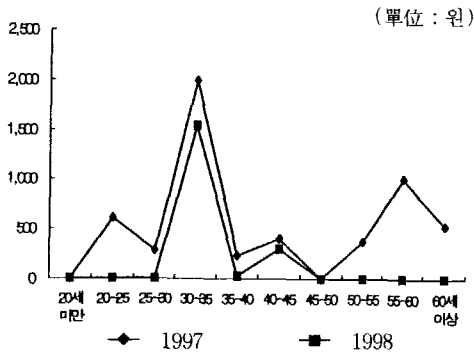
[圖 V-94]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캄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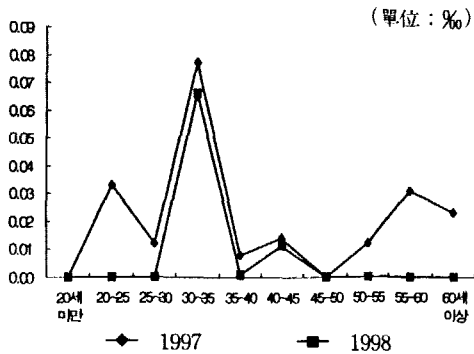
[圖 V-95] 稅負擔 構成比(캄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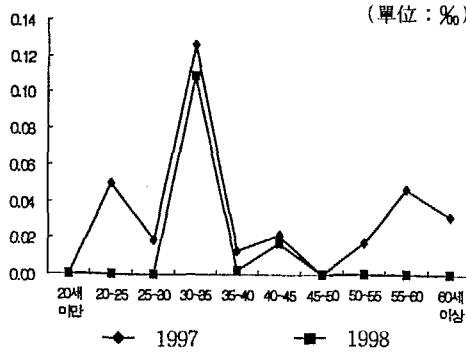
[圖 V-96] 年齡別 稅負擔額(캄코더)



[圖 V-97]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캄코더)



[圖 V-98]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캄코더)



## 12) VCR

VCR의 경우에는 教育稅를 포함한 特別消費稅의 家口當 平均 負擔額이 1,172원에서 637원으로 대폭 減少하였다. 일부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所得階層에서 VCR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最高所得層인 9~10분위의 절대감소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VCR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은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1998년에는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稅負擔(消費支出) 감소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이행하더라도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의 증가추세는 상당히 완만해졌다. 이에 따라, 다소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1997년에는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1998년에는 所得이 증가하더라도 稅負擔(消費支出)의 절대수준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는 다소 역진적인 방향으로 이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低所得層의 負擔 增加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高所得層의 급격한 稅負擔 減少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年齡別로는 1997년의 경우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30대 초반 가구와

50대 가구에서 稅負擔(消費支出)의 絕對水準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實效稅負擔率도 이들 年齡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年齡層에서는 消費支出(稅負擔) 構造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VCR 역시 혼수품으로서의 소비비중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98년에는 그러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年齡이 증가하면서 絕對 稅負擔 水準과 實效稅負擔率 모두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997년과 1998년의 年齡別 稅負擔(消費支出)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表 V-2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VCR,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195	990	372	759	679	1,522	849	980	1,385	3,990	1,172
稅負擔額	98	500	653	298	523	1,016	642	417	627	610	1,088	637
	98A	576	752	343	603	1,170	739	480	722	702	1,254	734
總所得 對比	97	0.019	0.062	0.019	0.035	0.028	0.056	0.028	0.029	0.035	0.071	0.042
實效	98	0.076	0.053	0.019	0.028	0.048	0.027	0.016	0.020	0.017	0.021	0.026
稅負擔率	98A	0.088	0.061	0.022	0.033	0.056	0.031	0.018	0.023	0.019	0.024	0.030
總消費 對比	97	0.020	0.080	0.028	0.051	0.043	0.087	0.043	0.045	0.056	0.117	0.064
實效	98	0.055	0.063	0.026	0.042	0.072	0.041	0.026	0.032	0.028	0.035	0.039
稅負擔率	98A	0.064	0.073	0.029	0.048	0.083	0.047	0.029	0.037	0.032	0.041	0.045
稅負擔	97	1.66	8.45	3.17	6.48	5.78	12.99	7.25	8.37	11.83	34.03	100.0
構成比	98	7.83	10.25	4.67	8.21	15.94	10.06	6.55	9.84	9.56	17.09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表 V-3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VCR,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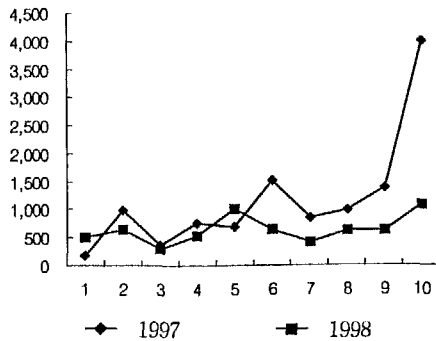
(單位: 圓, %)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97	0	916	958	1,430	1,003	592	1,385	1,961	2,014	175
稅負擔額	98	0	0	420	664	437	729	445	716	1,073	1,156
	98A	0	0	483	765	504	840	513	825	1,236	1,332
總所得 對比	97	0.000	0.050	0.039	0.056	0.037	0.021	0.045	0.061	0.062	0.008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22	0.028	0.018	0.027	0.016	0.026	0.037	0.064
	98A	0.000	0.000	0.025	0.033	0.021	0.032	0.019	0.030	0.043	0.073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77	0.064	0.091	0.058	0.032	0.066	0.090	0.094	0.011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34	0.047	0.028	0.042	0.023	0.039	0.052	0.083
	98A	0.000	0.000	0.039	0.055	0.033	0.048	0.027	0.045	0.060	0.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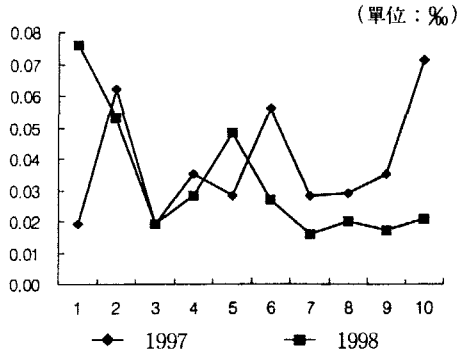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의 수치임.

[圖 V-99] 所得階層別 稅負擔額(V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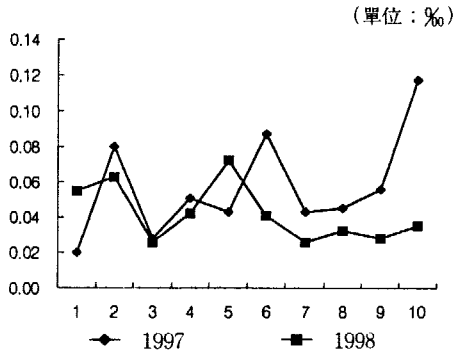
(單位: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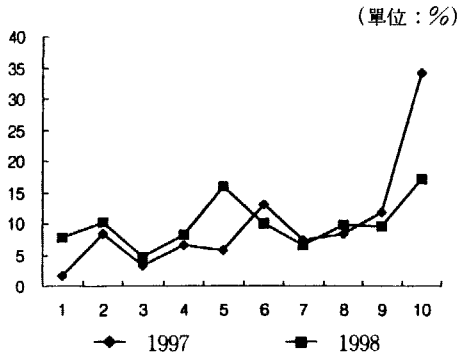
[圖 V-100]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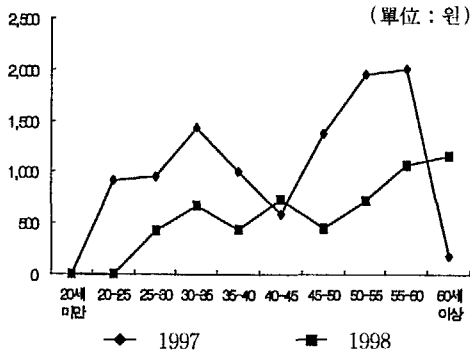
[圖 V-101]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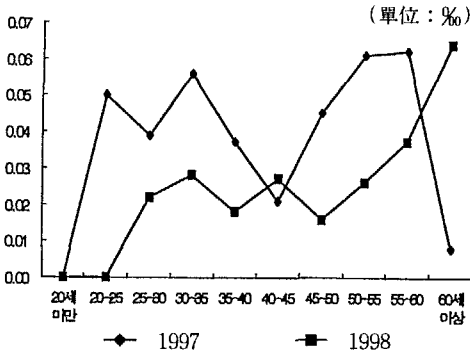
[圖 V-102] 稅負擔 構成比(V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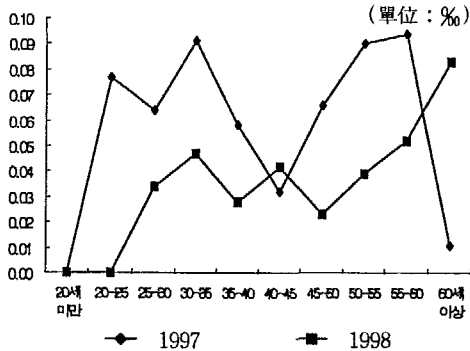
[圖 V-103] 年齡別 稅負擔額(VCR)



[圖 V-104]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圖 V-105]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VCR)



## 13) 에어컨

에어컨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 平均은 1997년에 8,434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49.3%가 감소한 4,272원으로 減少하였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1997년 동안 20%의 特別消費稅率(교육세 포함 시 26%)이 적용되었으며 1998년 1월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인 1998년 7월초까지 30%(39%)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21%(27.3%)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에어컨의 경우에는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적용되는 特別消費稅의 稅率이 더 높다. 이에 따라 단위당 特別消費稅 負擔 水準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 平均이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8년 동안 에어컨에 대한 소비가 세율 인상률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에어컨은 1990년대 중반부터 需要가 크게 增加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中所得層 이상의 階層에서 소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表 V-31>에서 보듯이 1997년의 경우 5분위 이상의 所得階層에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1998년의 경우에도 절대수준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4분위 또는 5분위 이상의 계층에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構造의 특징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1997년의 경우에는 最高所得層인 10분위보다 9分位の 水準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後者와 관련해서는, 最高所得層의 경우 상당 부분이 이미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10분위의 경우에는 신규로 에어컨을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8년의 경우에는 다른 所得階層과 달리 10분위 계층의 경우에 에어컨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10분위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에 대한 需要의 彈力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所得과 消費支出間에 뚜렷한 正(+)의 相關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所得이 增加할수록 稅負擔(消費支出) 構成比도 增加하였다. 따라서 에어컨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 構造도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累進性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圖 V-107]과 [圖 V-108]을 볼 때 1997년의 경우에는 6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는 所得이 增加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이 상승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8년에는 6~8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대체로 비례적이거나 매우 완만하게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家電製品과 달리 에어컨의 경우에는 혼수품으로서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에어컨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結婚 適齡期에 있는 年齡層 또는 結婚 適齡期의 子女를 많이 둔 年齡層에서 특별히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에어컨이 혼수품의 품목으로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의 경우를 보면 年齡이 증가할수록 特別消費稅 負擔의 絕對水準이 增加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에도 그러한 추세가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1997년의 경우에는 總所得이나 總消費支出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이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1998년의 경우에는 最高所得層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表 V-3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에어컨,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402	2,605	2,461	2,848	5,786	12,655	10,709	11,888	21,562	13,404	8,434
稅負擔額	98	164	129	2,117	3,863	4,494	4,135	3,760	3,288	8,471	12,290	4,272
	98A	137	108	1,765	3,220	3,747	3,447	3,134	2,741	7,062	10,246	3,562
總所得 對比	97	0.040	0.163	0.128	0.130	0.236	0.462	0.349	0.347	0.538	0.240	0.301
實效	98	0.025	0.011	0.136	0.210	0.214	0.174	0.140	0.107	0.231	0.232	0.174
稅負擔率	98A	0.021	0.009	0.114	0.175	0.178	0.145	0.117	0.089	0.193	0.193	0.145
總消費 對比	97	0.042	0.210	0.188	0.192	0.370	0.720	0.547	0.550	0.874	0.392	0.460
實效	98	0.018	0.013	0.182	0.306	0.317	0.265	0.230	0.170	0.387	0.399	0.264
稅負擔率	98A	0.015	0.010	0.152	0.255	0.264	0.221	0.192	0.142	0.323	0.333	0.220
稅負擔	97	0.48	3.09	2.92	3.38	6.85	15.01	12.71	14.10	25.58	15.89	100.0
構成比	98	0.38	0.30	4.95	9.04	10.52	9.68	8.81	7.70	19.82	28.80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1997년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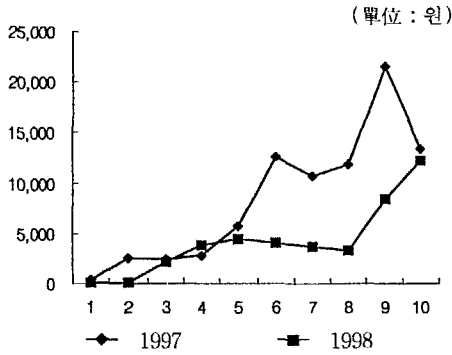
〈表 V-3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에어컨,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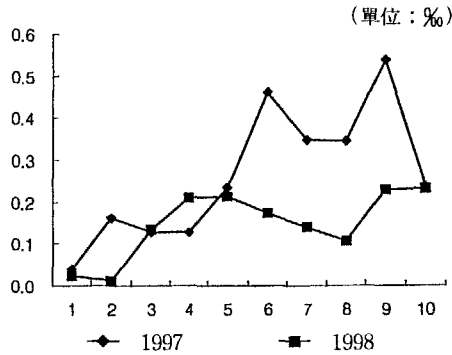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11,636	9,692	3,512	7,679	8,917	13,191	7,962	7,485	10,617
稅負擔額	98	0	2,761	2,159	4,633	3,931	5,327	3,487	4,079	2,514	7,696
	98A	0	2,301	1,800	3,863	3,278	4,441	2,907	3,400	2,096	6,416
總所得 對比	97	0.000	0.634	0.394	0.137	0.280	0.318	0.432	0.247	0.229	0.458
實效稅負擔率	98	0.000	0.189	0.112	0.198	0.164	0.200	0.127	0.148	0.087	0.423
	98A	0.000	0.157	0.094	0.165	0.137	0.167	0.106	0.123	0.073	0.353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974	0.651	0.224	0.443	0.477	0.631	0.367	0.350	0.637
實效稅負擔率	98	0.000	0.305	0.174	0.331	0.255	0.306	0.181	0.225	0.122	0.555
	98A	0.000	0.254	0.145	0.276	0.212	0.255	0.151	0.188	0.101	0.463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1997년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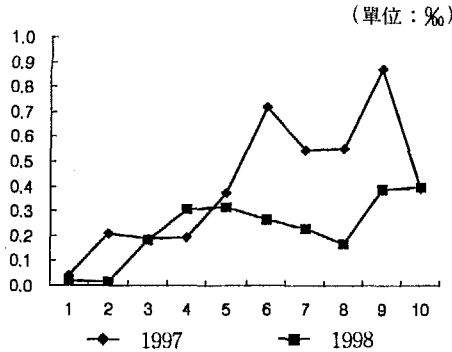
[圖 V-106]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에어컨)



[圖 V-107]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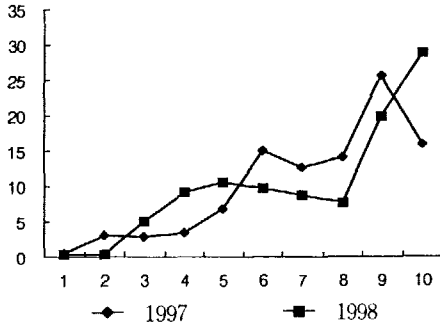


[圖 V-108]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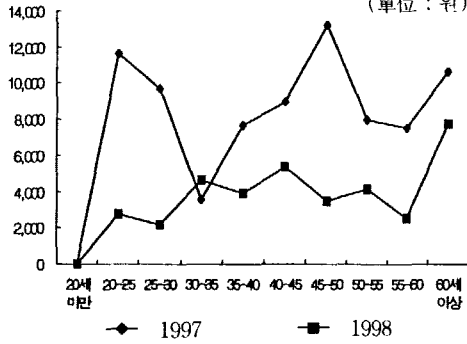
[圖 V-109] 稅負擔 構成比(에어컨)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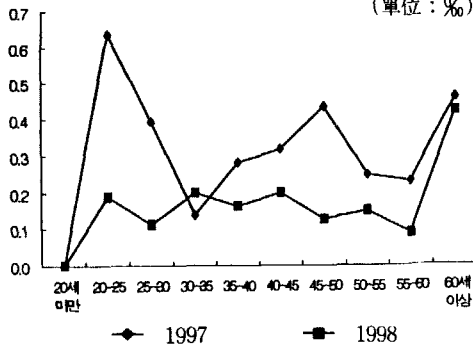
[圖 V-110] 年齡別 稅負擔額(에어컨)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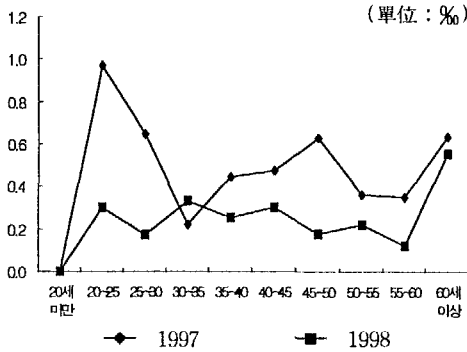


[圖 V-111]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單位: ‰)



[圖 V-112]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에어컨)



#### 다. 乘用自動車

現行의 特別消費稅法에서는 엔진 용량을 기준으로 乘用自動車를 小型·中型·大型으로 구분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상호간에는 긴밀한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개별적인 稅負擔 分布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들간의 대체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本項의 분석내용을 요약하자면, 經濟危機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연료유인 휘발유에 대한 가격이 매우 크게 인상됨에 따라 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가 급속히 減少한 가운데 용량별로 대체현상이 매우 크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대형승용자동차의 需要가 크게 감소하면서 일부가 中·小型으로, 중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소된 수요의 일부가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 1) 小型乘用自動車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 平均은 6,497원에서 4,721원으로 27.3%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1998년 동안 乘用自動車에 대한 소비가 大·中·小型을 막론하고 크게 減少하였다는 점과

일치된다. 1998년에는 유가 인상과 경제위기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輕車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일부 輕車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 小型乘用自動車와의 價格隔差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 分析時에 特別消費稅가 과세되지 않는 輕車의 상당 부분도 小型乘用自動車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에는 輕車나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러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小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는 정확한 稅負擔 分析에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sup>6)</sup>.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체적인 연구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강의 관계만을 파악하는 데 만족하도록 한다.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構造는 中·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構造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다 정확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中·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 減少分 가운데 일부가 小型乘用自動車나 輕車에 대한 需要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교적 中·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수요비중이 높은 9~10분위의 高所得層에서 1998년에 稅負擔의 절대수준이 오히려 增加하였음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는 經濟危機로 인해 모든 계층에 걸쳐 所得水準이 크게 하락하여 구매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換率上昇 및 交通稅率 引上에 따라 燃料油, 즉 揮發油의 價格이 크게 引上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練料費가 적게 드는 小型製品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 가운데 登錄稅, 取

---

6) 經濟危機 기간 동안 輕車에 대한 수요가 괄목하게 성장하였음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輕車는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得稅 重課稅에서 제외되는 輕車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小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 稅負擔 構造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小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도 상당히 高價의 耐久消費財라는 점에서 볼 때 稅負擔 構造가 다소 累進的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98년의 경우에는 中·大型乘用自動車로부터의 수요전환 등 매우 복잡다기한 현상이 복합되어 있어 小型乘用自動車에 국한하여 稅負擔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稅負擔 曲線이나 實效稅負擔率 曲線의 M字 또는 MM字의 형태를 취하면서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小型乘用自動車 稅負擔의 衡平性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보다는 所得階層이나 年齡別로 주된 소비자층이 어떤 계층과 연령층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表 V-33〉에서 보듯이 5~8분위에서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比重이 높다. 이는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주된 수요가 中産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의 경우에 9~10분위의 稅負擔(消費支出) 比重이 매우 높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中·大型乘用自動車の 구 소비자 가운데 일부가 소형으로 수요를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중이 높다. 다만 1998년의 경우 40대 가구의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상승한 것은 中·大型乘用自動車로부터의 대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表 V-34〉 참조).

〈表 V-3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小),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6084	0	3,866	10,017	5,268	7,053	13,951	5,175	13,555	6,497
稅負擔額	98	2,002	5,786	0	2,723	1,877	1,938	1,431	6,786	9,631	15,013	4,721
	98A	2,322	6,709	0	3,157	2,176	2,247	1,659	7,868	11,166	17,406	5,473
總所得 對比	97	0.000	0.381	0.000	0.176	0.409	0.193	0.230	0.407	0.129	0.242	0.232
實效	98	0.304	0.472	0.000	0.148	0.089	0.081	0.053	0.220	0.263	0.283	0.193
稅負擔率	98A	0.353	0.547	0.000	0.171	0.104	0.094	0.062	0.255	0.305	0.328	0.223
總消費 對比	97	0.000	0.489	0.000	0.261	0.641	0.300	0.360	0.646	0.210	0.397	0.355
實效	98	0.221	0.563	0.000	0.216	0.132	0.124	0.088	0.351	0.440	0.488	0.292
稅負擔率	98A	0.256	0.652	0.000	0.250	0.154	0.144	0.101	0.406	0.510	0.565	0.338
稅負擔	97	0.00	9.37	0.00	5.95	15.39	8.11	10.87	21.49	7.97	20.86	100.0
構成比	98	4.23	12.27	0.00	0.76	3.98	4.10	3.03	14.39	20.39	31.84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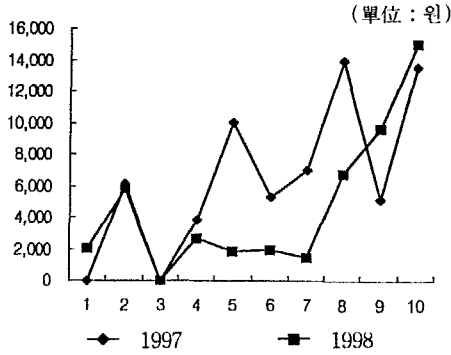
〈表 V-3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自動車(小),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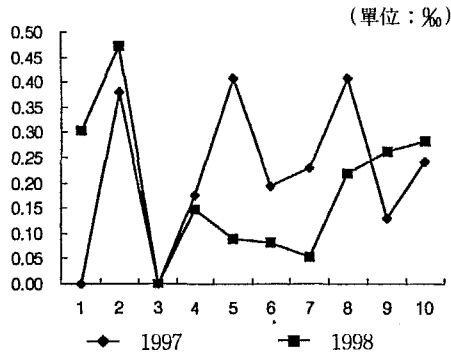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8298	10,086	4,003	8,094	7,192	7,836	2,719	3,004
稅負擔額	98	0	0	4,112	6,280	5,305	9,442	7,66	1,998	3,513	1,361
	98A	0	0	4,768	7,281	6,150	10,947	888	2,316	4,072	1,578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337	0.394	0.146	0.289	0.235	0.243	0.083	0.13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214	0.269	0.222	0.355	0.028	0.072	0.122	0.075
	98A	0.000	0.000	0.248	0.312	0.257	0.411	0.032	0.084	0.141	0.087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558	0.643	0.231	0.433	0.344	0.362	0.127	0.18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331	0.449	0.344	0.541	0.040	0.110	0.170	0.098
	98A	0.000	0.000	0.383	0.520	0.399	0.628	0.046	0.128	0.197	0.11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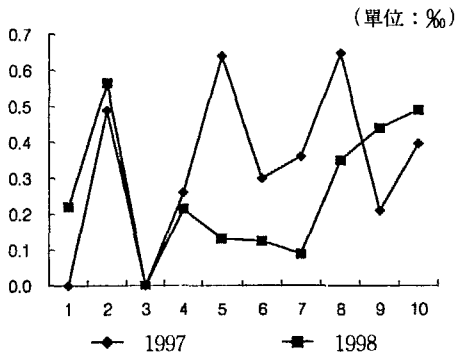
[圖 V-113]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小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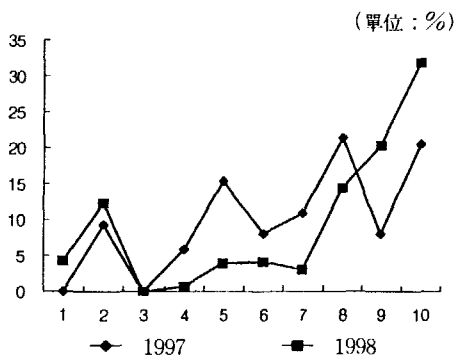
[圖 V-114]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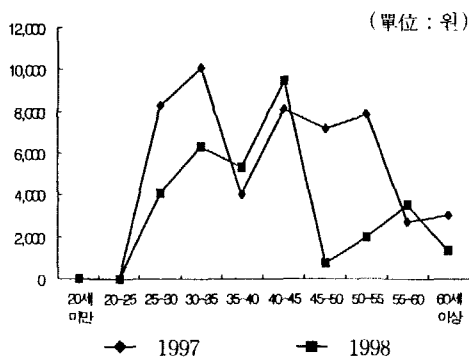
[圖 V-115]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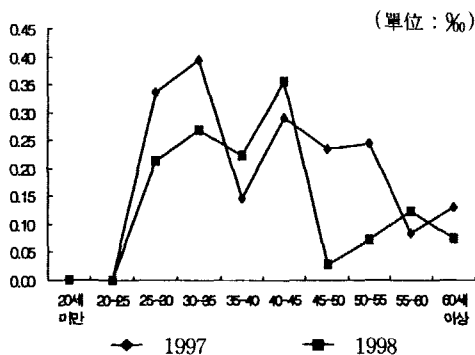
[圖 V-116] 稅負擔 構成比(小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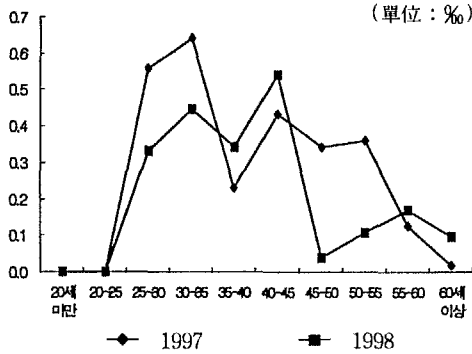
[圖 V-117] 年齡別 稅負擔額(小型自動車)



[圖 V-118]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圖 V-119]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小型自動車)



## 2) 中型乘用自動車

中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平均 負擔額은 1997년에는 3만 3,511원이었는데 1998년에는 1만 3,596원으로 59.4% 정도 감소하여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1998년 7월부터 彈力稅率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인하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1998년 동안 승용자동차, 특히 中·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가 급격히 萎縮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감소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經濟危機로 인한 購買力이 급속히 減少하고 油價 引上에 따른 燃料費 負擔 增加로 인해 총체적인 自動車 運行費用이 크게 상승한 데 있지만 1998년 상반기에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重課稅에 대한 廢止 문제가 거론되면서 有效需要의 상당 부분이 待機需要로 전환된 데 따른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中型乘用自動車에 비해 연비가 좋은 小型乘用自動車와 輕車로 수요가 전환된 데에도 일부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中型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는 대부분 8~10분위의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所得階層의 稅負擔(消費支出) 比重은 1997년과 1998년이 각각 74.17%와 75.3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7~1998년 사이의 稅負擔(消費支出) 變化推移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稅負擔 減少率이 8~9분위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이다. 이는 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이 10분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이후 大型乘用自動車を 선호하였던 10분위 계층의 일부가 中型乘用自動車로 수요를 변경함에 따라 10분위에서는 中型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8~9분위의 계층에서는 中型乘用自動車에 대한 수요 감소와 함께 그보다 연비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小型乘用自動車나 輕車로 수요를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세부담 구성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8~9분위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稅負擔의 構成比가 감소한 반면 10분위의 경우에는 構成比가 상승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年齡別로는 20대 후반 이상의 가구에서만 中型乘用自動車에 대한 消費支出(稅負擔)이 이루어지고 있다. 年齡別 稅負擔(消費支出) 構造를 볼 때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減少하였는데, 유일하게 50대 후반 가구의 경우에는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增加한 것을 볼 수 있다. 50대 후반 가구에서 最高所得層에 속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年齡層에서 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수요를 中型乘用自動車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위에서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를 논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전반적으로 中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는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所得이 증가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이 增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稅負擔이 累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도시가계의 지출구조라는 점에서 볼 때 다만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乘用自動車の 경우 일반 개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포함되어 있을 뿐 事業用으로 법인 등이 구입하여 임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러한 차량에는 中 · 大型乘用自動車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한 일반 기업의 임원 등은 대부분 中年層의 高所得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임원에게 승용자동차를 제공해줄 경우 이들이 中型 또는 大型乘用自動車를 구입하는 데 있어 대체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형태의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高所得層 또는 中年層의 가구에서 구입하게 되었을 中型乘用自動車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그와 같은 행태가 이루어졌다면 中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 構造는 더욱 累進的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며, 年齡別로도 中年層의 實效稅負擔率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면 所得階層別 實效稅負擔率 曲線의 기울기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表 V - 3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中), 教育稅 包含)

(單位 : 萬,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12,809	7,473	23,956	14,305	2,935	25,084	90,243	49,688	108,536	33,511
稅負擔額	98	0	0	7,333	2,661	12,181	8,259	3,077	29,322	6,341	66,707	13,596
	98A	0	0	8,448	3,065	14,033	9,515	3,545	33,780	7,305	76,850	15,664
總所得對比	97	0.000	0.803	0.389	1.091	0.584	0.107	0.818	2.633	1.240	1.942	1.196
實效	98	0.000	0.000	0.472	0.144	0.580	0.347	0.115	0.952	0.173	1.259	0.555
稅負擔率	98A	0.000	0.000	0.544	0.166	0.668	0.400	0.132	1.097	0.199	1.450	0.640
總消費對比	97	0.000	1.030	0.570	1.614	0.915	0.167	1.281	4.176	2.015	3.178	1.829
實效	98	0.000	0.000	0.629	0.211	0.860	0.530	0.188	1.515	0.290	2.167	0.841
稅負擔率	98A	0.000	0.000	0.725	0.243	0.990	0.611	0.217	1.745	0.334	2.497	0.968
稅負擔	97	0.00	3.82	2.23	7.15	4.26	0.88	7.49	26.95	14.84	32.38	100.0
構成比	98	0.00	0.00	5.39	1.96	8.96	6.07	2.27	21.58	4.66	49.12	100.0

註 :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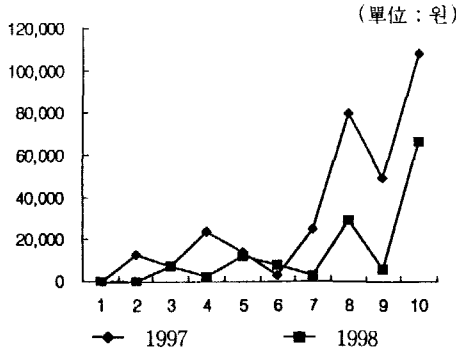
〈表 V-3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自動車(中),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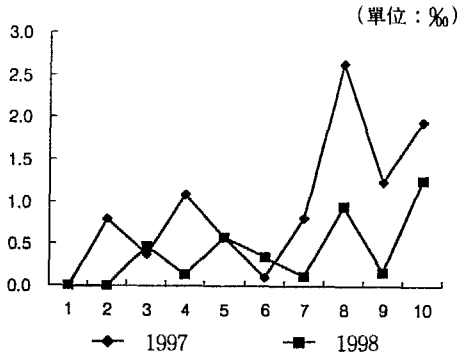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稅負擔額 97	0	0	50,738	39,626	37,780	36,033	22,512	48,636	19,491	10,204
98	0	0	3,894	23,012	3,147	14,845	9,343	16,985	53,384	0
98A	0	0	4,486	26,511	3,626	17,102	10,764	19,568	61,501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2.060	1.549	1.376	1.284	0.737	1.507	0.596	0.44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202	0.985	0.132	0.558	0.340	0.615	1.852	0.000
98A	0.000	0.000	0.233	1.135	0.152	0.642	0.392	0.709	2.133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3.411	2.525	2.178	1.926	1.078	2.244	0.911	0.612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313	1.644	0.204	0.851	0.485	0.937	2.581	0.000
98A	0.000	0.000	0.361	1.894	0.235	0.981	0.559	1.079	2.973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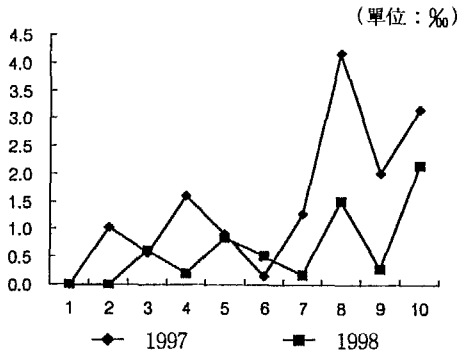
[圖 V-120] 所得階層別 稅負擔額(中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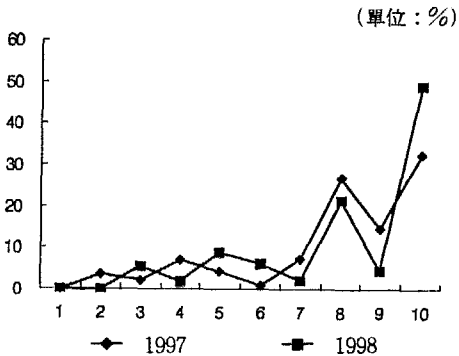
[圖 V-121]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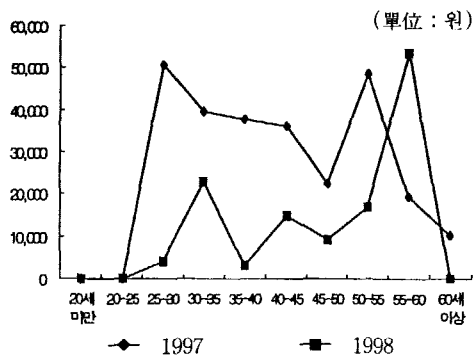
[圖 V-122]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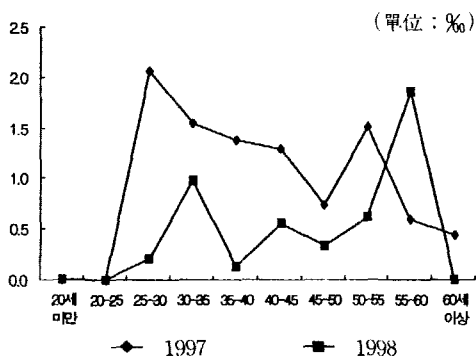
[圖 V-123] 稅負擔 構成比(中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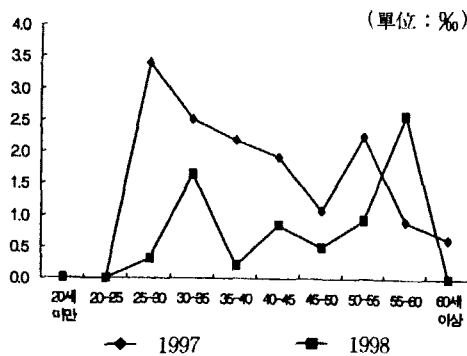
[圖 V - 124] 年齡別 稅負擔額(中型自動車)



[圖 V - 125]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圖 V - 126]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中型自動車)



### 3) 大型乘用自動車

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은 2만 3,033원에서 6,433원으로 72.1%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1998년 7월부터 탄력세를 적용에 따라 特別消費稅의 稅率이 20%(教育稅 包含時 26%)에서 14%(18.2%)로 인하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폭의 감소율이다. 이는 1998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登錄稅, 取得稅 重課稅 廢止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빚어진 결과로 해석되며 1998년 동안 대부분이 대형승용자동차로 구성되어 있는 乘用自動車の 輸入도 격감하였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大型乘用自動車는 대부분이 매우 고가의 제품이다. 따라서 구매력이 낮은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大型乘用自動車を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高所得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表 V-37>과 <表 V-38>에 잘 나타나 있다. 所得階層別로는 대부분 8분위 이상의 高所得層에서 稅負擔(消費支出)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에는 유일하게 最高所得層인 10분위에서만 稅負擔(消費支出)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構造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1997년의 경우 最低所得層인 1분위 가구에서도 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높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最低所得層으로 분류되는 1분위의 경우 구성가구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부이기는 하지만 1분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資産이나 富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은퇴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시점에서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게 조사된 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低所得層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가구가운데 1분위에 속한 일부가 축적된 부나 자산을 바탕으로 大型乘用自動車を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998년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最高所得層인 10분위에서만 大型乘

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經濟·社會 전반에 걸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주 消費層은 20대 후반~50대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소비연령층도 대폭 축소되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가구와 50대 후반 가구에서만 大型乘用自動車を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大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는 需要層이 高所得層 및 中年層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의 계층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大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는 稅負擔 構造가 總所得이나 總消費支出에 비해 매우 累進的이다. 다만 1997년의 경우 1분위 계층에서도 대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陽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大型乘用自動車を 구입한 1분위의 가구 역시 資産이나 富를 기준으로 할 경우 低所得層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稅負擔이 누진적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V-3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大),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0,661	0	0	0	0	6,234	0	37,118	11,318	155,007	23,033
稅負擔額	98	0	0	0	0	0	0	0	0	0	64,261	6,433
	98A	0	0	0	0	0	0	0	0	0	73,602	7,368
總所得對比	97	2.030	0.000	0.000	0.000	0.000	0.228	0.000	1.083	0.282	2.773	0.822
實效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212	0.263
稅負擔率	98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389	0.301
總消費對比	97	2.147	0.000	0.000	0.000	0.000	0.355	0.000	1.718	0.459	4.539	1.257
實效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088	0.398
稅負擔率	98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391	0.456
稅負擔	97	8.97	0.00	0.00	0.00	0.00	2.71	0.00	16.12	4.92	67.29	100.0
構成比	9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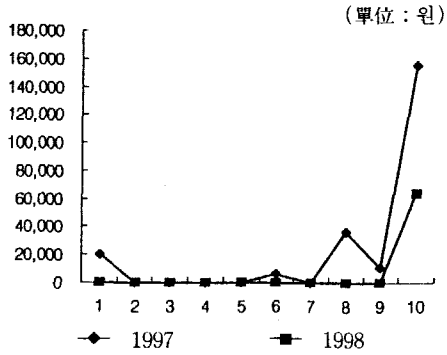
〈表 V-38〉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自動車(大),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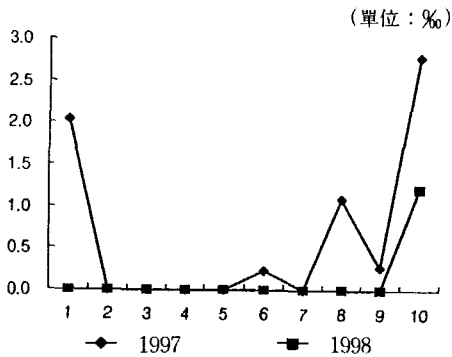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18,669	31,426	12,575	12,922	37,000	37,575	0	42,014
稅負擔額	98	0	0	0	0	10,875	17,147	0	0	18,077	0
	98A	0	0	0	0	12,455	19,639	0	0	20,705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758	1.228	0.458	0.461	1.211	1.165	0.000	1.813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00	0.455	0.644	0.000	0.000	0.627	0.000
	98A	0.000	0.000	0.000	0.000	0.521	0.738	0.000	0.000	0.718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1.255	2.003	0.725	0.691	1.771	1.734	0.000	2.521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00	0.705	0.983	0.000	0.000	0.874	0.000
	98A	0.000	0.000	0.000	0.000	0.807	1.126	0.000	0.000	1.001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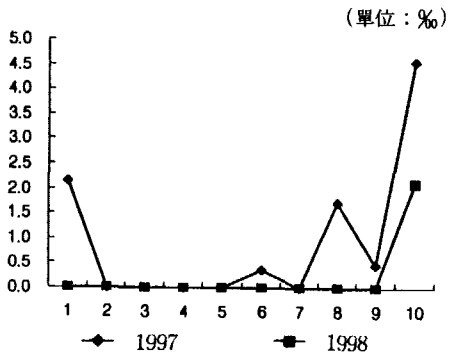
[圖 V-12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大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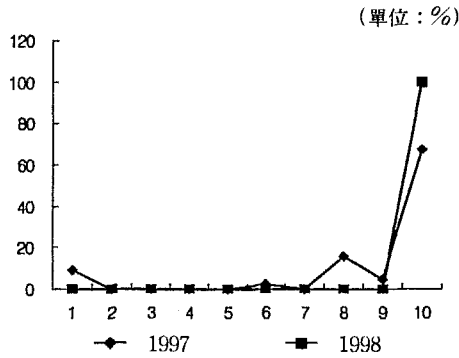
[圖 V-12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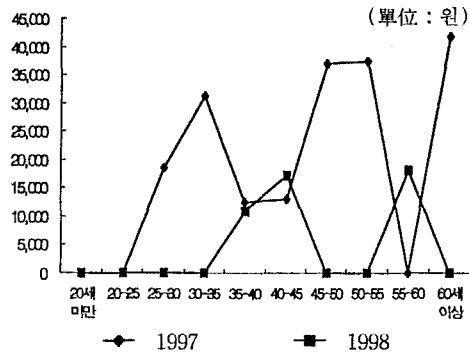
[圖 V-12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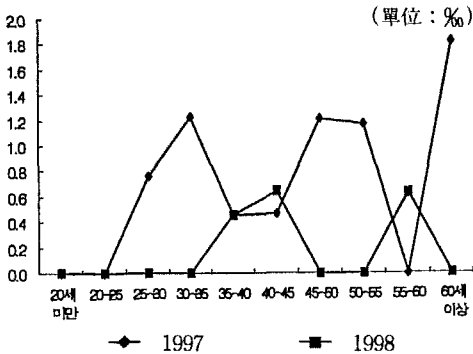
[圖 V-130] 稅負擔 構成比(大型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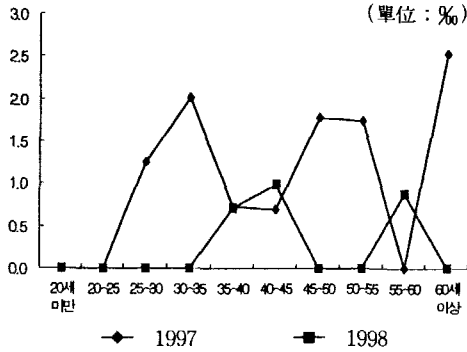
[圖 V-13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大型自動車)



[圖 V-13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圖 V-13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大型自動車)



## 4) 乘用自動車 計

大·中·小型乘用自動車の 세부담을 합산한 稅負擔은 1997년의 경우 家口當 6만 3,041원에 이르렀으나 본격적인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에는 2만 4,750원으로 60.7%의 대폭적인 減少率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의 實效稅負擔率 또한 0.24%에서 0.11%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세부담이 하락한 것은 특히 中型 및 大型乘用自動車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의 絕對水準이 급격히 하락한 데 주된 원인이 있으며, 稅率 引下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이는 乘用自動車가 대부분 매우 高價의 耐久消費財로서 所得에 대해 需要가 매우 彈力的이다. 따라서 1997년 말 이후의 經濟危機로 인해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貨金이 削減되는 등 所得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9년 1월부터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登錄稅, 取得稅 重課稅를 廢止하는 문제가 1998년 상반기에 제기되면서 그나마 위축되었던 수요 가운데 일부가 대기수요로 전환되어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비지출은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稅負擔 絕對水準 平均을 비교해 보면 稅負擔 分布가 불규칙적으로 나

타나는 小型乘用自動車보다 稅負擔이 累進的인 中型乘用自動車が 월등히 높다. 그리고 中型乘用自動車에 비해 絕對 稅負擔 水準이 낮기는 하지만 大型乘用自動車の 경우에는, 비록 1998년에 稅負擔(消費支出) 수준이 매우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最高所得層인 10분위에 稅負擔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乘用自動車を 종합하면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가 累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圖 V-135]와 [圖 V-136] 참조). 그러한 경향은 1998년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小型 이상의 乘用自動車는 生活必需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小型乘用自動車에 대한 消費比重이 높은 1~6분위의 경우에는 實效稅負擔率이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누진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年齡別로는 1997년의 경우 특별한 特徵을 찾기 어렵지만 1998년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연령이 증가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V-3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0,661	18,893	7,473	27,822	24,323	14,437	32,137	141,311	66,180	277,098	63,041
稅負擔額	98	2,002	5,786	7,333	5,383	14,058	10,197	4,508	36,108	15,972	145,980	24,750
	98A	2,322	6,709	8,448	6,222	16,209	11,761	5,204	41,648	18,471	167,857	28,505
總所得	97	2.030	1.184	0.389	1.268	0.993	0.528	1.048	4.123	1.651	4.957	2.251
對比實效	98	0.304	0.472	0.472	0.292	0.670	0.429	0.168	1.172	0.436	2.754	1.011
稅負擔率	98A	0.353	0.547	0.544	0.338	0.772	0.494	0.194	1.352	0.504	3.167	1.164
總消費	97	2.147	1.519	0.570	1.875	1.556	0.822	1.641	6.540	2.684	8.114	3.441
對比實效	98	0.221	0.563	0.629	0.427	0.992	0.655	0.276	1.865	0.730	4.743	1.530
稅負擔率	98A	0.256	0.652	0.725	0.494	1.144	0.755	0.318	2.151	0.844	5.453	1.762
稅負擔	97	3.28	3.00	1.18	4.42	3.85	2.29	5.10	22.43	10.51	43.95	100.0
構成比	98	0.81	2.34	2.96	2.17	5.68	4.12	1.82	14.60	6.45	59.05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단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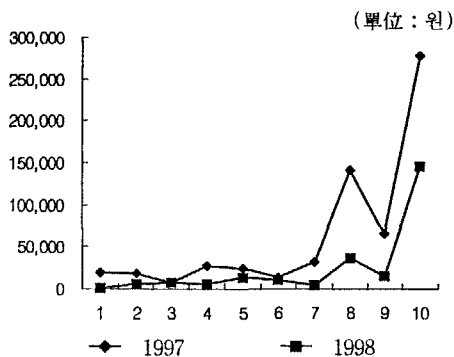
〈表 V-4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自動車(計),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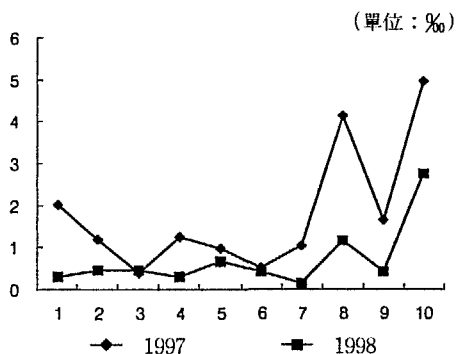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77,705	81,138	54,358	57,048	66,704	94,048	22,210	55,223
稅負擔額	98	0	0	8,006	29,293	19,327	41,434	10,109	18,983	74,973	1,361
	98A	0	0	9,254	33,793	22,232	47,688	11,652	21,884	86,278	1,578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3.155	3.171	1.980	2.034	2.183	2.915	0.679	2.383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416	1.254	0.808	1.556	0.368	0.688	2.600	0.075
	98A	0.000	0.000	0.481	1.447	0.930	1.791	0.424	0.793	2.993	0.087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5.223	5.171	3.134	3.049	3.193	4.340	1.038	3.31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644	2.093	1.253	2.376	0.525	1.047	3.624	0.098
	98A	0.000	0.000	0.744	2.415	1.441	2.735	0.605	1.207	4.171	0.11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단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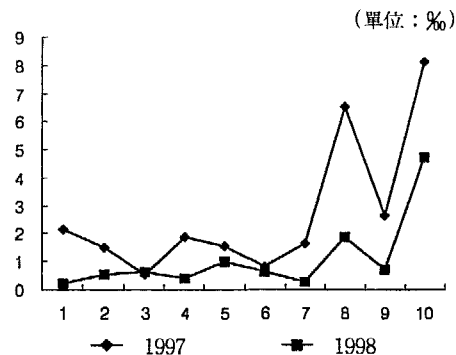
[圖 V - 134]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自動車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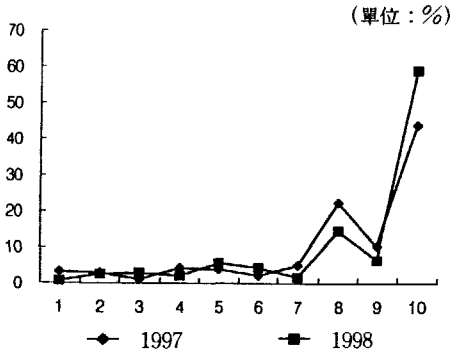
[圖 V - 135]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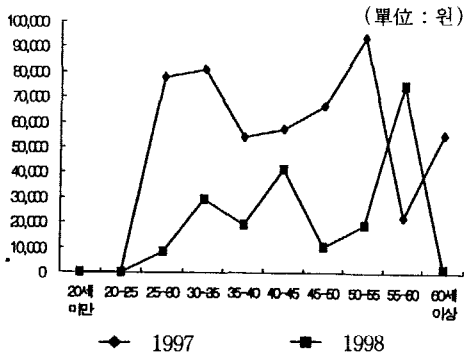
[圖 V - 136]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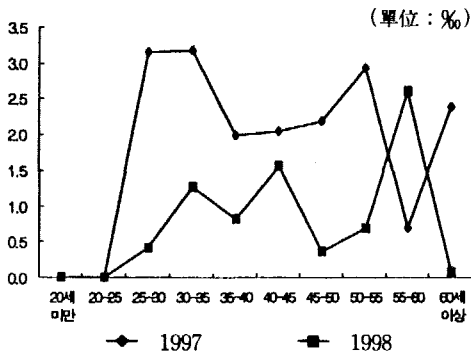
[圖 V-137] 稅負擔 構成比(自動車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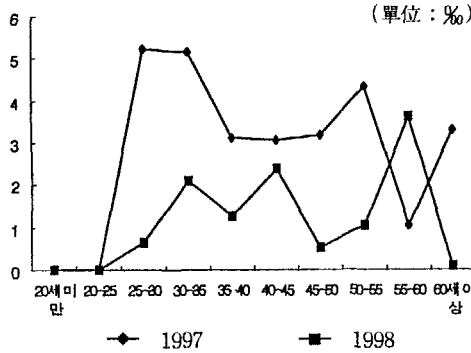
[圖 V-138] 年齡別 稅負擔額(自動車計)



[圖 V-139]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圖 V-140]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自動車計)



5)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需要層이 매우 얇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의 所得階層과 年齡層에서만 오토바이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이 陽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오토바이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은 오히려 136원에서 255원 수준으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절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乘用自動車에 비해 運行費用이 적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乘用自動車에 대한 需要를 代替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高所得層보다는 低所得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7년의 경우 9~10분위에서의 세부담 수준이 높고 1998년에는 7~10분위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稅負擔(消費支出) 構成比도 中所得層 이하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年齡別로는 40대 초반 가구에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年齡層에서는 수요가 매우 불규칙적이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주된 수요층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中·低所得層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비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을 찾기 어렵다.

〈表 V-4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오토바이,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0	0	349	147	0	387	473	0	0	136
稅負擔額	98	860	683	0	369	430	204	0	0	0	0	255
	98A	997	792	0	428	498	237	0	0	0	0	295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00	0.016	0.006	0.000	0.013	0.014	0.000	0.000	0.005
實效	98	0.131	0.056	0.000	0.020	0.020	0.009	0.000	0.000	0.000	0.000	0.010
稅負擔率	98A	0.151	0.065	0.000	0.023	0.024	0.010	0.000	0.000	0.000	0.000	0.012
總消費 對比	97	0.000	0.000	0.000	0.024	0.009	0.000	0.020	0.022	0.000	0.000	0.007
實效	98	0.095	0.066	0.000	0.029	0.030	0.013	0.000	0.000	0.000	0.000	0.016
稅負擔率	98A	0.110	0.077	0.000	0.034	0.035	0.015	0.000	0.000	0.000	0.000	0.018
稅負擔	97	0.00	0.00	0.00	25.73	10.84	0.00	28.54	34.89	0.00	0.00	100.0
構成比	98	33.72	26.89	0.00	14.48	16.88	8.03	0.00	0.00	0.00	0.00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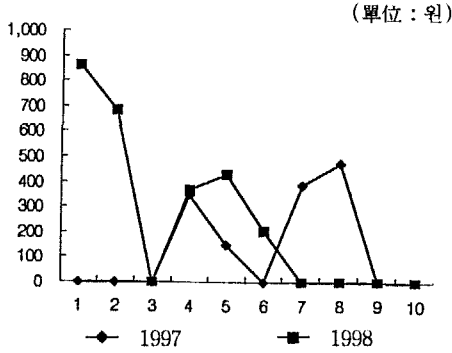
〈表 V-4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오토바이,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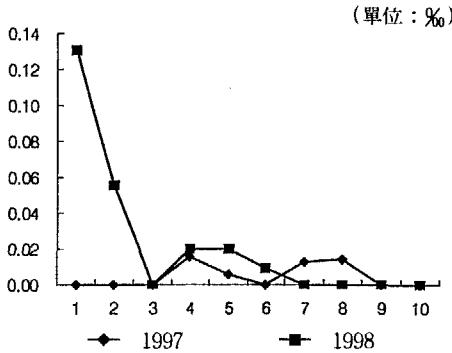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739	0	175	172	0	0	329
稅負擔額	98	0	0	0	873	0	123	0	85	0	0
	98A	0	0	0	1012	0	142	0	1026	0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03	0.000	0.006	0.006	0.000	0.000	0.000	0.01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37	0.000	0.005	0.000	0.032	0.000	0.000	0.000
	98A	0.000	0.000	0.000	0.043	0.000	0.005	0.000	0.037	0.000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50	0.000	0.010	0.009	0.000	0.000	0.000	0.02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62	0.000	0.007	0.000	0.049	0.000	0.000
	98A	0.000	0.000	0.000	0.072	0.000	0.008	0.000	0.057	0.000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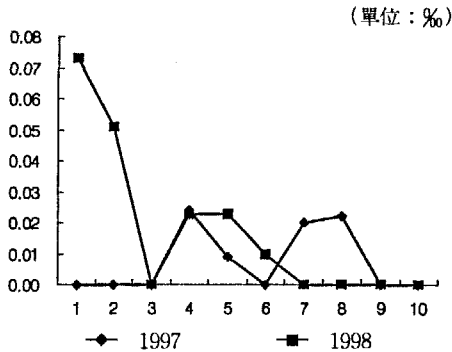
[圖 V-14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오토바이)



[圖 V-14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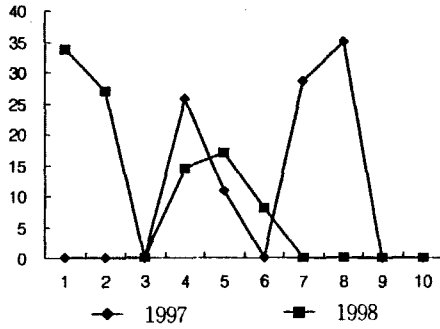


[圖 V-14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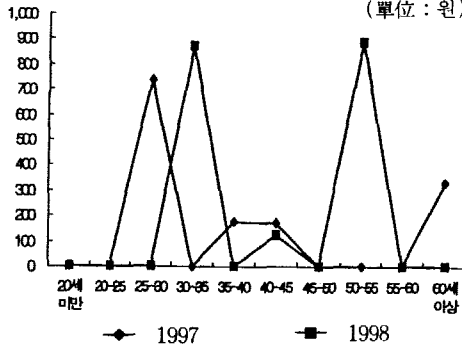
[圖 V-144] 稅負擔 構成比(오토바이)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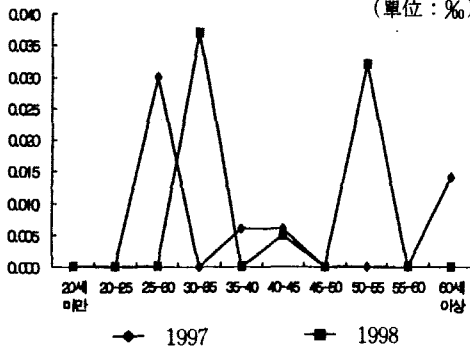
[圖 V-145] 年齡別 稅負擔額(오토바이)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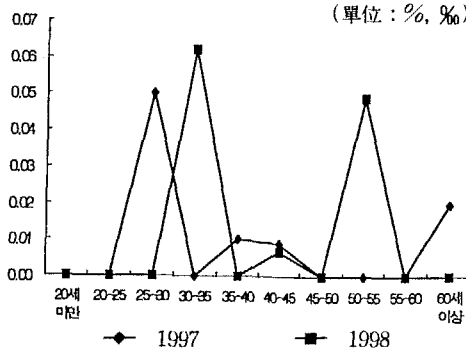


[圖 V-146] 年齡別 總所得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單位: %)



[圖 V - 14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오토바이)



라. 石油類 製品

1) 燈油

燈油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은 1997년의 1만 8,256원에서 1998년에는 3만 1,507원으로 증가하여 72.5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稅負擔이 크게 增加하였다. 稅負擔의 增加는 주로 特別消費稅의 引上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제외한다면 燈油에 대한 소비는 1997년에 비해 약 20~30% 정도 減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燈油는 대부분 暖房用 燃料로 소비된다. 燈油에 대한 家口當 平均 稅負擔額은 소득수준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등유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의 絕對水準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7년과 1998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의 構成比도 所得水準과 크게 관련 없이 대체로 일정하다.

이와 같이 등유에 대한 세부담이 소득과 별다른 관계가 없게 나타남에 따라 總所得이나 總消費支出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燈油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은 매우 逆

進的인 것으로 보인다.

年齡別로는 1997년의 경우 最低所得層인 1분위를 제외하고는 特別消費稅 負擔의 絕對水準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1998년의 경우에는 1~3분위를 제외할 경우 稅負擔(消費支出)이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年齡別 實效稅負擔率 曲線은 1997년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수평선에 가깝게 나타났고 1998년의 경우에는 L字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전반적으로 세율 인상에 따라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稅負擔의 絕對水準 및 實效稅負擔率이 모두 크게 增加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燈油는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가 逆進的인데 1998년에 접어들면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中·低所得層의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과중해졌다고 할 수 있다.

〈表 V-4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燈油,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1,079	19,850	20,760	18,977	18,671	14,245	16,267	17,135	18,383	17,203	18,256
稅負擔額	98	31,209	34,937	34,326	31,873	25,770	30,238	32,326	31,380	32,900	30,116	31,507
總所得 對比	97	2.071	1.244	1.080	0.865	0.762	0.521	0.530	0.500	0.459	0.308	0.652
實效稅負擔	98	4.741	2.850	2.210	1.730	1.227	1.271	1.205	1.019	0.898	0.568	1.286
總消費 對比	97	2.191	1.596	1.584	1.279	1.195	0.811	0.831	0.793	0.745	0.504	0.996
實效稅負擔	98	3.440	3.397	2.946	2.528	1.819	1.941	1.977	1.621	1.504	0.978	1.948
稅負擔	97	11.54	10.88	11.36	10.40	10.21	7.81	8.92	9.39	10.08	9.42	100.0
構成比	98	9.89	11.10	10.88	10.11	8.18	9.59	10.27	9.97	10.44	9.57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表 V-4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燈油,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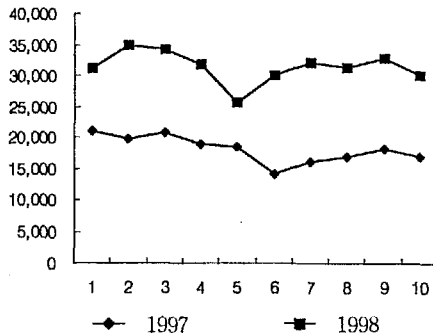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4,247	14,858	15,544	15,972	16,442	18,074	19,196	23,781	21,157	18,266
稅負擔額	98	0062	31,025	34,332	26,176	23,997	28,083	39184	38,799	43,136	39,171
總所得 對比	97	0.221	0.810	0.631	0.624	0.599	0.644	0.628	0.737	0.647	0.788
實效稅負擔率	98	4.447	2.121	1.784	1.121	1.004	1.055	1.427	1.405	1.496	2.154
總消費支出 對比	97	0.448	1.244	1.045	1.018	0.948	0.966	0.919	1.097	0.989	1.096
實效稅負擔率	98	3.676	3.430	2.760	1.871	1.555	1.611	2.034	2.140	2.085	2.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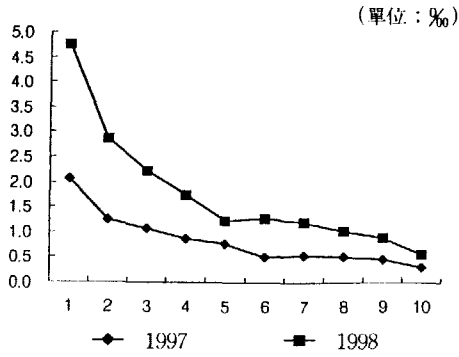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圖 V-14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燈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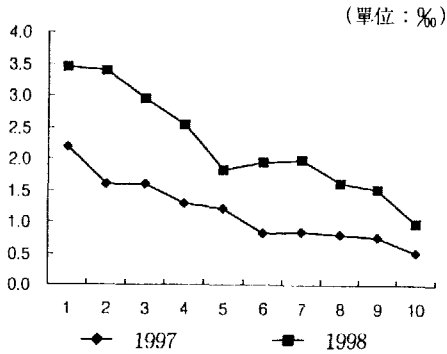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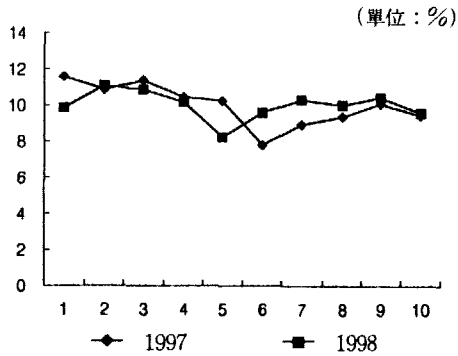
[圖 V - 14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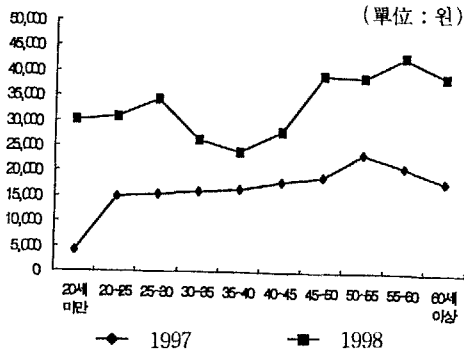
[圖 V - 15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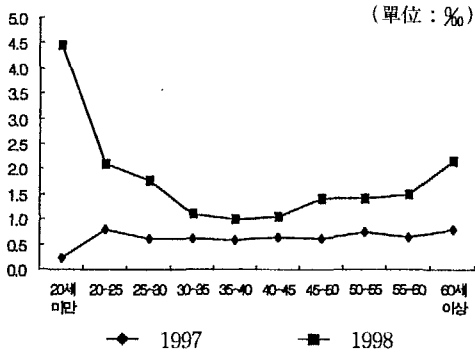
[圖 V - 151] 稅負擔 構成比(燈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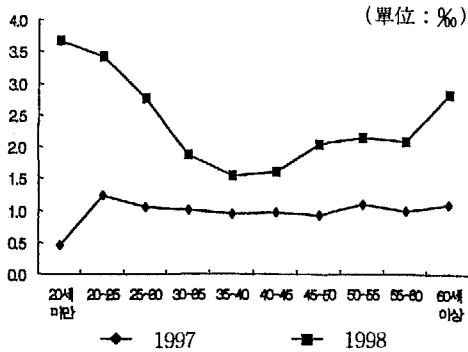
[圖 V-152] 年齡別 稅負擔額(燈油)



[圖 V-15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圖 V-15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燈油)



## 2) LPG

LPG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稅率은 1997년에는 1Kg당 18원이었으며 1998년에는 40원으로 인상되었다<sup>7)</sup>. 세율 인상의 여파로 LPG에 대한 家口當 特別消費稅 負擔 平均은 7,599원에서 2만 684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모든 所得階層과 모든 年齡層에서 예외없이 稅負擔이 증가하였다. 세부담의 증가율은 세율인상을보다 높은데 이는 消費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998년 동안 揮發油에 대한 交通세율과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료유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도 LPG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동안에는 세율 인상 이외에도 환율 상승에 의해 LPG의 原價 및 消費者價格이 인상되었으므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고 세부담 수준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sup>8)</sup>.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所得階層別 또는 年齡別 稅負擔의 相對構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量的인 측면에서의 오차 가능성은 있지만 質的인 측면에서는 오차가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LPG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 水準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圖 V-155]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所得階層別 稅負擔(消費支出) 構成比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稅負擔(消費支出) 增加率이 낮아 소득이 증가할수록 實效稅負擔率은 하락하여 전형적으로 稅負擔이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1998년에는 소득 및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화하였기 때문에 所得階層別 稅負擔 構造는 1997년에 비해 稅負擔의 逆進性

7) LPG의 경우에는 다른 石油製品과 달리 教育稅가 부과되지 않는다.

8) 현 시점에서는 LPG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원인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보완연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이 深化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稅負擔의 絕對水準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LPG에 대한 稅負擔의 逆進性 深化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燈油의 경우에 階層別 構成比가 대체로 일정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稅負擔의 逆進性은 燈油보다 LPG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表 V-45〉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LPG)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3813	6932	6188	6844	7364	8489	8800	9188	8873	9094	7559
稅負擔額	98	14151	16346	19505	18028	21049	22086	22771	22947	24030	25905	20684
總所得 對比	97	0.375	0.435	0.322	0.312	0.301	0.310	0.287	0.268	0.221	0.163	0.270
實效稅負擔	98	2.149	1.334	1.256	0.978	1.003	0.928	0.849	0.745	0.656	0.489	0.845
總消費 對比	97	0.396	0.557	0.472	0.461	0.471	0.483	0.449	0.425	0.360	0.266	0.413
實效稅負擔	98	1.560	1.590	1.674	1.460	1.485	1.418	1.393	1.185	1.098	0.842	1.279
稅負擔	97	5.04	9.17	8.18	9.06	9.72	11.23	11.65	12.16	11.75	12.03	100.0
構成比	98	6.83	7.91	9.42	8.71	10.18	10.67	11.02	11.10	11.61	12.54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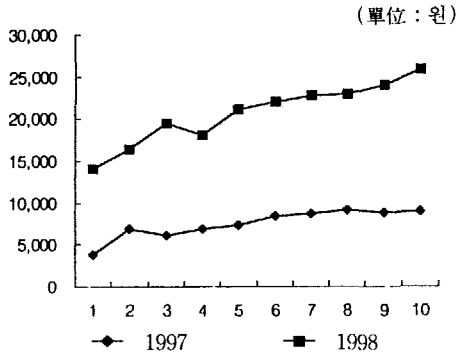
〈表 V-46〉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LPG)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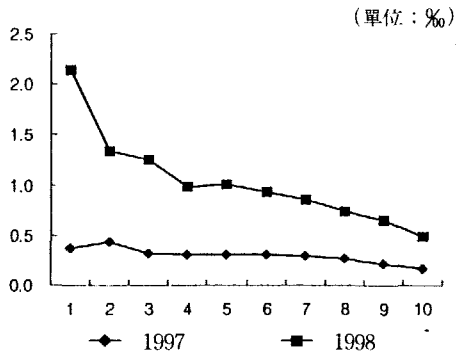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97	4645	3939	5797	7101	8040	7341	7966	6985	8928	8481
稅負擔額	98	13500	11353	14662	21032	23347	21117	19164	21616	22980	17665
總所得 對比	97	0.241	0.215	0.235	0.278	0.293	0.262	0.261	0.216	0.273	0.366
實效稅負擔率	98	1.997	0.776	0.762	0.900	0.976	0.793	0.698	0.783	0.797	0.971
總消費支出 對比	97	0.490	0.330	0.390	0.453	0.463	0.392	0.381	0.322	0.417	0.509
實效稅負擔率	98	1.651	1.255	1.179	1.503	1.513	1.211	0.995	1.192	1.111	1.274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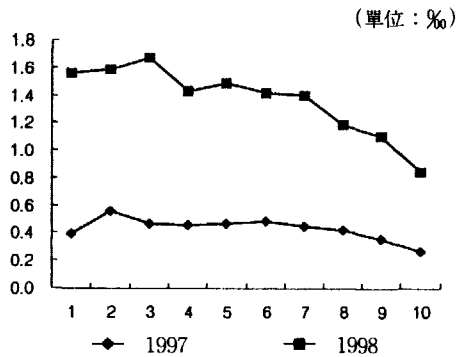
[圖 V - 15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L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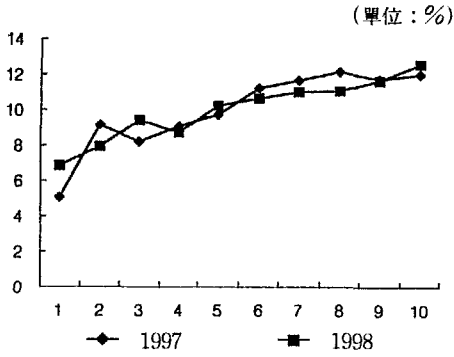
[圖 V - 15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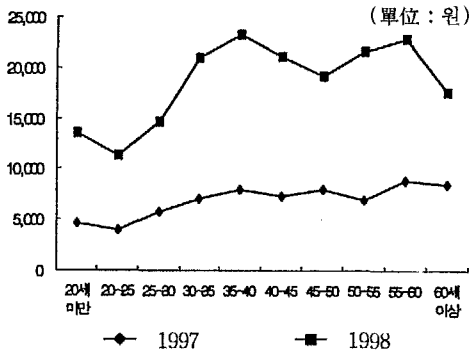
[圖 V - 15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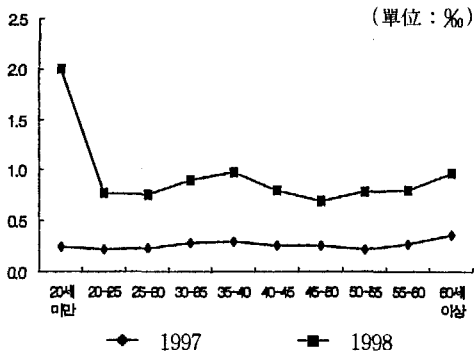
[圖 V-158] 稅負擔 構成比(L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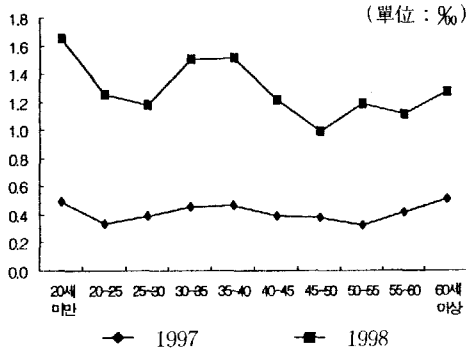
[圖 V-159] 年齡別 稅負擔額(LPG)



[圖 V-16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圖 V-16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LPG)



#### 마. 피아노

피아노는 複數의 特別消費稅率<sup>11)</sup>이 적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消費支出水準과 稅負擔水準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sup>11)</sup>.

피아노는 대부분 상당히 高價의 耐久消費財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 등 일부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수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아노의 경우에는 經濟危機로 인해 所得이 激減하고 장래에 대한 不確實性이 크게 增加하는 등 經濟 상황이 크게 급변하면서 需要構造가 크게 위축되어 消費 및 稅負擔 構造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아노에 대한 家口當 平均 消費支出 수준은 1만 1,706원(1997년)에서 8,901원(1998년)으로 24.0% 감소하였다(〈表 V-47〉 참조). 피아

11) 일반형 피아노에는 10%, 그랜드형 피아노에는 15%의 特別消費稅率<sup>11)</sup>이 적용되며 1998년 7월부터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각각 7%와 1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所得階層別 또는 年齡別 消費支出 패턴과 稅負擔 패턴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表 V-47〉과 〈表 V-48〉 및 〈表 V-49〉와 〈表 V-50〉의 형태는 서로 비슷한데 그 이유는 그랜드형 피아노에 대한 消費支出水準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노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은 979원(1997년)에서 642원(1998년)으로 -34.4% 정도 감소하였다(〈表 V-49〉 참조). 피아노의 경우 稅負擔의 絕對水準이 크게 감소한 것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감소에도 요인이 있다. 피아노에 대한 消費支出 수준과 稅負擔의 減少率間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피아노의 형태에 따라 特別消費稅率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양자간의 절대수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그랜드형 피아노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매우 작고 또한 일반형 및 그랜드형 피아노간의 세율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피아노에 대한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의 減少率이 總所得이나 總消費支出의 減少率보다 크기 때문에 總所得 또는 總消費支出에 대비한 特別消費稅의 實效稅負擔率은 下落하였다.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1998년 동안 피아노에 대한 소비지출이 100% 감소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이는 급격한 경기후퇴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피아노의 경우에는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등 수요가 매우 非彈力的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들의 教育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특히 불요불급한 수요의 성격을 지니는 피아노에 대한 소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에 특히 3분위 이하의 低所得層에서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피아노에 대한 소비를 100% 감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의 경제위기 동안 所得이 크게 감소하고 生計에 대한 不安感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러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低所得層(특히 1~3분위)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8분위 이상의 高所得層에서는 상대적으로 피아노에 대한 稅負擔(消費支出)이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이들 계층이 高所得層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피아노 전공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低所得層에 비해 經濟危機에 따른 不安感이 상대적으로 덜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피아노에 대한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은 피아노에 대한 低所得層의 消費支出이 급감한 데 힘입어 결과적으로 累進的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피아노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奢侈稅로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所得階層別 消費패턴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요인이 있다.

年齡別로는 未成年 子女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30~40대 및 50대 초반 가구에서 피아노에 대한 消費支出(稅負擔) 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V-48>과 [圖 V-166]~[圖 V-168] 및 [圖 V-173]~[圖 V-175]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30~40대 가구의 稅負擔 絶對水準과 實效稅負擔率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이들 年齡層의 實效稅負擔率이 가장 높다. 비록 절대수준은 작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수와 피아노에 대한 소비지출간에는 正(+)의 相關關係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아노의 경우에는 低所得層에 비해 상대적으로 高所得層의 소비비중이 높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기간인 1998년에는 전반적으로 消費支出 水準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高所得層의 消費比重이 증가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자녀들에 대한 一般 教養이나 教育 등을 目的으로 未成年 子女를 많이 가진 중년층에서 피아노에 대한 消費支出 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피아노에 대한 消費支出이 高所得層과 中年層을 중심으로 非彈力的이며, 반면에 低所得層과 低年齡層, 老年層에서는 需要가 상당히 彈力的이라고 할 수 있다.

〈表 V-47〉 피아노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支出額 97	3,608	16,385	3,956	2,751	0	20,351	19,143	7,402	13,957	29,470	11,706
98	0	0	0	1,570	0	15,013	6,308	14,346	28,048	23,698	8,901
總所得 97	0.04	0.10	0.02	0.01	0.00	0.07	0.06	0.02	0.03	0.05	0.04
對比 比重 98	0.00	0.00	0.00	0.01	0.00	0.06	0.02	0.05	0.08	0.04	0.04
總消費 97	0.04	0.13	0.03	0.02	0.00	0.12	0.10	0.03	0.06	0.09	0.06
對比 比重 98	0.00	0.00	0.00	0.01	0.00	0.10	0.04	0.07	0.13	0.08	0.06
支出 構成比 97	3.08	14.00	3.38	2.35	0.00	17.39	16.37	6.33	11.93	25.17	100.0
98	0.00	0.00	0.00	1.76	0.00	16.86	7.09	16.13	31.50	26.65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表 V-48〉 피아노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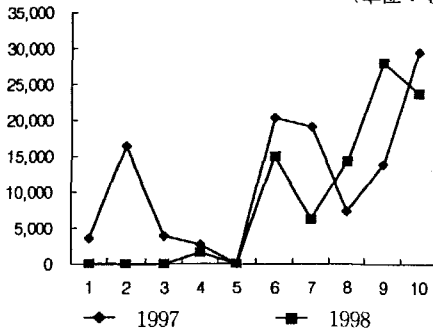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支出額 97	0	0	11,473	22,719	28,397	5,292	3,337	0	2,045	4,738
98	0	0	0	3,522	24,114	9,891	4,066	6,841	0	1,934
總所得 對比 比重 97	0.00	0.00	0.05	0.09	0.10	0.02	0.01	0.00	0.01	0.02
98	0.00	0.00	0.00	0.02	0.10	0.04	0.01	0.02	0.00	0.01
總消費支出 對比 比重 97	0.00	0.00	0.08	0.14	0.16	0.03	0.02	0.00	0.01	0.03
98	0.00	0.00	0.00	0.03	0.16	0.06	0.02	0.04	0.00	0.01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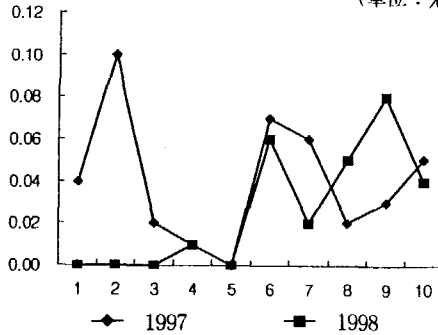
[圖 V - 162] 所得階層別 支出額(피아노)

(單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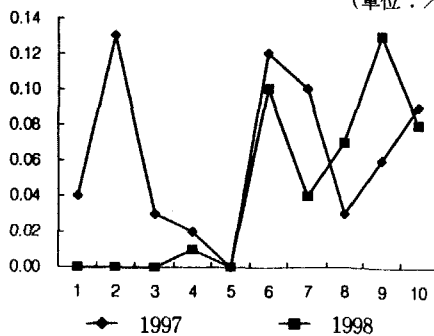
[圖 V - 163]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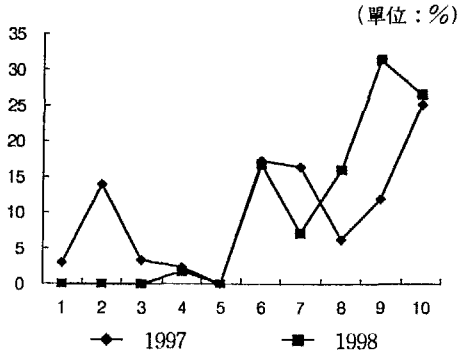


[圖 V - 164]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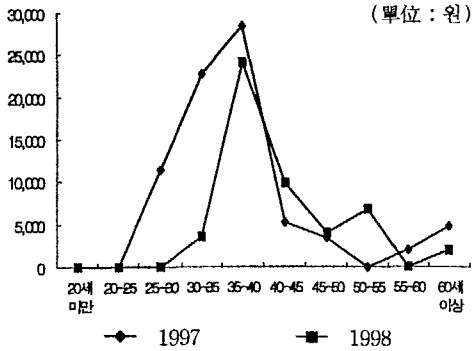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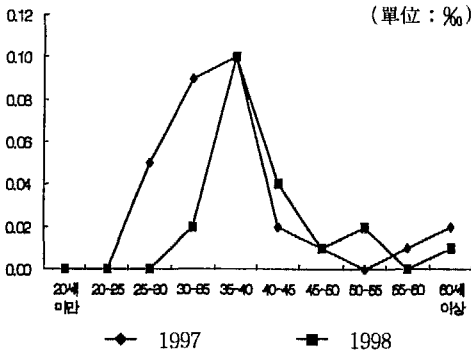
[圖 V-165] 支出額 構成比(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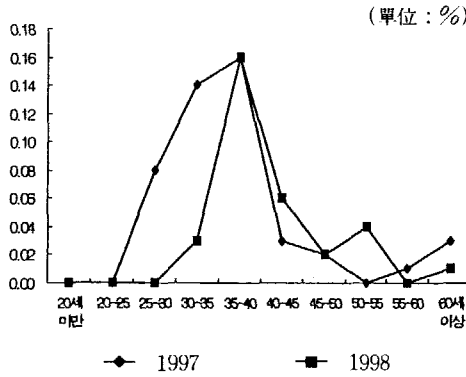
[圖 V-166] 年齡別 支出額(피아노)



[圖 V-167]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圖 V - 168]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피아노)



<表 V - 49>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피아노, 教育稅 包含)

(單位：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302	1,371	331	230	0	1,703	1,602	619	1,168	2,466	979
稅負擔額	98	0	0	0	113	0	1,083	455	1,035	2,024	1,710	642
	98A	0	0	0	131	0	1,256	5,28	1,200	2,347	1,983	745
總所得 對比	97	0.030	0.086	0.017	0.010	0.000	0.062	0.052	0.018	0.029	0.044	0.035
實效稅負擔	98	0.000	0.000	0.000	0.006	0.000	0.046	0.017	0.034	0.055	0.032	0.026
	98A	0.000	0.000	0.000	0.007	0.000	0.053	0.020	0.039	0.064	0.037	0.030
總消費 對比	97	0.031	0.110	0.025	0.016	0.000	0.097	0.082	0.029	0.047	0.072	0.053
實效稅負擔	98	0.000	0.000	0.000	0.009	0.000	0.070	0.028	0.053	0.093	0.056	0.040
	98A	0.000	0.000	0.000	0.010	0.000	0.081	0.032	0.062	0.107	0.064	0.046
稅負擔	97	3.08	14.00	3.38	2.35	0.00	17.39	16.37	6.33	11.93	25.17	100.0
構成比	98	0.00	0.00	0.00	1.76	0.00	16.86	7.09	16.13	31.50	26.65	100.0

註：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表 V-50〉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피아노,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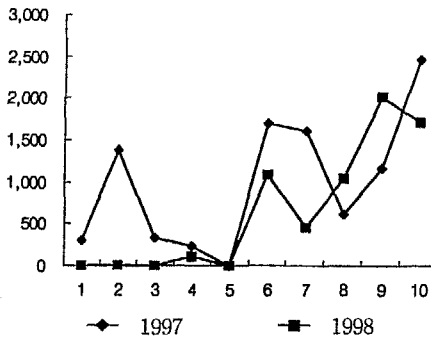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稅負擔額 97	0	0	960	1,901	2,376	443	279	0	171	396
98	0	0	0	254	1,740	714	293	494	0	140
98A	0	0	0	295	2,018	828	340	572	0	162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39	0.074	0.087	0.016	0.009	0.000	0.005	0.017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11	0.073	0.027	0.011	0.018	0.000	0.008
98A	0.000	0.000	0.000	0.013	0.084	0.031	0.012	0.021	0.000	0.009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65	0.121	0.137	0.024	0.013	0.000	0.008	0.024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18	0.113	0.041	0.015	0.027	0.000	0.010
98A	0.000	0.000	0.000	0.021	0.131	0.047	0.018	0.032	0.000	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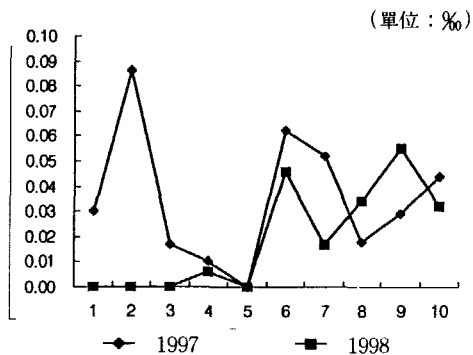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圖 V-169] 所得階層別 稅負擔額(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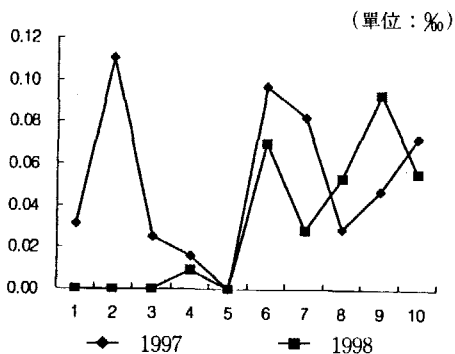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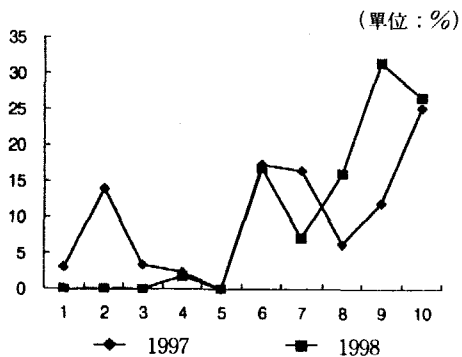
[圖 V-170]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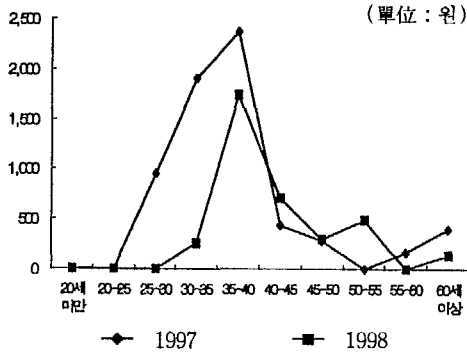
[圖 V-171]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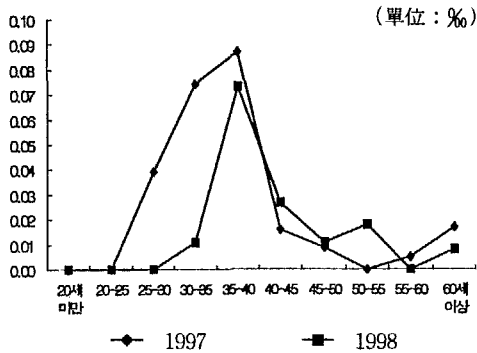
[圖 V-172] 稅負擔 構成比(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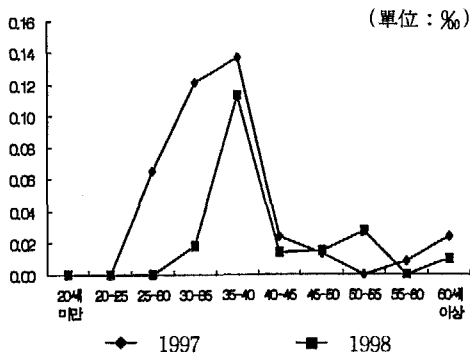
[圖 V-173] 年齡別 稅負擔額(피아노)



[圖 V-174]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圖 V-175]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피아노)



## 바. 家具

家具의 경우에는 여타의 일반적인 特別消費稅 課稅對象과 달리 超過金額課稅制度가 적용된다. 家具의 경우에는 1組의 價格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1개의 價格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는 기준금액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家具에 대한 總消費支出 分布와 特別消費稅(教育稅 包含) 負擔 分布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반증의 단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준금액 이하의 제품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지출 수준이 陽의 값을 가지지만 세부담은 零이기 때문에 稅負擔과 消費支出間에는 比例關係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家具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동안 세율개편이 있었다. 즉, 1998년부터 家具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의 稅率이 종전의 15%에서 30%로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稅負擔 水準 및 實效稅負擔率 水準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家具 역시 불요불급한 소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所得水準이 下落하면서 가구에 대한 소비도 격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特別消費稅가 과세되지 않는 基準金額 이하의 家具, 즉 中·低價家具의 경우에도 消費가 크게 萎縮되었다. 이는 <表 V-51>과 <表 V-52>에 잘 나타나 있다. 家具에 대한 도시가계의 가구당 평균 總消費支出 수준은 1,222원에서 774원으로 36.7% 감소하여 總所得이나 總消費支出의 減少率보다 훨씬 감소율이 높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소비지출이 일관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家具가 불요불급한 내구소비재로서 소득 감소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998년에는 소득 감소로 인해 거의 모든 所得階層과 年齡層에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매우 극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家具에 대한 消費支出 절대규모의 감소현상이

특히 9~10분위의 最高所得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家具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평균적인 特別消費稅 負擔額도 693원에서 487원으로 29.7%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家具에 대한 消費支出 減少率보다는 다소 낮다. 이는 1998년부터 稅率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은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階層別 稅負擔이 다소 累進的이다. 1998년에는 稅負擔의 累進構造가 더욱 강화되었다.

家具에 대한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의 특징은, 1997년의 경우 7분위 이하의 中·低所得層에서도 일부 特別消費稅를 負擔하였지만, 1998년에는 이들 계층의 稅負擔이 모두 零으로 100%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8분위와 10분위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세 부담 감소추세 속에서도 오히려 세 부담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것이 또다른 특징이다.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었지만 8분위와 10분위의 세 부담이 세율 인상을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7분위 이하의 階層에서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高級家具에 대한 消費支出이 100% 감소하여 이들 계층의 特別消費稅 負擔額 또한 100% 감소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表 V-53〉 참조). 이는 단지 7분위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의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을 100% 감축시켰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表 V-51〉에서 보듯이 7분위 이하의 계층에서도 가구에 대한 消費支出은 여전히 零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年齡別로는 30~40대 가구 및 50대 후반의 가구에서 家具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表 V-54〉 참조). 前者 家口의 경우에 상당 부분이 既婚家庭으로 볼 수 있으며, 後者 家口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結婚 適齡期의 子女를 가진 가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바탕으로 하거나 예정에 있는 家口에서 가구에 대한 특

別消費稅 負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 직전 기간인 1997년에도 나타나고 있어 經濟危機와 그러한 傾向間에는 큰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인 결론으로만 받아들여기로 한다. 왜냐하면 家具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초과금액 과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구 전반에 대한 지출구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表 V-51〉 家具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 百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227	761	294	466	710	560	1,341	1,488	2,451	3,917	1,222
	98	328	191	326	249	831	538	498	1,274	1,277	2,230	774
總所得 對比 比重	97	0.22	0.48	0.15	0.21	0.29	0.20	0.44	0.43	0.61	0.70	0.44
	98	0.50	0.16	0.21	0.13	0.40	0.23	0.19	0.41	0.35	0.42	0.32
總消費 對比 比重	97	0.24	0.61	0.22	0.31	0.45	0.32	0.68	0.69	0.99	1.15	0.67
	98	0.36	0.19	0.28	0.20	0.59	0.35	0.30	0.66	0.58	0.72	0.48
支出 構成比	97	1.86	6.23	2.41	3.82	5.80	4.59	10.98	12.18	20.08	32.05	100.0
	98	4.22	2.47	4.21	3.21	10.73	6.94	6.44	16.46	16.48	28.83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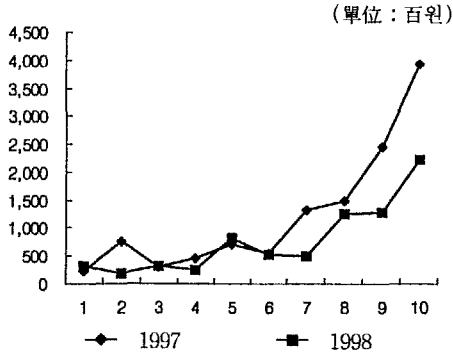
〈表 V-52〉 家具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 百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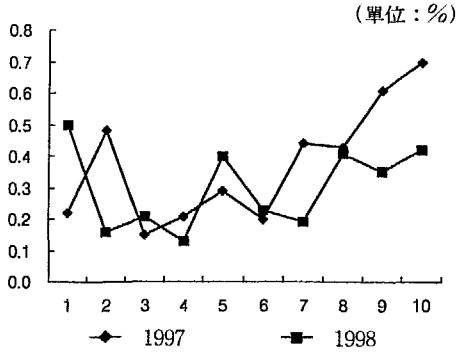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支出額	97	118	1,338	1,499	951	905	732	1,540	1,535	2,825	656
	98	0	467	723	576	639	891	748	715	2,122	428
總所得 對比 比重	97	0.06	0.73	0.61	0.37	0.33	0.26	0.50	0.48	0.86	0.28
	98	0.00	0.32	0.38	0.25	0.27	0.33	0.27	0.26	0.74	0.24
總消費 支出 對比 比重	97	0.12	1.12	1.01	0.61	0.52	0.39	0.74	0.71	1.32	0.39
	98	0.00	0.52	0.58	0.41	0.41	0.51	0.39	0.39	1.03	0.31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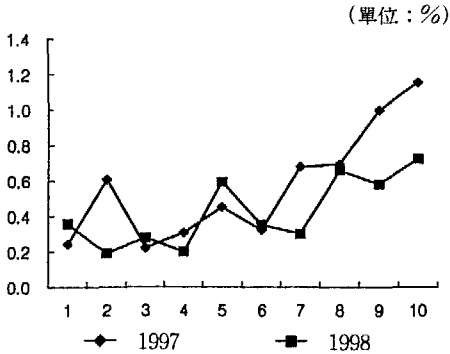
[圖 V-176] 所得階層別 支出額(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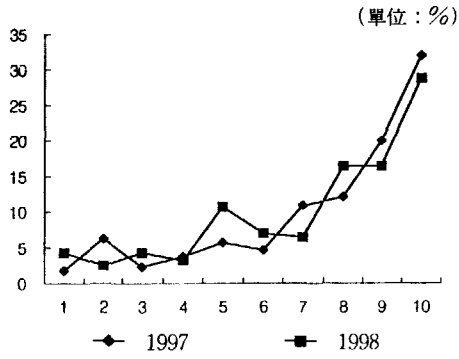
[圖 V-177]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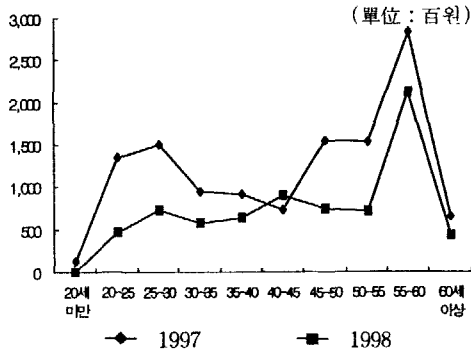
[圖 V-178]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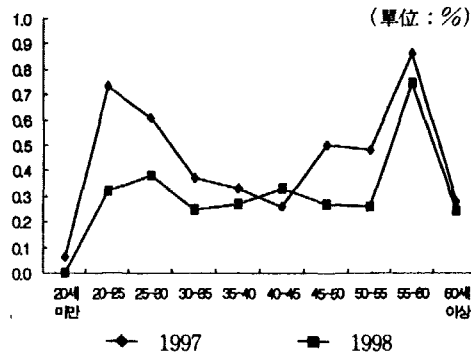
[圖 V-179] 支出額 構成比(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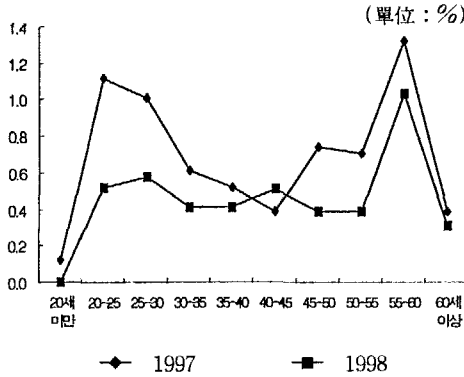
[圖 V-180] 年齡別 支出額(家具)



[圖 V-181]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家具)



[圖 V-182]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家具)



<表 V-5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家具, 教育稅 包含)

(單位：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0	3,024	0	199	0	0	914	502	1,589	701	693
稅負擔額 98	0	0	0	0	0	0	0	2,140	0	2,723	487
總所得 對比97	0.000	0.190	0.000	0.009	0.000	0.000	0.030	0.015	0.040	0.013	0.025
實效稅負擔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69	0.000	0.051	0.020
總消費 對比97	0.000	0.243	0.000	0.013	0.000	0.000	0.047	0.023	0.064	0.021	0.038
實效稅負擔 9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11	0.000	0.088	0.030
稅負擔 97	0.00	43.64	0.00	2.87	0.00	0.00	13.19	7.24	22.94	10.12	100.0
構成比 9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99	0.00	56.01	100.0

註：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表 V-5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家具,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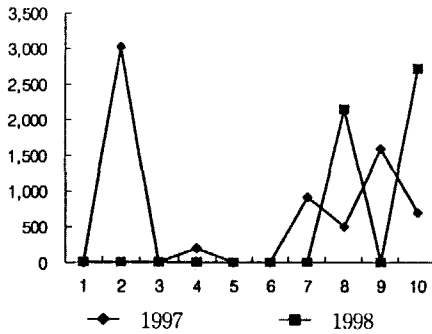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4,725	327	0	305	1,586	0	860	0
稅負擔額	98	0	0	0	0	964	391	474	0	2,314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192	0.013	0.000	0.011	0.052	0.000	0.026	0.00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00	0.040	0.015	0.017	0.000	0.080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318	0.021	0.000	0.016	0.076	0.000	0.040	0.00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0	0.000	0.062	0.022	0.025	0.000	0.112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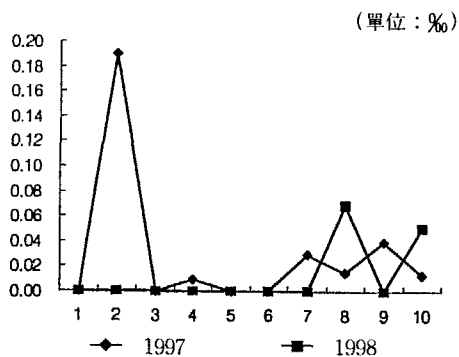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圖 V-183]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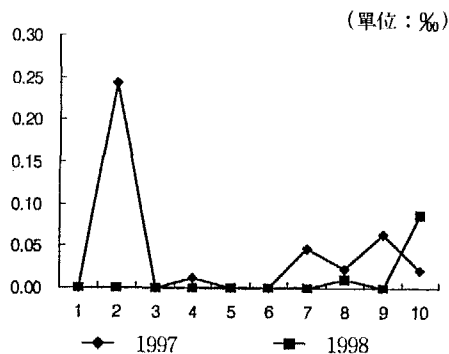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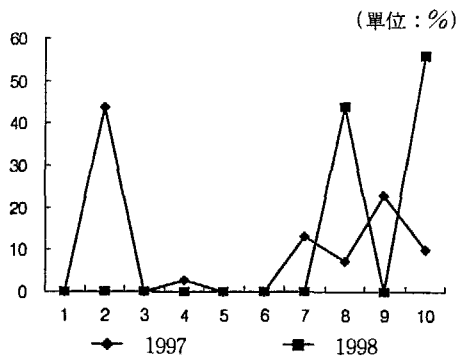
[圖 V-184]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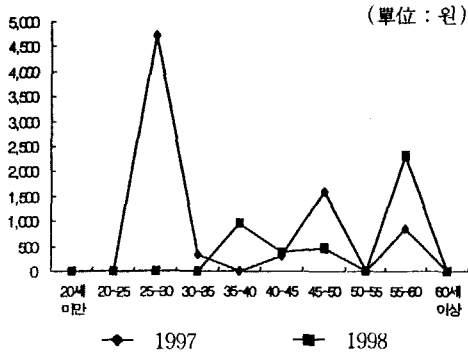
[圖 V-185]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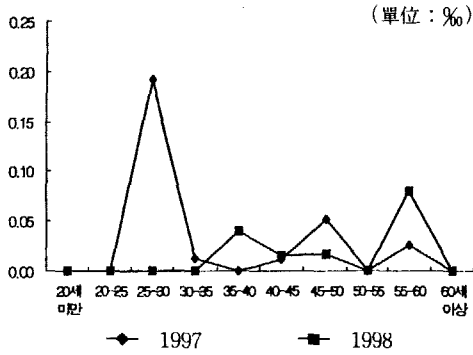
[圖 V-186] 稅負擔 構成比(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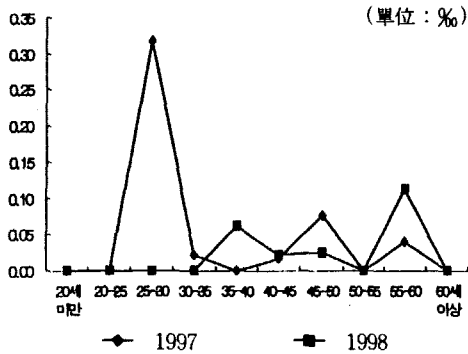
[圖 V-187] 年齡別 稅負擔額(家具)



[圖 V-188]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圖 V-189]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家具)



### 사. 時計, 카메라

現行 特別消費稅法에 의하면 時計의 경우에는 가격이 基準金額(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 초과분만을 課稅標準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는 1997~1998년 모두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이 되는 高價時計에 대한 소비지출이 著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가계 자료만으로는 시계에 대한 세부담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카메라도 超過金額課稅制度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基準金額 5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카메라에 대한 도시가계의 가구당 平均 消費支出額은 8,257원(1997년)에서 4,061원(1998년)으로 50.8% 감소하였다. 반면에 特別消費稅 負擔額은 192원(1997년)에서 143원(1998년)으로 25.5% 감소하는 등 소비지출에 비해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高價의 카메라에 대한 消費支出이 일반 카메라보다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1998년부터 카메라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稅率이 20%에서 30%로 인상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高價의 카메라를 구입한 가구의 수가 별로 많지 않다. 즉, 特別消費稅가 과세되는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은 가구(또는 계층)가 상당수에 이르며, 또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中·低價의 카메라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所得階層別 稅負擔은 매우 간헐적으로 일부 계층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카메라 역시 수요가 소득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인 耐久消費財이다. 따라서 카메라도 경제위기 동안 급변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消費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는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층별로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계층이 넓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구조의 변화추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稅負擔 比重이 1997년에는 65.5%, 1998년에는

85.7%로 매우 높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연령별로도 카메라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가 일정하게 규칙적이지 않아 별다른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結婚 適齡期의 年齡層과, 結婚 適齡期의 子女를 둔 40대 후반~50대 후반의 年齡層에서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카메라를 많이 구입함으로써 稅負擔이 陽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高價의 카메라는 婚需品으로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에 대한 總消費支出 分布를 보여주는 <表 V-55>와 <表 V-56>에 의하면 거의 모든 所得階層과 年齡層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表 V-57> 또는 <表 V-58>을 보면 특정 부류 또는 특정한 연령층에서만 고가의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구입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부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 흥미롭다.

<表 V-55> 카메라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支出額 97	3,793	5,471	2,514	10,405	5,132	7,662	8,904	8,754	10,651	19,274	8,257
98	1,905	3,287	3,222	3,200	3,326	3,624	4,270	493	2,626	14,639	4,061
總所得 97	0.04	0.03	0.01	0.05	0.02	0.03	0.03	0.03	0.03	0.03	0.03
對比 比重 98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00	0.01	0.03	0.02
總消費 97	0.04	0.04	0.02	0.07	0.03	0.04	0.05	0.04	0.04	0.06	0.05
對比 比重 98	0.02	0.03	0.03	0.03	0.02	0.02	0.03	0.00	0.01	0.05	0.03
支出 構成比 97	4.59	6.63	3.04	12.61	6.20	9.28	10.79	10.61	12.91	23.34	100.0
98	4.68	8.11	7.93	7.88	8.19	8.92	10.53	1.22	6.46	36.09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表 V-56〉 카메라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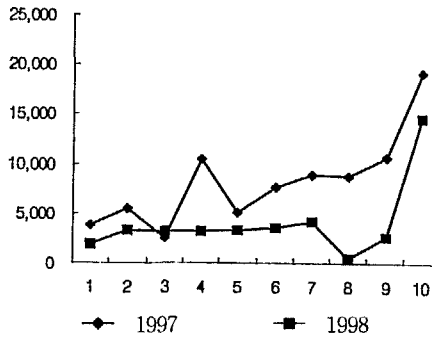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支出額	97 0	123	25,872	12,842	4,941	2,695	9,066	6,554	6,305	9,600
	98 0	0	7,188	5,642	2,030	4,026	4,874	6,098	4,312	0
總所得 對比 比重	97 0.00	0.00	0.11	0.05	0.02	0.01	0.03	0.02	0.02	0.04
	98 0.00	0.00	0.04	0.02	0.01	0.02	0.02	0.02	0.01	0.00
總消費支出 對比 比重	97 0.00	0.00	0.17	0.08	0.03	0.01	0.04	0.03	0.03	0.06
	98 0.00	0.00	0.06	0.04	0.01	0.02	0.03	0.03	0.02	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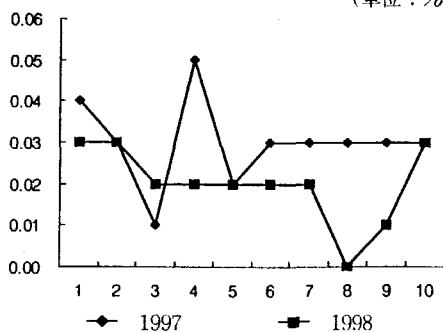
[圖 V-190] 所得階層別 支出額(카메라)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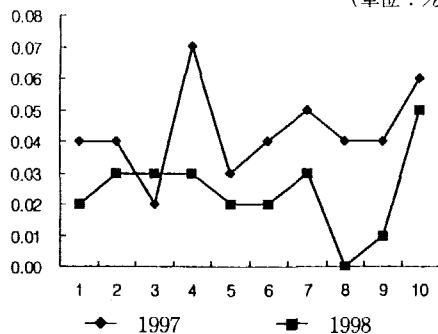
[圖 V-191]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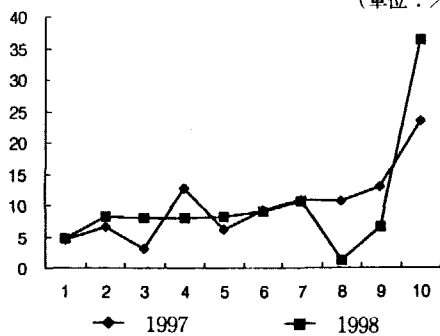
[圖 V-192]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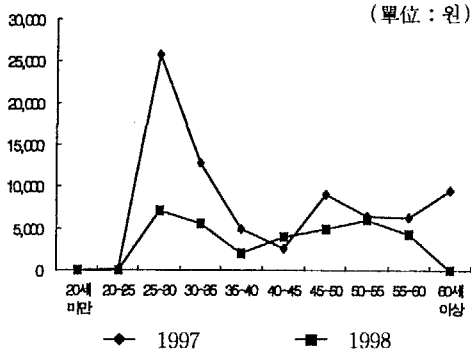


[圖 V-193] 支出額 構成比(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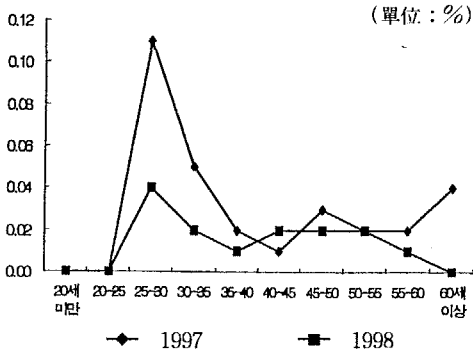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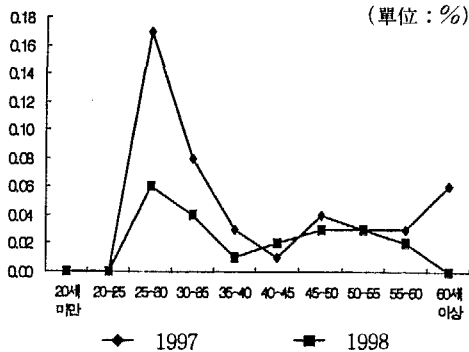
[圖 V-194] 年齡別 支出額(카메라)



[圖 V-195]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圖 V-196]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比重(카메라)



〈表 V-57〉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카메라,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64	113	0	57	0	192	235	0	0	1,257	192
稅負擔額	98	125	0	0	24	0	56	0	0	0	1,220	143
總所得 對比	97	0.006	0.007	0.000	0.003	0.000	0.007	0.008	0.000	0.000	0.022	0.007
實效稅負擔	98	0.019	0.000	0.000	0.001	0.000	0.002	0.000	0.000	0.000	0.023	0.006
總消費 對比	97	0.007	0.009	0.000	0.004	0.000	0.011	0.012	0.000	0.000	0.037	0.010
實效稅負擔	98	0.014	0.000	0.000	0.002	0.000	0.004	0.000	0.000	0.000	0.040	0.009
稅負擔	97	3.36	5.90	0.00	2.95	0.00	10.00	12.26	0.00	0.00	65.54	100.0
構成比	98	8.74	0.00	0.00	1.68	0.00	3.91	0.00	0.00	0.00	85.67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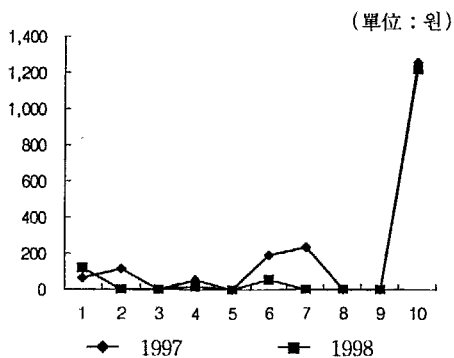
〈表 V-58〉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카메라,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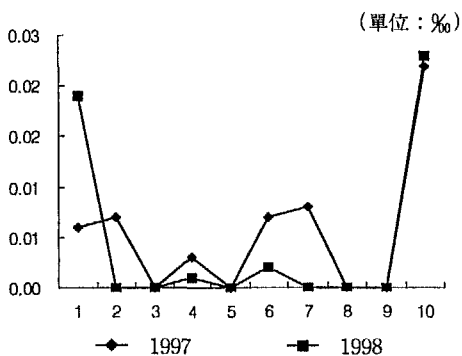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0	367	126	0	0	717	104	318	159
稅負擔額	98	0	0	34	33	0	329	101	695	0	0
總所得 對比	97	0.000	0.000	0.015	0.005	0.000	0.000	0.023	0.003	0.010	0.007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2	0.001	0.000	0.012	0.004	0.025	0.000	0.00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00	0.025	0.008	0.000	0.000	0.034	0.005	0.015	0.01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3	0.002	0.000	0.019	0.005	0.038	0.000	0.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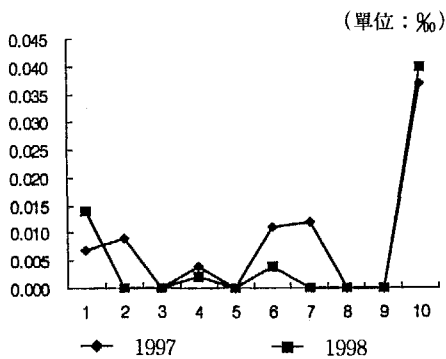
[圖 V-197] 所得階層別 稅負擔額(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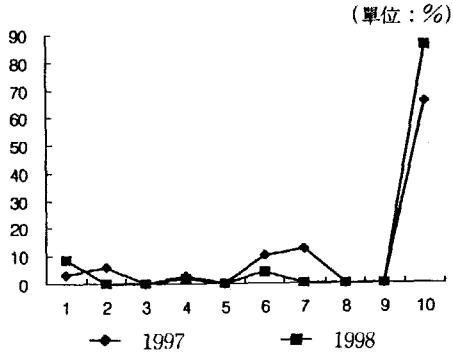
[圖 V-198]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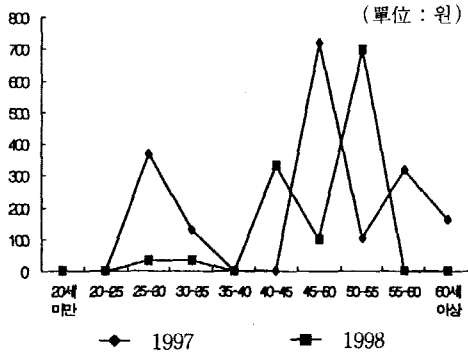
[圖 V-199]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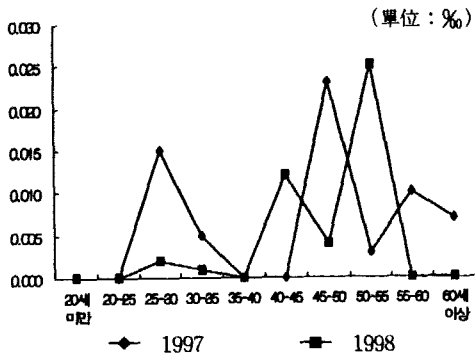
[圖 V-200] 稅負擔 構成比(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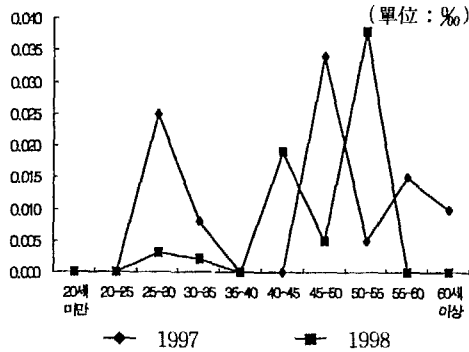
[圖 V-201] 年齡別 稅負擔額(카메라)



[圖 V-202]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圖 V-203]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카메라)



#### 아. 寶石 · 貴金屬 製品

寶石 · 貴金屬 製品도 超過金額課稅制度(基準金額 100만원)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品目은 衣食住 生活과 밀접한 關係가 없기 때문에 需要가 彈力的이다.

〈表 V-59〉를 보면 經濟危機 이후 寶石 · 貴金屬 製品에 대한 가구당 平均 消費支出額이 450원에서 26.7%가 감소한 330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表 V-61〉을 보면 特別消費稅 負擔額은 오히려 1,962원에서 2,999원으로 52.9% 증가하였다. 1998년부터 寶石 · 貴金屬 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이 20%에서 30%로 증가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寶石 · 貴金屬 製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價値貯藏財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表 V-59〉를 보면 1~9분위의 所得階層에서는 寶石 · 貴金屬 製品에 대한 소비지출이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에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寶石 · 貴金屬 製品에 대한 消費支出 수준이 1,544원에서 1,912원 수준으로 23.8% 增加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最高所得層의 消費支出 比重도 1997년의 34.3%에서 1998년에는 58.0%로 대폭 상

승하였다.

〈表 V-61〉의 稅負擔 分布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所得階層에서 稅負擔 水準이 下落(1998년) 하였으나 1~2분위, 5분위, 7~8분위, 그리고 最高所得層인 10분위의 稅負擔 水準은 1997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特別消費稅率이 20%에서 30%로 인상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부담 증가율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요인 외에도 1997년말의 경제위기 이후 不確實性이 크게 增大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하고 각종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가 진행되면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및 그에 따른 금융자산에 대한 인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팽배하는 등,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現金이나 預金에 대한 代替財로서 價値貯藏財의 성격을 지니는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적으로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消費支出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高價의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출을 확대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寶石·貴金屬 製品의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의 호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現金 保有나 預金 등의 金融資産의 保有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最高所得層에만 국한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所得階層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經濟危機로 인한 社會不安感이 상당히 컸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매우 큰 最高所得層의 경우에는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絕對支出 水準을 크게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이 되는 高價製品에 대한 支出比重을 더욱 크게 增大시켰는데 이것은 최고소득층이 經濟危機로부터 느꼈던 不安感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계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高級家具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高所得層의 경우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1998년 동안 高級家具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점과도 연

게시켜 볼 때,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經濟危機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금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대체제로서 價値貯藏財의 성격을 지니는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을 확대하였고, 또한 高級 · 高價의 奢侈財에 대한 消費支出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절대수준 측면에서 最高所得層인 10분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30대 후반, 특히 40대 후반의 가구에서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高價의 寶石 · 貴金屬 製品에 대한 지출 또는 特別消費稅 負擔이 크게 增加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年齡層이 상대적으로 資産이나 富를 많이 축적한 연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논리 전개는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자료의 제약과 분석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만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위의 결론은 잠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寶石 · 貴金屬 製品에 대한 所得階層別 實效稅負擔率 분포는 대체로 1~9분위에서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最高所得層인 10분위에서는 實效稅負擔率이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實效稅負擔率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의 가구에서는 실효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表 V-59〉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 百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支出額	97 100	165	145	334	352	184	277	350	1,053	1,544	450
	98 54	96	93	198	229	53	152	265	246	1,912	330
總所得	97 0.10	0.10	0.08	0.15	0.14	0.07	0.09	0.10	0.26	0.28	0.16
對比 比重	98 0.08	0.08	0.06	0.11	0.11	0.02	0.06	0.09	0.07	0.36	0.13
總消費	97 0.10	0.13	0.11	0.23	0.23	0.10	0.14	0.16	0.43	0.45	0.25
對比 比重	98 0.06	0.09	0.08	0.16	0.16	0.03	0.09	0.14	0.11	0.62	0.20
支出 構成比	97 2.21	3.66	3.21	7.43	7.80	4.08	6.15	7.79	23.41	34.27	100.0
	98 1.63	2.91	2.80	6.00	6.95	1.61	4.60	8.04	7.45	58.00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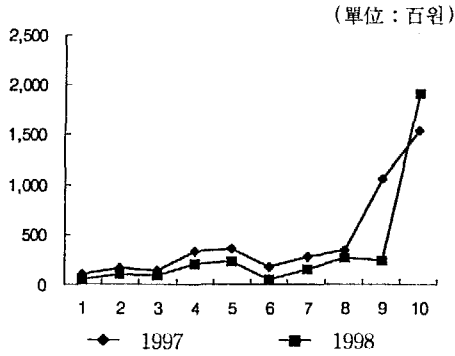
〈表 V-60〉 寶石·貴金屬 製品에 대한 年齡別 消費支出 分布

(單位: 百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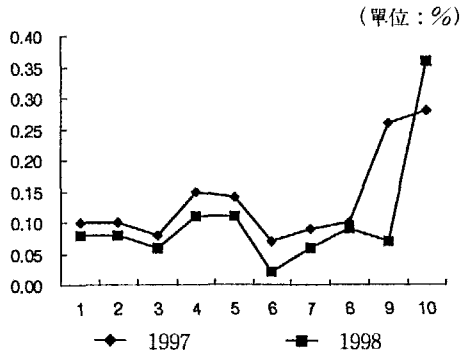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支出額	97 176	270	285	198	119	312	238	552	1,766	1,128
	98 0	391	182	98	246	84	268	287	1,611	871
總所得 對比 比重	97 0.09	0.15	0.12	0.08	0.04	0.11	0.08	0.17	0.54	0.49
	98 0.00	0.27	0.09	0.04	0.10	0.03	0.10	0.10	0.56	0.48
總消費支出 對比 比重	97 0.19	0.23	0.19	0.13	0.07	0.17	0.11	0.25	0.83	0.68
	98 0.00	0.43	0.15	0.07	0.16	0.05	0.14	0.16	0.78	0.63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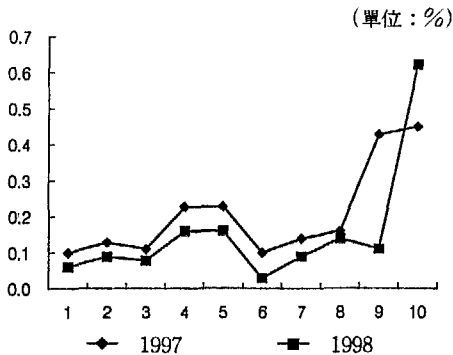
[圖 V-204] 所得階層別 支出額(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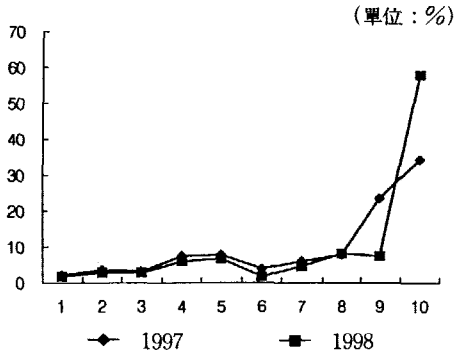
[圖 V-205] 總所得 對比 支出 比重(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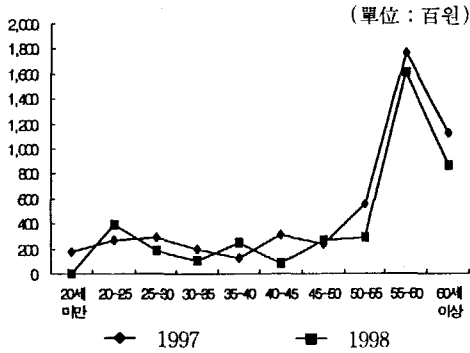
[圖 V-206]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 比重(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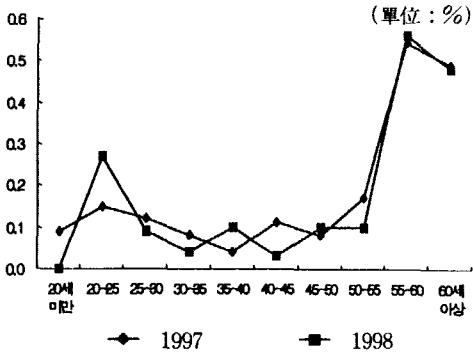
[圖 V-207] 支出額 構成比(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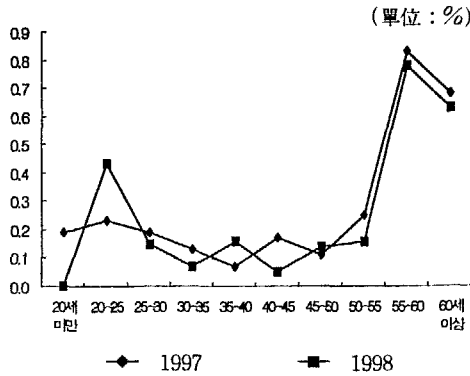
[圖 V-208] 年齡別 支出額(寶石・貴金屬 製品)



[圖 V-209] 年齡別 總所得 對比 支出 比重(寶石・貴金屬 製品)



[圖 V-210] 年齡別 總消費支出 對比 支出 比重(寶石·貴金屬 製品)



〈表 V-61〉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寶石·貴金屬 製品,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358	141	0	2,194	1,131	82	241	551	5,998	8,919	1,962
稅負擔額	98	483	338	58	2,114	1,461	0	1,617	1,525	613	21,756	2,999
總所得 對比	97	0.035	0.009	0.000	0.100	0.046	0.003	0.008	0.016	0.150	0.160	0.070
實效稅負擔	98	0.073	0.028	0.004	0.115	0.070	0.000	0.060	0.050	0.017	0.410	0.122
總消費 對比	97	0.037	0.011	0.000	0.148	0.072	0.005	0.012	0.025	0.243	0.261	0.107
實效稅負擔	98	0.053	0.033	0.005	0.168	0.103	0.000	0.099	0.079	0.028	0.707	0.185
稅負擔	97	1.82	0.72	0.00	11.19	5.75	0.42	1.23	2.81	30.60	45.46	100.0
構成比	98	1.61	1.13	0.19	7.05	4.87	0.00	5.40	5.09	2.04	72.62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表 V-62〉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  
(寶石・貴金屬 製品, 教育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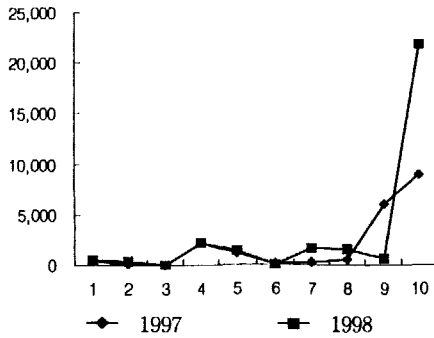
(單位: 원, %)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231	0	940	0	960	218	2,538	9,573	7,493
稅負擔額	98	0	0	121	16	1,978	0	2,003	2,529	18,680	11,895
總所得 對比	97	0.000	0.013	0.000	0.037	0.000	0.034	0.007	0.079	0.293	0.323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06	0.001	0.083	0.000	0.073	0.092	0.648	0.654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19	0.000	0.060	0.000	0.051	0.010	0.117	0.447	0.450
實效稅負擔率	98	0.000	0.000	0.010	0.001	0.128	0.000	0.104	0.139	0.903	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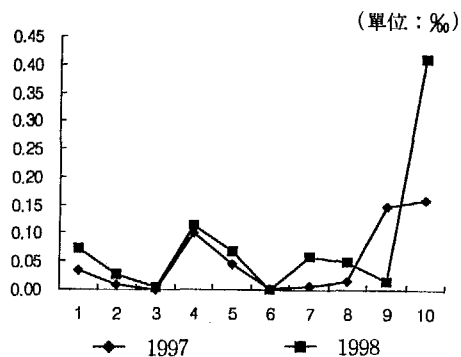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圖 V-211] 所得階層別 稅負擔額(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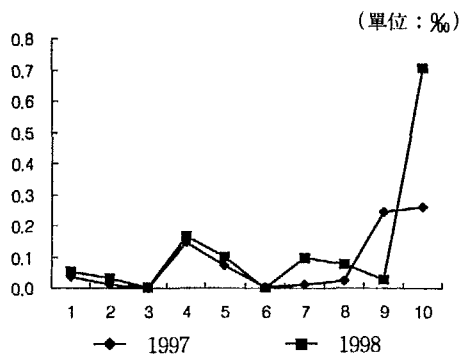
(單位: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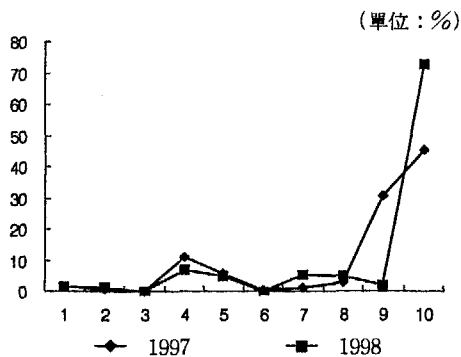
[圖 V-212]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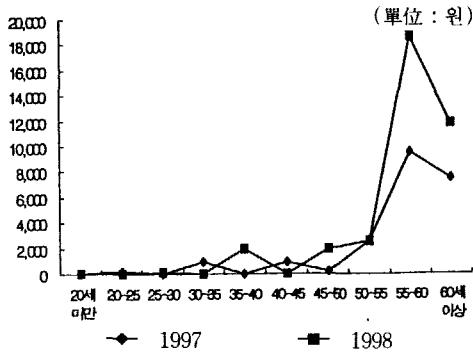
[圖 V-213]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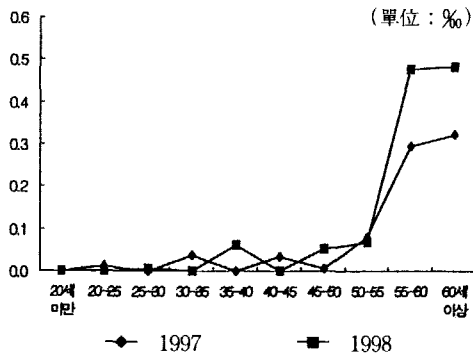
[圖 V-214] 稅負擔 構成比(寶石·貴金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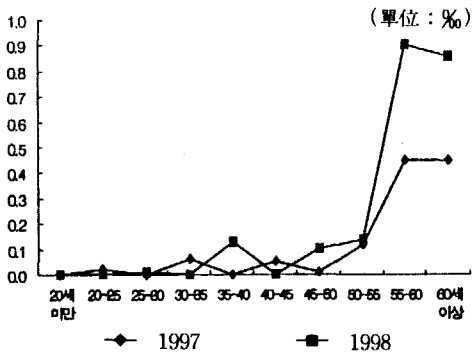
[圖 V-215] 年齡別 稅負擔額(寶石・貴金屬 製品)



[圖 V-216]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寶石・貴金屬 製品)



[圖 V-217]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寶石・貴金屬 製品)



### 3. 交通稅

#### 가. 揮發油

揮發油에 대한 家口當 交通稅 負擔 平均은 1997년에 2,814원에서 1998년에는 3,827원으로 36.0% 정도 增加하였다. 所得階層別로는 모든 階層에서 稅負擔 水準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인 總所得의 減少 趨勢 속에서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의 實效稅負擔率은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1998년 동안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率이 1998년 1월, 5월 및 9월의 세 차례에 걸쳐 揮發油의 1리터당 交通稅率이 414원→454원→591원→691원으로 引上된 데 따른 것이다.

揮發油에 대한 所得階層別 交通稅 負擔의 構成比는 1997년과 1998년 이 서로 비슷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揮發油가 특성상 그 자체로서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乘用自動車의 燃料油로서 派生需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乘用自動車는 耐久消費財로서 단기간 내에는 보유대수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稅率 引上에 따라 價格이 變化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휘발유의 소비는 非彈力的이라는 점에도 기인한다. 즉, 揮發油의 경우에는 대부분 乘用自動車의 燃料油로서 소비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揮發油 자체의 價格 變動에도 영향을 받지만, 자동차 보유대수 및 운행밀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승용자동차의 보유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료유로서 또한 과생 수요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휘발유의 소비는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總所得에 대비한 揮發油의 實效稅負擔率은 소득수준에 별 관계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실효세부담률은 總所得에 비례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만 所得階層別로 總所得이 증가할수록 消費性向이 下落하기 때문에 總消費支出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은 所得

水準이 증가할수록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年齡別 稅負擔 分布패턴을 보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乘用自動車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인 20대 및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實效稅負擔率이 매우 낮다. 30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절대 세부담 수준이 대체로 일정하다. 반면에 總所得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은 年齡別 所得隔差로 인해 미소하나마 30대 가구에서 實效稅負擔率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 負擔 構造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絕對 稅負擔 水準이 크게 증가하였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동안 交通稅率의 인상이 거듭됨에 따라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 負擔構造가 보다 逆進的으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즉, 稅率 인상에 따라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 負擔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의 構造는 절대수준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稅負擔이 逆進的으로 바뀌지 않았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率의 인상과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 負擔의 逆進性 深化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絕對 稅負擔 水準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絕對稅負擔 水準이 增加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逆進性이 深化된 것처럼 느낄 뿐 사실상 揮發油에 대한 交通稅率의 인상과 상대적인 稅負擔의 逆進性과는 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表 V-63〉 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揮發油, 教育稅 包含)

(單位: 百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928	1,227	1,894	2,099	2,607	2,981	3,184	3,567	3,985	5,664	2,814
稅負擔額	98	1,031	1,733	2,346	2,762	3,383	4,064	4,385	5,037	5,506	8,010	3,827
	98A	896	1,507	2,040	2,403	2,942	3,535	3,814	4,381	4,789	6,967	3,328
總所得 對比	97	0.912	0.769	0.986	0.956	1.064	1.090	1.038	1.041	0.994	1.013	1.005
實效	98	1.565	1.414	1.510	1.499	1.611	1.708	1.635	1.635	1.503	1.511	1.562
稅負擔率	98A	1.362	1.230	1.313	1.304	1.401	1.486	1.422	1.422	1.307	1.314	1.359
總消費 對比	97	0.965	0.987	1.445	1.415	1.668	1.697	1.626	1.651	1.616	1.658	1.536
實效	98	1.136	1.685	2.013	2.191	2.387	2.609	2.682	2.602	2.517	2.602	2.366
稅負擔率	98A	0.988	1.466	1.751	1.906	2.076	2.269	2.333	2.263	2.189	2.264	2.058
稅負擔	97	3.30	4.36	6.73	7.47	9.24	10.60	11.33	12.68	14.17	20.12	100.0
構成比	98	2.69	4.53	6.12	7.22	8.84	10.62	11.47	13.17	14.38	20.96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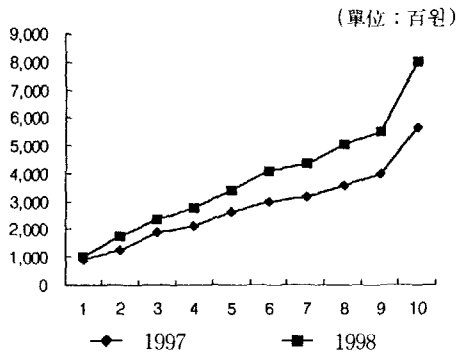
〈表 V-64〉 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揮發油, 教育稅 包含)

(單位: 百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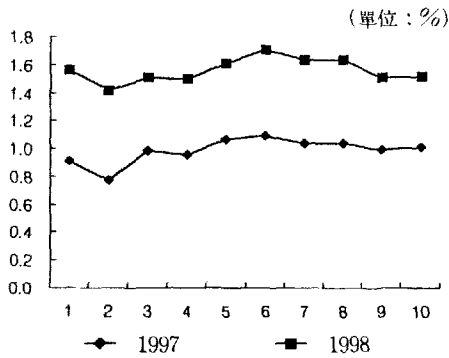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세 以上
平均	97	0	691	2,468	3,057	3,134	2,797	2,883	2,639	2,940	2,225
稅負擔額	98	794	1,039	2,655	4,113	4,102	4,186	4,262	3,506	4,278	2,464
	98A	691	904	2,309	3,578	3,568	3,641	3,707	3,049	3,721	2,143
總所得 對比	97	0.000	0.377	1.002	1.195	1.142	0.997	0.943	0.818	0.899	0.960
實效稅負擔率	98	1.174	0.710	1.380	1.761	1.716	1.572	1.552	1.270	1.484	1.355
	98A	1.022	0.618	1.200	1.532	1.492	1.368	1.350	1.105	1.291	1.179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578	1.659	1.948	1.806	1.495	1.380	1.218	1.374	1.335
實效稅負擔率	98	0.971	1.149	2.134	2.939	2.659	2.401	2.212	1.934	2.068	1.777
	98A	0.845	0.999	1.856	2.557	2.313	2.088	1.924	1.682	1.799	1.546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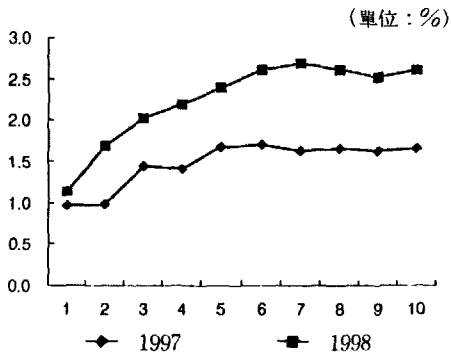
[圖 V-218] 所得階層別 稅負擔額(揮發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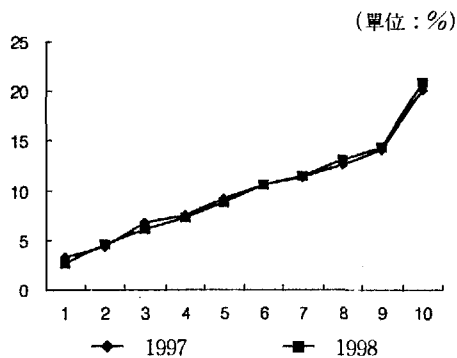
[圖 V-219]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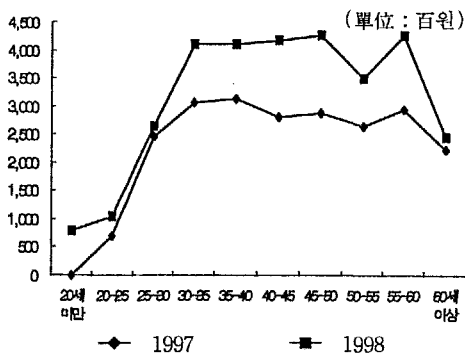
[圖 V-220]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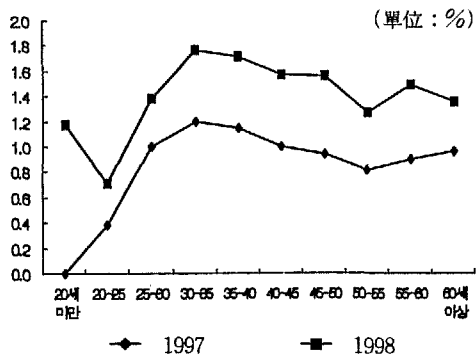
[圖 V-221] 稅負擔 構成比(揮發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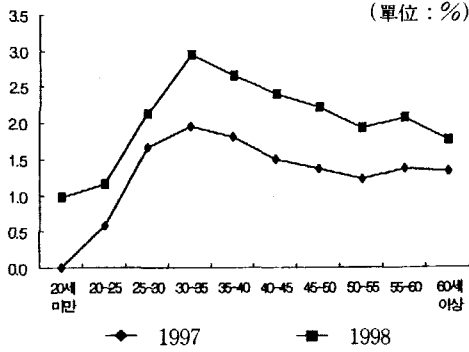
[圖 V-222] 年齡別 稅負擔額(揮發油)



[圖 V-223]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揮發油)



[圖 V-224]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휘발유)



### 나. 輕油

輕油에 대한 소비는 경유를 직접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가 소비한 直接消費 부분과, 大衆交通 手段이나 기타 産業用 燃料로 소비되는 間接消費 부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本項에서 분석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輕油의 경우에는 都市家計의 稅負擔 分析이 直接消費에만 국한되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輕油에 대한 交通稅率은 1988년 1월, 5월 및 9월의 세 차례에 걸쳐 1리터당 48원→85원→110원→160원으로 引上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말에 대비한 경유의 交通세율은 3배 이상의 수준으로 대폭 尙향조정되었다. 세율 인상으로 인해 輕油에 대한 交通稅의 絶對負擔 水準도 1만 1,436원(1997년)에서 2만 4,830원(1998년)으로 117% 정도 증가하였다.

輕油에 대한 消費支出 增加率은 稅負擔 增加率보다 낮다. 왜냐하면 1998년 輕油의 消費者價格에서 交通稅와 交通分析 教育稅의 점유비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비록 交通稅率이 引上되더라도 그에 따른 消費者價格의 상승률은 세율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이다<sup>12)</sup>.

輕油도 揮發油와 마찬가지로 모든 所得階層에서 稅負擔의 絕對水準이 대폭 增加하였다. [圖 V-225]에서 보듯이 絕對稅負擔 水準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稅負擔 曲線의 기울기도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다.

所得階層別로는 輕油에 대한 交通稅의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은, 總所得이 분위 구성원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고 예외적으로 總所得 수준이 크게 변화한 1분위를 제외하고는, 1997년과 1998년 모두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總消費支出에 對比한 1997년의 實效稅負擔率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해 1998년의 所得階層別 總消費支出 對比 實效稅負擔率은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交通稅 負擔이 미약하나마 다소 累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年齡別로는 1997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輕油에 대한 交通稅 負擔額이 완만하게 增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998년에는 30대 이상의 가구에서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經濟危機 이후 交通稅率 引上에 따라 低年齡層에서 輕油에 대한 消費가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30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유의 소비를 별로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소 하향안정화한 모습을 보였으며, 1998년에는 30~40대 가구에서 實效稅負擔率이 최고 수준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소 하락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해 總消費支出에 대비한 實效稅負擔率은 30대 초반에서 최고를 나타내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완만하게 下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2) 이는 從量稅 形態의 課稅體系를 가진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表 V-65〉所得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輕油, 教育稅 包含)

(單位: 圓,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97	5,342	4,997	8,378	9,394	10,584	10,871	11,886	14,664	14,950	23,292	11,436
稅負擔額	98	9,580	11,721	15,784	18,458	22,029	25,192	28,679	33,322	35,797	47,685	24,830
	98A	4,651	5,690	7,663	8,960	10,694	12,230	13,923	16,176	17,378	23,149	12,054
總所得 對比	97	0.052	0.031	0.044	0.043	0.043	0.040	0.039	0.043	0.037	0.042	0.041
實效	98	0.146	0.096	0.102	0.100	0.105	0.106	0.107	0.108	0.098	0.090	0.101
稅負擔率	98A	0.071	0.046	0.049	0.049	0.051	0.051	0.052	0.053	0.047	0.044	0.049
總消費 對比	97	0.056	0.040	0.064	0.063	0.068	0.062	0.061	0.068	0.061	0.068	0.062
實效	98	0.106	0.114	0.135	0.146	0.155	0.162	0.175	0.172	0.164	0.155	0.154
稅負擔率	98A	0.051	0.055	0.066	0.071	0.075	0.079	0.085	0.084	0.079	0.075	0.075
稅負擔	97	4.67	4.37	7.32	8.22	9.24	9.51	10.40	12.83	13.08	20.36	100.0
構成比	98	3.85	4.73	6.35	7.43	8.87	10.14	11.56	13.43	14.41	19.23	100.0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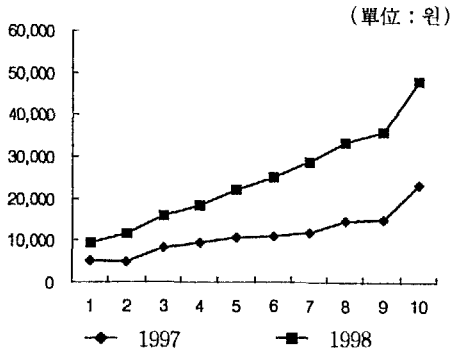
〈表 V-66〉年齡別 特別消費稅 負擔 分布(輕油, 教育稅 包含)

(單位: 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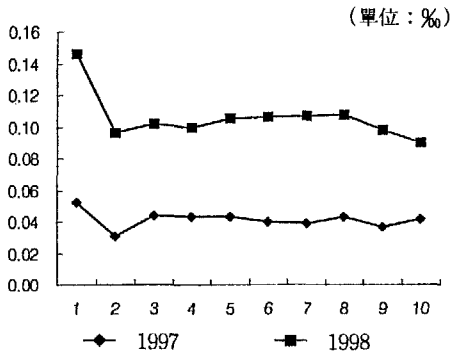
		20세 미만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세 以上
平均	97	0	4,170	8,607	12,238	10,899	11,305	12,221	13,463	12,703	9,660
稅負擔額	98	4,510	7,200	17,895	25,010	25,772	27,332	29,405	22,151	28,215	18,870
	98A	2,190	3,495	8,687	12,141	12,511	13,269	14,275	10,754	13,698	9,161
總所得 對比	97	0.000	0.023	0.035	0.048	0.040	0.040	0.040	0.042	0.039	0.042
實效稅負擔率	98	0.067	0.049	0.093	0.107	0.108	0.103	0.107	0.080	0.098	0.104
	98A	0.032	0.024	0.045	0.052	0.052	0.050	0.050	0.039	0.048	0.050
總消費支出 對比	97	0.000	0.035	0.058	0.078	0.063	0.060	0.059	0.062	0.059	0.058
實效稅負擔率	98	0.055	0.080	0.144	0.179	0.167	0.157	0.153	0.122	0.136	0.136
	98A	0.027	0.039	0.070	0.087	0.081	0.076	0.074	0.059	0.066	0.066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이고 98A는 199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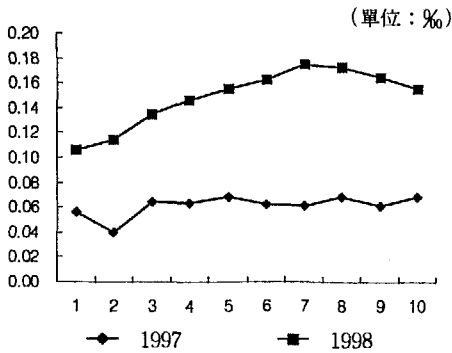
[圖 V-225] 所得階層別 稅負擔額(輕油)



[圖 V-226]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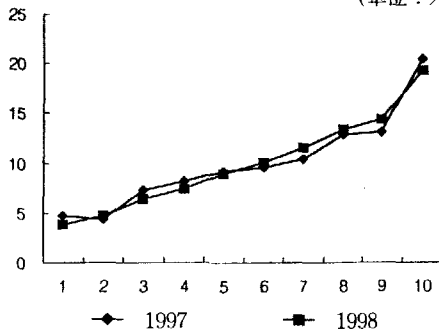


[圖 V-227]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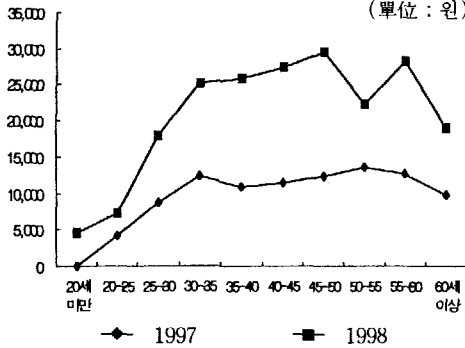
[圖 V-228] 稅負擔 構成比(輕油)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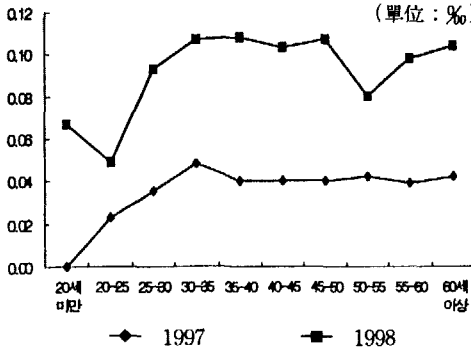
[圖 V-229] 年齡別 稅負擔額(輕油)

(單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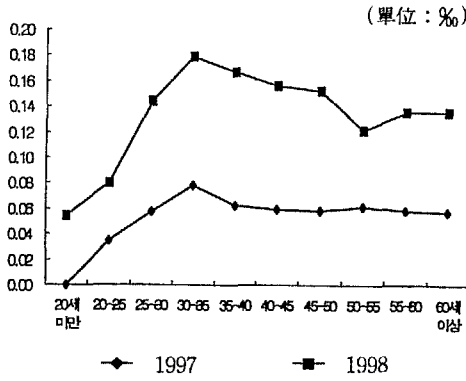


[圖 V-230] 年齡別 總所得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單位：%)



[圖 V-231] 年齡別 總消費 對比 實效稅負擔率(輕油)



## VI.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整備의 基本方向

本章에서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전후한 1997~1998년 기간 동안 所得 및 消費패턴의 變化와 경제위기 기간 동안 改編된 消費稅 制가 都市家計의 分配構造 및 稅負擔 構造에 미쳤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經濟危機라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再分配政策 수립에 있어 바람직한 改編方向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 1. 稅制改編의 基本方向

국민생활 측면에서 1998년의 경제위기 1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所得階層에 걸쳐 總所得 水準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消費支出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1997년말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高所得層보다 低所得層의 所得 減少率이 더 높아 所得의 分配構造가 惡化되면서 中產層과 庶民層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sup>1)</sup>. 消費支出 수준도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所得 減少率이 消費支出 減少率을 상회하여 오히려 消費性向은 상승하였다. 더욱이 失業率이 經濟危機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악화된 분배구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所得 및 消費패턴의 변화와, 構造調整 支援을 위해 稅制가 개편됨에

---

1) 全瑛俊 外(1999)에서는 所得階層別로 資産蓄積도 非對稱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所得隔差뿐만 아니라 富의 隔差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된다면 향후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악화된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자산축적 과정의 비대칭성과 분배구조의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기간을 좀더 길게 잡고 도시가계조사 자료 이외의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야 확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불가피하게 消費稅 負擔의 衡平性이 惡化되었다. 즉,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유보 및 利子·配當所得 源泉徵收稅率의 引上, 交通稅의 引上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稅負擔의 衡平性이 低下되었다. 다만 일부의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의 상향조정으로 衡平性 提高效果가 있었다. 그렇지만 절대규모 측면에서 형평 제고효과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稅負擔 構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1998년 동안 稅收與件이 크게 劣惡하였고, 부실채권 정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소 공평성을 희생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분배구조 및 세부담의 형평성이 악화된 근본원인은 1998년 동안의 稅制改編보다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所得·消費패턴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所得·消費패턴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패턴이 회복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分配構造 改善 및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分配構造 改善 및 衡平 提高를 촉진하기 위한 稅制改編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도달하여야만 본격적으로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를 위한 稅制改編에 착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것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통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직접적으로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조세를 통한 分配 및 稅負擔 構造 改善을 위해서는 세원간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조세를 통한 再分配政策은 所得課稅와 財産課稅를 중심으로 累進課稅, 또는 高所得層 및 高資產家에 대한 課稅를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소 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비세 부분에서도

세계개편을 통해 稅負擔의 衡平을 提高할 수 있다. 衡平 제고를 위한 개편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消費稅의 경우에는 衡平性 改善과 함께 財政 健全化의 役割도 부분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財政 健全化를 위해서는 增稅가 필요할 수 있다. 필요시 增稅는 비교적 경기에 부담이 적으면서 環境汚染, 交通混雜 등 外部不經濟를 縮小하고 國民保健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하여 우선적·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稅 輕減 또는 衡平 제고를 목적으로 勤勞所得稅制가 改編되었다. 주요 개편내용은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확대, 비용공제적 성격을 지니는 공제항목(예: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에 대한 공제 한도 상향조정,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등이 골자이다.

勤勞所得稅制의 改編은 中產層 살리기와 庶民保護를 표방하였으나 稅 輕減의 惠澤이 課稅者에게만 국한되고 면세자인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成明宰(1997A)와 成明宰·全瑛俊(1998)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전 시기인 1995년 현재 勤勞所得稅 課稅者의 비율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절반 정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경감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상위 50% 정도의 납세자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세 경감 혜택이 저소득층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이후 크게 타격을 받은 계층에 대한 지원, 즉 中產層 되살리기와 庶民保護 政策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勤勞所得稅 輕減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特別消費稅의 과세목적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奢侈稅로의 機能을 強化하는 것과, 環境汚染, 交通混雜 등 外部不經濟를 縮小하기 위한 市場의 失敗 矯正的 稅制로서 일신하면서 生活必需品 등을 課稅對象으로부터 대폭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分配構造 改善 및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 提高를 위해 소비세 개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세 경감은 면세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나 最低所得層도 생활필수품을 소비하는 만큼 생활필수품에 대한 特別消費稅 輕減은 最低所得層에까지 稅 輕減 惠澤이 돌아간다. 둘째, 生活必需品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감은 근로소득세 경감의 경우보다 稅收 減少 規模가 작다. 반면에 中產層 및 低所得層의 稅 輕減 惠澤은 근로소득세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경제규모와 소비패턴 등을 고려할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稅負擔의 逆進性을 深化시키므로 非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경제위기와 관련 없이도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이라고 하더라도 주류나 담배와 같이 세부담이 매우 역진적인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高率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稅負擔의 衡平

제한적이거나 소비세 개편을 통해 衡平性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生活必需品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稅率을 引下하거나 또는 中·長期的으로 非課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景氣回復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소비가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소득증가율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평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衡平性 提高 效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편이 요청된다. 다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율 인하나 비과세시에는 稅收가 減少한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추가적인 赤字의 擴大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형평 제고를 위한 특별소비세 개편시에는 財政與件과 稅收 彈力性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消費課稅의 改編을 통한 衡平性 提高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奢侈品에 대한 課稅 強化와 生活必需品에 대한 稅 輕減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奢侈品에 대한 課稅 強化는 기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가운데 사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세율인상과, 사치재에 대한 신규과세대상 追加發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 과세대상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가운데 사치품에 해당되는 품목 중 상당수가 이미 세율수준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세율 인상이 어렵고, 세수규모도 매우 낮아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衡平性 提高 效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奢侈品을 새로이 발굴하여 과세하는 문제도 용이하지 않다. 고가의 대리석 등 고급건축자재를 예로 들면, 고급주택 건설시에 이들 자재가 많이 사용되므로 特別消費稅를 課稅하는 데 있어 논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衡平性 提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품목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과세하더라도 세수규모는 家電製品이나 食飲料品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세수규모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치품을 대상으로 신규과세대상을 발굴하더라도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형평성 제고효과가 작을 것이며 세수보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컴퓨터나 이동통신 기기 등도 신규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情報通信 分野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품목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特別消費稅를 과세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제품을 구입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었던 반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대변되는 신규구입자는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세부담의 형평 제고를 위한 特別消費稅 改編에 있어서는 稅負擔의 逆進度, 消費의 大衆化 정도, 主消費階層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조정 및 세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치세로써 특별소비세의 형평 제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신규 과세대상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 마땅히 과세대상을 새로이 발굴할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개편을 통한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生活必需品에 대한 非課稅 方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生活必需品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輕減을 통한 형평성 제고효과가 큰 품목은 대체로 食飲料品과 家電製品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食飲料品의 경우에는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所得階層別 稅負擔의 絶對水準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特別消費稅를 輕減해주면 低所得層과 高所得層의 구분 없이 절대액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규모의 稅 輕減 惠澤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低所得層의 實效稅負擔率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변화율이 미미할 것이다. 특히 清涼飲料·嗜好飲料, 설탕 등의 식음료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稅收 確保 이외에는 課稅의 實益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家電製品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稅負擔이 逆進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成明宰(1993, 1996)의 연구에서 1991년과 1994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세 부담분포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家電製品에 대한 消費支出 構造가 所得階層別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종류별로 1대 정도씩의 가전제품을 購入·保有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후 家電製品에 대한 需要가 점차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1가구 2대 이상을 수요하거나 大型·高價製品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그러

한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家電製品에 대한 고소득층의 消費支出(特別消費稅負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經濟危機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불요불급한 수요로 볼 수 있는 1가구 2대 이상의 가전제품 및 高價·超大型 製品에 대한 수요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한 것을 볼 때 그러한 趨勢的 變化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家電製品에 대한 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高所得層 위주로 特別消費稅를 운용하면 稅負擔의 衡平提高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低所得層의 경우에는 고소득층과 달리 여전히 생활필수품으로서 대부분 中·低價의 가전제품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衡平性 提高를 위해 特別消費稅의 輕減이 필요하다.

두 가지 상반된 소비패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家電製品에 대한 課稅方法을 현행 체계에서 超過金額課稅制度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품목별로 일정 수준에서 基準金額을 설정하고 제조장 반출가격이 基準金額을 초과하는 제품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基準金額 超過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生活必需品로 소비되는 中·低價製品에 대해서는 사실상 特別消費稅가 非課稅된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高價製品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득층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特別消費稅가 과세되어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을 提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超過金額課稅制度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美國의 奢侈稅의 경우 飛行機, 自動車, 보트, 寶石, 毛皮製品에 대해 우리나라의 超過金額課稅制度와 유사한 형태의 消費稅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家電製品에 대해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sup>2)</sup>. 그렇지만 초과금액과세제도를 이용하

2) 韓國租稅研究院(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면 행정적으로 징세비용이 증가하며, 적정 기준금액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설정 문제는 정책적 판단 또는 정치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特別消費稅 改編을 통해 衡平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生活必需品에 대한 課稅調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부차적으로 사치품에 대한 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市場의 失敗 矯正

特別消費稅는 장기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치품을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과, 交通混雜이나 環境汚染 등 外部不經濟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과세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향후에는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패턴이 더욱 高度化·大衆化되면서 사치품의 범위가 축소될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을 外部不經濟 縮小에 特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外部不經濟를 유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石油類를 비롯한 대다수의 에너지원,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집약된다.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外部不經濟 縮小을 위해 시급한 개편은 石油類에 대한 소비세 과세문제이다. 현재 석유류와 관련한 消費稅 課稅體系의 問題點은, 과세대상 유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현재 特別消費稅가 과세되고 있는 유종간에도 적정 세율에 미달하거나 相對稅率 隔差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 4. 財政健全化

1997년말의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세수여건이 급속히 열악해졌으며, 대량실업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구조조정 비용 충당을 위해 재정지출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단기간 내에 GDP의 4~5%에 이르게 되는 등 재정적자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향후에도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매우 느리게 된다면 열악한 稅收與件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반면에 재정지출 수요는 계속 증대되어 財政赤字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增稅가 불가피하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外部不經濟 縮小 및 國民保健衛生 向上을 도모하면서 稅率 引上의 必要性이 있는 酒類, 담배, 燈油, 輕油, 重油 등을 대상으로 경기부담이 작은 순서대로 增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特別消費稅 課稅 整備問題에 대해 살펴본다. 生活必需品를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으로부터 제외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稅收가 減少한다. 더욱이 食飲料品뿐만 아니라 家電製品의 경우에 中·低價 製品을 사실상 비과세하고 고가 또는 에너지 다소비품목 등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과세하더라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特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을 개선하고, 中產層 및 庶民層에 대한 稅負擔을 집중적으로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별소비세 개편에 따른 稅收 減少는 곧 재정 건전성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財政赤字가 매우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中·長期的으로 均衡財政 回復 및 負債 償還이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食飲料品이나 家電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를 改編하더라도 代替稅源을 마련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

代替稅源 對象은 크게 石油類를 포함한 에너지원 전반과, 사행성이 높은 품목 등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에는 대체세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라운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 후자의 한 예로서는 競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競輪場 入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燈油, 輕油, 重油에 대한 個別消費稅의 課稅 強化를 통해 環境汚染을 抑制하고 炭素稅 등 環境稅 導入에 대한 國際的 壓力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輕油는 199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낮아 外部不經濟 減縮效果가 제한적이고 휘발유와의 상대가격 격차도 크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光熱費 支出規模가 증가한다는 점과 中·長年層이 다른 年齡層에 비해 高所得者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暖房油(또는 燈油)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을 인상하면 衡平性 提高 效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Ⅶ.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및 稅率體系 整備方案

본장에서는 特別消費稅 주요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과세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經濟危機에 따라 악화된 分配構造를 改善하기 위해 特別消費稅 측면에서 衡平性を 提高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많은 피해를 입은 中產層과 庶民層을 保護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가운데 석유류의 경우에는 세수비중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環境稅 및 混雜稅 등과 같이 외부불경제 시정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만 논의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석유류에 대해서는 외부불경제 축소와 함께, 여타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초래되는 재정압박 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비단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은 변화된 所得 및 消費패턴에 따라 特別消費稅 體系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耐久消費財(家電製品 中心)에 대한 特別消費稅 改編方案

본절에서는 家電製品을 중심으로 生活必需品으로 볼 수 있는 耐久消費財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改編方案에 대해 살펴본다.

## 가. 改編方案

家電製品을 비롯한 주요 耐久消費財 가운데 生活必需品에 대한 특별 소비세 개편문제는 稅負擔의 衡平性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주요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은 크게 稅率 引下, 容量別 課稅 差等, 超過金額課稅制度로의 轉換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위의 방안 가운데 어떠한 방안도 완전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特別消費稅 改編에 대한 논의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현행 세율수준(대부분 15%)이 높고 낮음에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는 生活必需品화된 품목 자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없다. 물론 세율의 인하로 인해 세부담의 역진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中·低價製品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생되는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容量別 課稅差等(또는 稅率 差等化) 方案은 지난 1994년 특별소비세 개편시에 資源配分の 歪曲 및 衡平性 沮害 문제로 인해 단일용량으로 통일된 바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기준용량을 규정함에 따라 과세기준이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어 행정상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용량별로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產業 및 資源配分の 歪曲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비록 中·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저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용량이 기준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용량이 기준용량에 미달하더라도 신기술 적용 및 고급 사양이 부가되어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고가제품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

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超過金額課稅制度로 轉換하면 가격만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中·低所得層이 많이 소비하는 中·低價製品은 사실상 非課稅되거나 稅負擔이 크게 輕減된다. 반면에 高所得層이 주로 소비하는 高價·大型製品의 경우에는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적게 경감된다. 따라서 超過金額課稅制度를 도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 경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결합생산물 등과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생산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高價製品과 低價製品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中價製品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합생산물에 대해 각각의 품목에 대한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결합생산물에 대한 기준금액으로 설정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VCR에 대한 기준금액을 30만원, TV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VCR·TV 겸용 제품에 대해 기준금액을 80만원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탁기와 건조기의 기준금액을 각각 30만원으로 설정한다면 양자의 결합생산물에 대해서는 6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면 된다. 오디오의 경우에는 좀더 문제가 복잡한데, 각 관련 부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10만원씩으로 설정한다면, 앰플리파이어, 씨디교환기(CD changer), 튜너(tuner), 스피커(2개 1세트), 테이프레코더(tape recorder) 등으로 組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품목 내 생산외국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진정한 의미에서 高級·高價製品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일부 왜곡현상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초과금액과세제도 전환시에 예상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과금액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해 우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家電製品을 위주로 한 주요 耐久消費財와 관련한 特別消費稅 改編에 있어서는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적용하되 기준금액은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로 한다.

#### 나. 期待效果

稅前 製造場 搬出價格을 기준으로 超過金額課稅制度의 기준금액을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설정하면 稅收效果는 다음의 <表 Ⅶ-1>과 같다.

다만 개별 품목에 대한 수요분석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稅收效果는 수요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잠정적으로 추정하였다.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가격 인하로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요증대효과를 고려하면 <表 Ⅶ-1>의 추정치보다 세수 감소 효과가 다소 작아질 것이다. 그런데 수요량 증가효과는 제조사들이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부분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인하하느냐의 여부에도 의존하므로 특별소비세 경감분 전액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럽다는 점에서 수요효과를 감안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세수효과는 1997~1998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만큼 2000년 또는 그 이후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에 의한 수요 변화분에 의해서도 세수 감소효과는 <表 Ⅶ-1>의 추정치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空氣淨化器, 電子렌지, 가스렌지, 食器洗滌器, 眞空清掃機, VCR 등과 같이 대부분의 가격수준이 낮은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이 基準金額에 미달하여 稅收가 크게 減少하고 극히 일부만이 과세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기준금액을 70만원으로 설정하면 거의 대부분의 해당 품목이 稅前 出庫價格 基準金額에 미달하게 되어 사실상 비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전 출고가격이 70만원 정도라면 실제의 소비자가격은 100만원 내외 정도이다. 만약 초과금

액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이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소비자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제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特別消費稅가 非課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대부분 비과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낮은 수준에서 설정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이 비과세되므로, 전향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洗濯機, 캠코더 등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低價製品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중간 정도의 價格帶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에서는 기준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세수효과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준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稅收 減少效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곧 이들 품목에 대한 需要者層 또는 가격대별 제품 구성이 넓게 擴散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表 V-19>와 <表 V-27>에서 보듯이 세탁기와 캠코더의 경우에는 계층별 特別消費稅 負擔이 累進的이라는 점에서, 基準金額을 설정하여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운용하면 中·低所得層이 주로 소비하는 中價製品은 비과세되고 高所得層이 주로 소비하는 高價·大型製品만을 선택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형평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洗濯機와 같이 주부들의 과중한 가사노동을 크게 덜어주는 품목의 경우에는, 여성 遊休勞動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大容量製品을 싸게 공급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洗濯機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非課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表 VII-1〉 主要 耐久消費財에 대한 超過金額課稅制度  
適用時의 稅收效果

(單位 : %)

기준금액(세전 반출가격)	30만원		50만원		70만원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냉장고	-50.7	-42.0	-75.1	-69.7	-85.5	-80.2
공기정화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자렌지	-93.2	-97.0	-98.8	-100.0	-100.0	-100.0
가스렌지	-92.7	-99.3	-97.6	-100.0	-99.5	-100.0
정수기	-32.0	-31.9	-49.3	-47.3	-64.5	-61.0
식기세척기	-94.2	-51.3	-100.0	-67.3	-100.0	-82.7
세탁기	-69.0	-71.0	-92.5	-92.1	-96.4	-97.2
진공청소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컬러TV	-62.2	-68.3	-82.1	-90.7	-90.9	-98.3
오디오	-70.1	-62.2	-88.6	-76.2	-94.2	-83.6
컴퓨터	-55.4	-40.0	-81.3	-66.0	-90.4	-83.8
VCR	-98.1	-87.4	-100.0	-96.5	-100.0	-98.4
에어컨	-36.4	-44.2	-56.8	-59.2	-81.9	-77.2

註 : 과세체계 조정시의 직접 세수효과만을 고려한 것으로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량 증가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임. 따라서 수요량 증가효과 감안시 세수 감소효과는 위의 수치보다 다소 작아질 수 있음.

冷蔵庫, 컬러TV, 오디오 등과 같이 低價製品으로부터 超高價製品에 이르기까지 價格帶가 매우 넓은 품목의 경우에도 基準金額을 조정함에 따라 세수효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 외견상으로는 세탁기나 컴퓨터의 경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이 변함에 따라 稅收效果도 크게 변하지만, 超高價製品의 比重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격대가 매우 넓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시장이 가격대별로 구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를테면 컬러TV라고 하더라도 中·低價 또는 中·小型製

品은 대부분 모든 계층에서 수요하는 반면, 超高價 또는 大型製品은 일부의 高所得層에서만 주로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나 용량에 따라 市場이 구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소비품에 해당되는 中·低價 또는 中·小型製品은 비록 품목분류상 高價·大型製品과 동일 품목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소비계층이 구별되므로 별개의 품목으로 보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衡平提高에 효과적인 것이다.

다만 품목의 특성 및 소비패턴의 고도화·대형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준금액을 낮게 책정한다면 세부담의 형평 제고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中·低所得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 과세대상에 잔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淨水器와 에어컨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高價品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하여도 세수 감소효과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당히 작다. 이들 제품의 보급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서 아직 대중화가 덜 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 기준금액을 어떤 수준에서 설정하느냐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더라도 稅負擔이 累進的인 것은 <表 V-15>와 <表 V-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물론 이들 품목의 경우에도 低價로서 中產層 및 低所得層이 소비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그러므로 淨水器와 에어컨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형평 제고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에는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만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매년 여름 전력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순간적으로 에너지 초과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전력 공급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가운데 에어컨이 한몫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따라서 에어컨의 경우에는 稅負擔의 衡平性 基調 堅持와, 에너지節約 유도 차원에서 特別消費稅를 지속적으로 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財政健全化 및 外部不經濟 是正을 위한 石油類 課稅의 改編方向

### 가. 背景

特別消費稅(交通稅 포함)의 課稅目的을,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를 위한 奢侈稅와, 外部不經濟(環境汚染, 交通混雜 등) 縮小을 위한 市場의 失敗 矯正의 租稅(Pigouvian tax)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밖에도 경제위기 이후 惡化된 分配構造를 改善하기 위해 第1節 및 第2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家電製品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非課稅하면 稅收가 減少한다. 세수 감소와 관련하여 세계개편에 따른 稅收補填 및 代替稅源 開發 및 外部不經濟 縮小의 일환으로서, 석유류 관련 特別消費稅 體系 정비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GDP 대비 財政赤字 比率이 改善되고 있으나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財政赤字를 效率的으로 管理·縮小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대우그룹 등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에는 추가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크게 열악해진 사회후생 증진을 위해 형평 제고와 분배구조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긴급한 재정수요 팽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稅收補填 또는 代替稅源 開發이 필요하다. 이는 均衡財政 回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稅收補填의 方法은 크게 附加價値稅率을 調整하는 방안과, 石油類 등을 중심으로 代替稅源을 發掘 또는 擴大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前者는 물가 등 거시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석유류의 경우에는 環境汚染 低減 및 交通混雜 縮小의 필요성이 크고, 환경라운드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과세 정도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現況

1999년 11월 현재 揮發油의 1리터당 소비자가격은 1,270원 수준으로 적정 가격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그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당분간 추가적인 조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燈油, 輕油, 重油, 石油가스 등의 경우에는 적정 가격수준과 상대가격 구조를 감안할 때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의 稅率調整을 통해 가격을 적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1998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輕油의 交通稅率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격 및 세율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表 Ⅶ-2>에서 보듯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등의 경우에만 우리나라보다 消費者價格이 다소 낮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消費稅 比重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輕油와 揮發油間의 相對價格 隔差도 거듭된 세율조정으로 종전보다 縮小되기는 하였으나, 絕對價格 隔差는 오히려 擴大되어 資源配分の 歪曲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輕油에 비해 高級油種이면서 소비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燈油의 경우에는 경유와의 가격격차가 확대될 경우 소비의 대체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등유는 기술적으로 경유보다 고급유종으로서 경유와 긴밀한 대체관계가 있으며, 더욱이 소비자가격 또한 경유보다 낮아 두 유종간에는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輕油에 대한 交通稅率을 調整하는 경우에는 燈油에 대한 特別消費稅率도 함께 調整하여 양자간의 가격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重油는 여타 석유류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계수가 높다. 따라서 環境汚染 低減을 위해 特別消費稅 과세를 통한 중유의 消費 抑制

또는 中·長期的인 淸淨燃料로의 代替가 필요하다. 현재 重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소비세도 과세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중유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重油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 VII-2〉 輸送用 輕油의 價格 및 稅金比重의 國際比較

(單位 : 달러 / 리터, %)

	상업용				비상업용			
	세 전 가격	세 금	소비자 가격	세 금 비중	세 전 가격	세 금	소비자 가격	세 금 비중
한국	0.226	0.191	0.417	45.8	0.226	0.191	0.417	45.8
호주	0.197	0.071	☆0.268	☆26.5	0.228	0.312	0.540	57.8
캐나다	0.248	0.154	☆0.402	☆38.4	n.a.	n.a.	n.a.	n.a.
덴마크	0.342	0.247	0.589	☆41.9	0.281	0.504	0.785	64.2
핀란드	0.281	0.320	0.601	53.2	0.281	0.452	0.733	61.7
프랑스	0.226	0.403	0.629	64.0	0.227	0.532	0.759	70.1
독일	0.264	0.358	0.622	57.5	0.264	0.451	0.715	63.1
그리스	0.224	0.277	0.500	55.3	0.224	0.366	0.590	62.1
이탈리아	0.271	0.438	0.709	61.8	0.270	0.576	0.846	68.1
일본	0.245	0.276	0.521	52.9	0.313	0.279	0.592	47.2
멕시코	0.181	0.113	☆0.294	☆38.6	0.264	0.040	☆0.304	☆13.0
네덜란드	0.285	0.371	0.656	56.6	0.285	0.486	0.771	63.0
뉴질랜드	0.282	0.003	☆0.285	☆ 0.9	0.283	0.038	☆0.321	☆11.9
스웨덴	0.354	0.345	0.699	49.4	0.354	0.520	0.874	59.5
터키	0.123	0.195	☆0.318	61.2	n.a.	n.a.	n.a.	n.a.
영국	0.239	0.632	0.871	72.6	0.239	0.784	1.023	76.6
미국	n.a.	n.a.	n.a.	n.a.	0.197	0.116	☆0.313	☆37.1

註 : 1. 한국(1999년)과 호주(1995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997년말 기준임.

2. 한국은 \$1=1,200원으로, 소비자가격은 500원을 기준으로 역산한 것임.

3. ☆ 표는 우리나라보다 소비자가격 또는 세금비중이 낮은 국가임.

資料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Fourth Quarter*, Paris: OECD, 1998.

1998년(1997년) 현재 LPG 총소비량은 6,799만 2천배럴(7,162만 3천배럴)인데, 이 가운데 부탄의 소비량은 2,485만배럴(2,245만 5천배럴)로 LPG 소비량의 36.5%(31.4%) 수준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부탄의 소비비중은 76.8%(81.2%)이고, 나머지는 산업, 가정상업, 공공 기타 부문에 각각 22.0%, 1.1%, 0.04%(15.3%, 3.5%, 0.02%)씩 소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문에서 절대소비량이 축소되고 있고 수송부문은 절대수준과 점유비 모두 크게 확대되고 있어, 부탄은 대부분 수송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LPG 중 부탄은 택시, 승합차 일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등 대부분 수송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다. 수송용 연료로서 부탄은 휘발유와 상당히 큰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관계가 높은 휘발유와의 價格隔差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부탄의 가격이 매우 낮아 양자간의 소비자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승합자동차 및 레저용 승용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LPG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表 Ⅶ-3〉 참조).

1998년말 현재 LPG 차량의 등록대수는 49만대 수준이었으나 불과 5개월이 경과한 1999년 5월말 현재 약 59만대로 19.5% 증가하였다. 최근 택시의 등록대수도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택시 이외의 LPG 차량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LPG 차량이 다소 우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LPG 전용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휘발유 엔진을 개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環境汚染 低減效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교통혼잡 측면에서는 연료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양자간에 전혀 구분이 안 된다. 따라서 混雜走行稅 및 環境稅 측면에서 LPG에 대해서도 휘발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소비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

〈表 VII-3〉 LPG(부탄) 車輛 登錄臺數 變化推移

(單位:臺)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 5월말
LPG 차량 등록대수	346,760	400,977	492,541	588,475
택시 등록대수	226,471	235,894	242,190	n.a.

資料: 自動車工業協會.

#### 다. 石油類 課稅 改編時的 考慮事項과 改編方向

향후의 특별소비세(교통세 포함)의 정책과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奢侈稅와 外部不經濟 矯正的 租稅로서의 과세목적 및 기능 확립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에는 경제가 더욱 성장하면서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기능은 後者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外部不經濟의 대표적인 예로 交通혼잡과 環境오염을 꼽을 수 있다. 석유류 가운데 交通혼잡 문제와 관련해서는 輸送用 燃料가 관련이 깊으며 環境汚染과 관련해서는, 유종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관련이 깊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협약이나 장차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環境라운드 등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으며, 인류의 생존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自意·他意에 관계없이 環境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그 가운데 조세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交通混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국지적으로 交通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통행료 징수나 자동차 운행비용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環境汚染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環境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오염원 자체의 소비억제를 통한 오

염물질 배출억제 또는 환경기술개발을 통한 오염원 단위당 환경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낮추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제약이 크고, 비용도 매우 크게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전자에 치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交通混雜 緩和와 環境汚染 低減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석유류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억제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特別消費稅를 消費抑制的 租稅(sumptuary tax)로서 기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와 같이 개편할 경우에는 유종별로 외부불경제 기여도가 상이하고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각 유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輸送用 燃料의 경우에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두 가지 측면에서 외부불경제 축소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煖房用 燃料 등의 경우에는 주로 環境汚染 측면에서 외부불경제 축소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반드시 세부담 수준이 더 높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체로 수송용 연료의 경우에는 여타 유종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계수가 낮기 때문에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전자에 대한 환경세율을 후자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송용 연료의 경우에는 단순히 최종소비재료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大衆交通手段이나 貨物輸送 등의 부문에서 중간투입재의 성격을 지니며 소비되는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지원 및 물류비용 증가 억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障礙人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보유·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조정에 따라 그러한 측면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석유류 전반에 대한 과세개편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外部不經濟 縮小와 관련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消費稅 課稅 改編의 기본방향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및 세율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외국과의 가격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적정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건 변화에 따른 미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소비세 과세의 기본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輕油와 燈油의 特別消費稅率(交通稅率)은 각각 1리터당 160원 및 60원으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가격수준 또한 상당히 낮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율 인상을 통한 가격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유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수단과 화물 운송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漸進的·段階的 稅率調整을 통한 價格의 上向調整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輕油에 대한 稅率을 上向調整하면 揮發油에 대한 相對價格 및 絕對價格 隔差 縮小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가격 격차 축소를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輕油에 대한 交通稅率을 지속적으로 上向調整하는 것이 필요하다. 燈油에 대한 稅率調整으로 輕油와의 가격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면 두 유종간에 非正常的인 消費代替를 防止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重油에 대해서도 環境汚染 物質排出係數가 여타 유종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현재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어, 外部不經濟 縮小을 위한 特別消費稅의 課稅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 또는 환경세의 일환으로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重油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課稅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세율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본연구가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 제안하기는 어려우나 환경오염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中·長期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증유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의 결과로서 소비가 감소하면 供給過剩 問題가 발생하여 剩餘分에 대한 처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中·장기적으로 重油에 대한 代替 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淸淨燃料 가운데 代替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지원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증유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추이와 및 대체 촉진을 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液化)石油가스(LPG) 중 부탄은 대부분 수송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LPG 차량의 급증에 따라 수송용 연료로서의 소비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부탄은 휘발유나 경우에 대한 긴밀한 대체재로서 소비저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휘발유 등 대체연료와의 價格隔差가 매우 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混雜交通稅에 대한 과세를 強化한다는 차원에서 부탄에 대한 稅率 引上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점진적·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자가용으로 수요되는 LPG 차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으나 사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연료로 소비되는 경우에는 租稅抵抗이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응기간을 준다는 측

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탄은 대부분 LPG 택시 등의 연료로 소비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價格彈力性이 매우 낮다. 더욱이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휘발유와의 가격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탄의 경우 세율을 다소 인상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면 LPG 차량 급증현상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휘발유와의 가격격차가 가시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휘발유에서 LPG로의 소비 대체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부탄은 대부분 輸送用으로 소비되고 산업용 수요는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송용 연료에 대한 혼잡교통세 및 환경세로서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여타 부문에 미치는 부작용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프로판가스도 기술적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탄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상하면 프로판가스로 소비가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반용 프로판가스의 소비자가격은 부탄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가격의 역전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한 프로판가스로의 대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其他 改編方向

家電製品과 石油類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는 食飲料品, 乘用自動車,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 기타 사행성 오락기구, 모피, 고급가구, 寶石·貴金屬 제품 등이 남는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韓·美 自動車 協商에 따라 2005년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여타 품목에 비해 개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현 시점에서 별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장소나 과세유흥장소 등의 경우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스키장 등과 같이 대중스포츠화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특별소비세 폐지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寶石·貴金屬, 毛皮製品, 射倖性 娛樂機具 등에 대해서도 과세의 실효성이 낮아 특별소비세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실익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계속 特別消費稅를 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전한 국민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행성 오락기구 등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차원보다는 生産·流通管理 측면에서 特別消費稅를 지속적으로 課稅할 필요성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食飲料品の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활필수품으로서 소비가 소득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淸涼·嗜好飲料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소비비중이 매우 높은 등 特別消費稅 과세에 따른 稅負擔의 逆進性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개편이 필요하다.

식음료품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비해 절대 세부담액이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에 가전제품은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평균 세부담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 또는 세율을 인하해주는 경우보다 食飲料品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형평성 제고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食飲料品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食飲料品이라고 하더라도 녹용이나 해구신 등 일부의 자양강장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여타의 食飲料品과 달리 이들 제품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소비비중이 매우 높고 中·低所得層의 消費比重이 매우 미미하여 稅負擔이 매우 累進

的일 뿐만 아니라 生活必需品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社會·경제적으로도 소비를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양강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食飲料品(설탕, 커피, 清涼飲料, 嗜好飲料 등)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면 <表 Ⅶ-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7년과 1998년의 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에 예상되는 가구당 평균 세부담 경감액을 산출해보면, 각각 4,300원과 4,900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最低所得層(1분위)의 경우에는 가구당 3,000~3,300원 정도 特別消費稅 負擔이 경감되고, 最高所得層(10분위)의 경우에는 가구당 5,300~6,000원 정도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세부담이 경감되는 절대액이 커지는 등 저소득층의 세 경감 규모가 최고소득층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보지만, 所得水準에 대비한 상대적인 세부담 경감효과는 低所得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衡平 提高에 매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勤勞所得稅를 輕減해주는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근로소득세 경감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효과가 사실상 전무한 반면, 食飲料品에 대한 特別消費稅 非課稅時에는 最低所得層에까지 稅 輕減 惠澤이 擴散된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總所得을 기준으로 稅 輕減率을 추정해보면 1997년의 경우 1분위가 10분위에 비해 약 세 배 정도 더 큰 稅負擔 輕減 惠澤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수준이 네 배를 다소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양강장품을 제외하고) 食飲料品에 대한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면 稅負擔의 衡平 提高 效果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분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개편하면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자양강장품(또는 건강식품) 하나만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食飲料品에 대한 特

別消費稅 개편 후의 세부담은 현재의 자양강장품에 대한 세부담 분포와 동일하게 된다. 해구신이나 녹용 등의 자양강장품에 대한 特別消費稅 負擔이 逆進的이 아니라는 점과, 社會·經濟的으로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양강장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食飲料品은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第3種에 해당된다. 자양강장품을 제외하고 여타의 食飲料品을 모두 비과세하면 최대 약 2천억원 정도 特別消費稅 稅收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特別消費稅分 教育稅와 附加價値稅를 포함하면 최대 약 3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表 II-3〉 참조).

〈表 VII-4〉 食飲料品 非課稅時(健康食品 除外) 特消費 負擔 輕減 分布  
(教育稅 包含)

(單位: 원,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平均 輕減額 97	3,046	3,815	3,688	4,345	4,407	4,606	4,551	4,571	4,522	5,297	4,284
98	3,319	4,365	4,527	4,518	4,950	5,035	5,382	7,563	5,162	5,953	4,889
總所得 對比 97	0.300	0.239	0.192	0.198	0.180	0.168	0.148	0.134	0.113	0.095	0.153
稅輕減率 98	0.504	0.356	0.292	0.245	0.236	0.212	0.200	0.184	0.141	0.112	0.200
總消費 對比 97	0.317	0.306	0.281	0.292	0.182	0.262	0.232	0.212	0.183	0.155	0.234
稅輕減率 98	0.366	0.425	0.389	0.358	0.350	0.324	0.330	0.294	0.236	0.193	0.302

註: 97과 98은 각각 1997년, 1998년 수치임.

## VIII. 結論 및 政策示唆點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物品稅 등을 대체하면서 1977년 7월 도입되었다. 특별소비세 도입 이래 가장 중요한 과세목적은 稅收 確保와 附加價値稅 負擔의 逆進性 補完 또는 稅負擔의 衡平 提高였다. 이후 高度成長의 결과로 環境汚染이나 交通混雜과 같은 外部不經濟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최근에는 外部不經濟에 따른 '市場의 失敗'를 교정하는 측면으로 特別消費稅의 機能 再編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이 稅負擔의 衡平 提高와 外部不經濟 縮小의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파생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分配構造 改善이 제일목표로 제기되고 있다.

1997년말 金融 및 外換危機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分配構造의 不均衡이 深化되고 所得 및 消費패턴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8년에 經濟危機가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신규노동시장 진입자들의 취업애로 현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賃금이 크게 削減되면서 所得 또한 크게 減少하였다. 더욱이 消費支出도 減少하였지만 소득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 消費性向이 상승하고 저축여력은 위축되는 등의 변화가 뒤따랐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상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稅負擔도 逆進的인 방향으로 이행하여 衡平 提高 및 分配構造 改善을 위한 稅制改編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록 金融所得綜合課稅가 유보되면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상향조정되고 1998년 상반기 동안 이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利子·配當所得稅 負擔이 增加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득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다.

반면에 交通稅率의 인상 등으로 인해 消費稅 負擔 水準은 종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98년 동안 稅負擔의 衡平性이 惡化되었던 원인은, 利子·配當所得 稅率 및 交通稅率의 인상과 같은 1998년 동안의 稅制改編에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所得·消費패턴이 매우 급격히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득·소비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비세, 특히 그 가운데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과 함께 稅負擔의 衡平性이 크게 惡化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단행되었던 稅制改編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公平性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景氣가 급속히 下落하면서 稅收與件이 크게 열악해지는 한편 부실채권 정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公平性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財政 擴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交通稅의 인상은 稅收補塡을 위해 필요하였다는 점 외에도 環境汚染을 縮小하고 交通混雜을 緩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일찍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절대 세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편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제위기를 전후한 1997~1998년 기간 동안에 所得 및 消費構造가 크게 변화하여 特別消費稅 負擔分布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7년에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이 總所得 對比 0.37%였으며 본격적인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에는 0.36%로 소폭 하락하여 실효세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所得·消費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부담률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양자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가 크게 변화하였다. 中·低所得層이라고 할 수 있는 1~6분위의 실효세부담률은 크게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경우에는 실효세부담률이 하락하는 등 稅負擔 構造가 逆進的인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表 IV-7〉 참조).

이와 같이 階層別 特別消費稅 負擔 構造가 급변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貨金 削減과 失業 增加, 自營業者의 破散 急增 등으로 인해 中·低所得層의 所得은 크게 減少하였으나 이들의 消費支出이 상대적으로 적게 減少한 반면,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中·低所得層에 비해 所得 減少率은 낮았으나 消費支出 減少率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수요로 볼 수 있는 高價·大型의 家電製品 등에 대한 消費支出을 대폭 축소한 데에도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경기가 회복되어 소비 또한 회복된다면 다시 종전의 모습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소득계층별로 所得·消費패턴이 非對稱적으로 회복된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의 타격을 적게 받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경우 종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消費패턴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타격을 심하게 받은 中·低所得層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종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아 소득 수준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회복도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景氣回復 後의 特別消費稅 負擔 構造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좀더 累進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계층별로 상대적인 실효세부담률의 변화추이만을 고려한 것일 뿐, 실제로 中產層과 低所得層이 體感하는 特別消費稅 負擔은 종전보다 過重해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곧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도 회복되더라도 中·低所得層에 대한 稅負擔을 輕減시켜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는 만큼 경제위기 동안에 소외되었던 계층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에 도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稅收 減少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財政赤字가 급속히 擴大되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여권이 호전되어 균형재정회복에 대해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세원 확대 및 지출억제 정책 없이는 均衡財政을 回復하는 것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財政赤字의 長期化를 방지하고, 環境汚染이나 交通混雜과 같은 外部不經濟를 축소하며, 國民保健衛生 수준을 增進하기 위해서는 燈油, 輕油, 重油, 담배, 酒類 등을 대상으로 景氣 및 稅收與件을 고려하여 追加的인 改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景氣沈滯 및 構造調整 과정에서 발생한 分配構造의 不平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므로 所得課稅 및 財產課稅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再分配 機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및 누진도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消費課稅와 관련하여서는 食飲料品과 상당수의 家電製品으로 대변되는 生活必需品를 대상으로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高所得層이 주로 소비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거나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적용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구신 등과 같은 滋養強壯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부의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며, 사회적으로도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설탕, 커피·코코아, 清涼·嗜好飲料 등과 달리 특별소비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家電製品의 경우에는 일부의 에너지 다소비 품목과 高價·大型製品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後者和 관련하여서는 동일 품목이라고 하

더라도 價格이나 容量에 따라 消費者層이 구분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TV라고 하더라도 中·低價 및 中·小型製品의 경우에는 生活必需品으로 볼 수 있지만 디지털 TV나 대형 TV, 벽걸이형 TV 등과 같이 高價의 신제품들은 대부분 高所得層에서만 소비된다. 中·低價 및 中·小型 製品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고 高價의 大型製品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를 계속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美國의 奢侈稅에서 보듯이 基準金額을 설정하고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基準金額 超過分을 대상으로 特別消費稅를 과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基準金額 超過分만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은 기준금액을 경계로 特別消費稅 負擔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資源配分의 歪曲을 最小化하면서 소기의 稅負擔 衡平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所得階層別 所得水準 隔差에 비해 絶對稅負擔 隔差가 작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 수준이 별로 낮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세금을 경감시켜서 低所得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稅 輕減 惠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을 提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 상당수의 食飲料品과 中·低價 및 中·小型 家電製品에 대한 주 소비자층인 中產層 및 低所得層의 特別消費稅 負擔이 高所得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輕減되기 때문에 형평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의 과세 취지로서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特別消費稅 課稅를 철폐하게 됨에 따라 消費稅制의 先進化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衡平性 提高를 위한 生活必需品에 대한 特別消費稅 과세 개편에 있어서는 稅收 및 景氣與件을 감안하면서 필요시 代替稅源 發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기왕에 개편이 필요하였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代替稅源을 發掘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石油類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消費稅 課稅 改編과, 社會·經濟的 또는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소비를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과세대상을 발굴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과세대상의 발굴이나 세율조정 문제는 財政赤字와 관련한 均衡財政 回復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産業資源部·에너지經濟研究院, 『에너지統計年報』, 各年度.
- 成明宰, 「消費稅에 대한 都·農別 所得階層別 稅負擔 및 逆進度 實態分析에 관한 研究」, 『財政論集』, 제8집, 韓國財政學會, 1993A.
- , 『個別消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3-08, 韓國租稅研究院, 1993B.
- , 『石油類 課稅體系의 改善方向』, 政策報告書 95-06, 韓國租稅研究院, 1995.
- , 「우리나라 都市家口의 階層別·年齡別 消費稅 負擔 分布에 관한 研究」, 『財政金融研究』, 제3권, 제1호, 韓國租稅研究院, 1996.
- , 『微視的 接近方法을 이용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와 稅收效果 推定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97-05, 韓國租稅研究院, 1997(A).
- ,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7-11, 韓國租稅研究院, 1997(B).
- , 『主要 에너지源에 대한 需要分析和 石油類 課稅政策의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7-10, 韓國租稅研究院, 1997(C).
- , 『需要函數 推定을 통한 消費稅 稅收推計』, 政策報告書 98-07, 韓國租稅研究院, 1998.
- , 『經濟危機 1年間 所得稅·消費稅 負擔分布의 變化 및 政策方向』, 政策報告書 98-07, 韓國租稅研究院, 1999.
- 成明宰·張槿鎬, 『特別消費稅 稅率 및 課稅對象 整備方案: 食飲料品을 中心으로』, 韓國租稅研究院, 1999.

- 成明宰·全映俊,『所得稅制 改編方向』, 研究報告書 98-02, 韓國租稅研究院, 1998.
- 孫元翼·金鴻均·盧相煥·成明宰·崔濬旭,『環境污染 低減을 위한 稅制 및 關聯制度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6-09, 韓國租稅研究院·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6.
- 全瑛俊·成明宰·盧英勳·朴宗奎,『經濟危機 1年の 租稅政策 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第33回 租稅의 날 記念 심포지엄 發表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9.
- 韓國租稅研究院,『主要國의 租稅制度』, 1996.
- 韓相國,『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 其他報告書, 韓國租稅研究院, 1995.
- Bahl, Robert and Mary Beth Walker, *Discriminatory Taxation of Carbonated Beverages: The Case of Ireland*, Working Paper #6,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ersity, 1998.
- Decoster, Andr, Silvia Pagliero, Guy Van Camp, and Frederic Vermeulen, "Taxation of Non-Alcoholic Beverages in Belgium: A Critical Apraisal," 1999.
- IEA, *Energy Prices and Taxes, Fourth Quarter*, Paris: OECD, 1998.
- Ishi, Hiromitsu,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9.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9.
- Taxation and Tariff Commission, Ministry of Finance, *Guide to ROC Taxes*, Republic of China, 1999.

## 〈附錄〉 需要量 變化를 考慮한 稅收效果에 대한 例示

대체로 家電製品을 위주로 한 耐久消費財의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中·低價製品의 경우에는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반면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전제품 등에 대해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적용하게 되면 中·低價製品의 상당 부분이 非課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탄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高價製品의 경우에는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적용하더라도 상당부분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고가제품의 경우에는 基準金額 이하분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해 價格 引下 效果 및 그에 따른 需要 增加(가격에 대해 탄력적일 것이므로 수요량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임)로 인해 세수는 單位彈力的으로 增加할 가능성이 있다.

세전출고가격이 150만원인 고급 TV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편의상 컬러TV에 대한 초과금액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유통마진율을 25%로 가정하자. 그러면 현재 과세체계에서 초과금액과세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가격은 4.35% 하락할 것이다. 이 경우 가격탄력성을 1이라고 한다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4.35%에 이른다.

1997년 세수를 기준으로 컬러TV에 대한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량 증대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수효과는 -82.1%이다. 그러므로 수요량 증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  $0.8\%p (= 17.9\%p \times 0.0435)$ 을 감안하면, 총체적인 세수 감소효과는  $-82.1\% +$

0.8% = -81.3%으로 다소 축소된다.

그런데 <附表 1>에서 보듯이 과세체계 개편에 관계없이 유통마진의 절대액은 그대로라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만약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세포함출고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절대유통마진액이 출고가격 인하에 비례적으로 반응한다면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세수감소 효과가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附表 1> 需要量 變化 考慮時의 稅收效果 例示

(單位: 萬圓)

	課稅體系 變更前	課稅體系 變更後
세전가격	150	150
소비세	51.65625	40.93125
(특별소비세)	(22.5)	(15)
(교육세)	(6.75)	(4.5)
(부가가치세)	(22.40625)	(21.43125)
유통마진	44.8125	44.8125
소비자가격	246.46875	235.74375

註: 1. 세전출고가격 150만원의 고급 TV, 기준금액 50만원, 유통마진 25% 가정.  
2. 과세체계 변경 후 유통마진 44.8125만원은 현상 유지 가정시(보수적 가정)

향후에는 기본생활필수품으로서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가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년 후에는 세수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고가제품의 수요 증대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가제품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고소득층에서만 거의 대부분이 수요될 것이므로 형평성 제고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즉, 高價의 신제품에 대한 주된 수요기반이 일부의 중산층으로 다소 확대되더라도 대부분 최상위 20~30% 범위 내에서 수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부담의 누진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세율인하 방안이나 용량별 과세차등 방안의 경우에는 中·低價製品에 대한 대체수요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형평성 개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特別消費稅 負擔分布 推定 및 課稅體系 整備方案

成 明 宰

1997년에는 特別消費稅 實效稅負擔率이 總所得 對比 0.37%였으며 1998년에는 0.36%로 소폭 하락하여 실효세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所得·消費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부담률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양자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가 역진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別消費稅 負擔 構造가 급변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賃金 削減과 失業 增加, 自營業者의 破散 急增 등으로 인해 中·低所得層의 所得이 크게 減少한 반면 이들의 消費支出은 상대적으로 적게 減少하였으며,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中·低所得層에 비해 所得 減少率은 낮았으나 消費支出 減少率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이 불요불급한 수요로 볼 수 있는 高價·大型의 家電製品 등에 대한 消費支出을 대폭 축소한 데에도 기인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파생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악화된 分配構造를 改善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의 家電製品과 食飲料品으로 대변되는 生活必需品를 대상으로 特別消費稅를 非課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高所得層이 주로 소비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거나 超過金額課稅制度를 적용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家電製品의 경우에는 일부의 에너지 다소비 품목과 高價・大型製品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유류의 경우에는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적정 세율 및 과세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Reform Proposals for the Special Excise Tax**

Sung, Myung Jae

The effective special excise tax rates were 0.37% in 1997 and 0.36% in 1998, respectively. In 1998, the general income level had shifted down sharply and, so had the consumption. Therefore, the difference in effective rates was so small since the gross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decreased almost at the same rates.

However, the tax distribution structure turned out to be regressive in 1998 from progressive in 1997.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at the income of low and medium income groups fell sharply, and their consumption did not decrease as much as income, while the gross income of high income group fell a little and their consumption decrease sharply especially that of expensive and luxurious goods many of which are subject to special excise tax.

Today, the tax reform which can reduce the regressivity in tax burden and result in more equitable distribution becomes one of the top priority government policies.

It is recommended to abolish special excise tax on necessity goods such as foods except health foods most of which are expensive and consumed by high income group and low and medium priced home electronics. Especially for the home electronics, it is recommended to impose tax only on the excess of standard prices specified differently by goods. By doing this, only expensive electronics above certain price level is taxed, and so, we can enhance the equity in special ex-

cise tax burden.

In the case of petroleum products,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excise tax reform about the desirable levels of tax rates and the tax coverage.

〈著者略歷〉

成明宰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政策報告書 99-04

**特別消費稅 負擔分布 推定 및 課稅體系 整備方案**

---

1999年 12月 28日 印刷

1999年 12月 30日 發行

著者 成明宰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11610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2186-2114(代), 팩시밀리：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1999

ISBN 89-8191-159-2

---